2019 연구보고서 18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이미정 · 윤덕경 · 전혜상 · 정수연 · 이성미





2019 연구보고서-18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2019. 10.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본원 연구위원)

전 혜 상 (본원 부연구위원) 정 수 연 (본원 전문연구원)

이 성 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이미정·윤덕경·전혜상·정수연·이성미(2019).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2018년 초반 촉발된 미투운동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예술인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화예술계 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심각하다는 것도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문화예술계 대학의 동료 학생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자보를 게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 해결을 요구하며 대학당국의 미온적 입장을 비난하였습니다.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계 전공 대학생들은 수업과 실습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고충상담과 피해구제 조치는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여타 전공분야에 비해 문화예술계 교육 과정에서의 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은 교수와 현장 예술가의 지도를 받으며 인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작품 활동 참여나 취업의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이들에 대한 교육자의 영향력은 더 컸습니다.

또 다른 한편, 교육자들은 섹슈얼리티 표현의 의도나 맥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채 수업이나 실습 중 노골적 성적 묘사를 하거나 이를 방관하여 학생들을 혼란과 불편함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예술교육의 이름으로 성희롱·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과정의 도제식 교육, 폐쇄적 집단문화, 성별 위계구조 환경에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섹슈얼리티 묘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개선방안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의 학습 여건 마련에 필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



졸업생, 피해자 조력자, 강사,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서 작성 및 자료 수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 유창훈, 박선주 연구조사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



연구요약

I. 서 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18년 초 촉발된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폭로에 이어 문화예술계 대학에서도 피해 폭로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언론에 보도됨.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맥락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I 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밝힘으로서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밝힘. II장은 기존 문헌과 언론기사 분석을 통해 문화 예술계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현황을 살펴봄. III장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과 교육계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문화 예술계 대학 대상 정책방안을 제안함. VI장은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V장부터 WII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관련자 심층면접을 분석했는데, V장부터 WII장은 문화예술계 대학 학생, 졸업생 등, WII장은 대학 내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의 내용을 분석함. V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내성희롱과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맥락을, VI장은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을, WII장은 이러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분석함. WII장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통해 살펴본 문화예술계 대학 내 상황과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상의 연구수행을 토대로 IX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화예술계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그간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계와 교육 분야 정책내용을 검토함.
- 문화예술계 대학 내 관련 규정 검토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선정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의 명칭, 제정년도, 용어 정의, 규정의 적용 범위, 성희롱고충 담당 기관, 사건조사 및 처리, 피해자 보호, 폭력예방교육 관련 내용 등을 분석함.
-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발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총 41개 언론매체가 2018년 1월 29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1년 7개월간 보도된 기사 중 피해 상황과 이후 사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을 선정하여 분석함.
- 문화예술 대학 내 성희롱·성폭행 발생 맥락과 구체적인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해 피해자 조력인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강사, 성희롱고충 상담기구 상담원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심층면접을 수행함. 피해자 조력자를 대상으로 사건 내용, 피해 경험과 이후 대응, 피해자 보호의 쟁점, 성희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인식을, 학생 대상으로는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섹슈얼리티 표현의 문제, 성별 위계문화, 피해 및 대응 경험, 개선사항을, 성희롱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문화예술계 핵과 사건 현황, 운영상 고충, 미투운동 이후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함.



Ⅱ.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

- 문화예술계 정책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2017년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각각 문학·미술·사진 분야, 그리고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함. 2018년에는 정부 부처합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00일 간 특별신고센터와 특별조사단을 운영함. 2018년부터 피해 지원, 예방, 근절에 관한여러 시도들이 시행됨.
-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프리랜서 활동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아래와 같음. 해당 영역 종사자들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성폭력 행위자의 국고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고 공직과 심사위원직에서 배제하고, 노동계약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방지조항 포함과 제작비 지원 사업 시행 시, 성폭력 예방 서약서 제출 및 예방 교육 이수를 하게하고, 공직 지원금이나 공공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 이외 특별조사단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와 처벌을 분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임. 문체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신설하고 성평등 및 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업과 예산을 신설함.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정책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의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음. 2018년 대학 교수의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미투운동이 이어짐. 이에 대학생, 교육부, 국회의원이참여한 간담회가 열렸고, 민간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구축됨. 이들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9년 6월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많고 대학 자율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 현실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주체는 대학과 대학별 전담기구임. 이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첫째, 대학별로 존재하는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랑을 강화하여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함. 둘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수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함. 셋째, 예방교육 대상을 대학 구성원 전체로 확대 강화함. 넷째, 이행 상황을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공시하여 정책 시행을 유도함.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제안

- 대학 내 예술계역 학과는 교원의 비율은 예체능 계열 대학 특성상, 실기 수업과 소규모 특성의 비중이 높아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높은 실정임. 이러한 교원을 비롯한 대학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에 의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함. 예체능 계열의 학생 성비율과 달리 교수의 성비율은 남성이 우세한 불균형한 권력 구조로 해당 영역 내 성차별적 문화 속성이 지적됨.
- 이에 문체부는 교육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예비 예술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피해 학생 조력인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예술계 대학에서의 성인지감수성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이 확대 강화 시행되어야 함. 그 외 대학 및 공공기관, 공적 지원금 심사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예술계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이 필요함.



Ⅲ.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1.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곳을 포함해 총 29개 대학의 관련 규정을 명칭, 제정년도, 최종 개정년도 별로 구분, 검토해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석 결과, 이전까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주목적으로 명칭이 규정되었으나, 근래 들어 존엄과 인권 가치 실현에 준하고자 인권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음. 대부분의 대학이 2011년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꾸준히 개정, 시행해왔으며, 2017년 이후 인권센터 운영규정으로 변경 또는 분리하여이행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이확인됨.
- 규정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의 경우, 각 대학 규정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명칭에 관한 정의와 적용 범위는 상이한데, 인권센터의 경우 '인권침해', '차별행위', '인권'이란 명칭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의 내연적 의미를 확장시킴. 규정 적용 범위는 학내 구성원만을 포함하기도 하고 학내 구성원을 넘어 외부인 피해자까지 포괄하기도 하는데, 명확한 범위 규정을 통해 사건 처리 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성희롱 고충 담당기관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상담소, 센터 등의 명칭으로 존재하며, 상담, 조사, 연구, 보호, 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고충상담원은 전문 상담원, 전담 직원, 상담위원, 상담전문교수,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학마다 임명 규정이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됨.
- 사건조사 및 처리 관련 규정의 경우,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상담소는 사건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위원회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의결함. 조정위원회심의 후,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가해자에게 이행하게끔 하며, 해당 조치를 거부 또는 불이행하거나 위원회 소집 이후가해자가 2차 피해를 가했을 경우, 동 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가중 징계 재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교원 및 교직원은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학생은 학칙에 따라 징계 처리를 함.

- 대부분 대학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 중심 원칙,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신고인이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 절차를 위해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음.
-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한 대학은 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1시간씩 이수하게 하는 반면, 학생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예방교육 만을 1시간 이상 이수하게 하여 차이가 발견됨.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 정확한 용어사용 및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용어의 적용 범위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또한 성폭력 행위 발생 후, 가해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또는 위치 변화와 무관하게 사건 처리 적용이 이뤄져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
- 성희롱고충 상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 일부 대학은 교내 직역 대표의 추천과 성별 균형을 반영하는데, 성별 할당과 관련해 여성 피해자를 위한 여성 상담원 배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성별 구분 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람의 임명이 우선시 되어야 함. 성희롱・



성폭력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초빙과 고충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또한 규정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징계 실효성을 위한 센터장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징계 경중과 상관 없이 센터장 요청으로 피신고인의 자퇴, 휴학, 사직, 휴가를 보류 반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건 처리기한 또한 분명히 밝혀 사건접수 이후 원활히 사건처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피해자 보호규정의 내실화를 위해 피해자 중심 원칙과,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보장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경감은 물론 2차피해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상담소는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 긴급 구조 및 구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 종료 후에도 부수적 피해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희롱, 성매매 교육까지 포함한 4대 폭력 학생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대면 교육 방식으로 예방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1. 교수와 강사의 권력

- 문화예술계 학생들에게 있어 교수와 강사의 권력은 동경의 대상, 기회 로의 매개, 심사 권력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학생들에게 교수와 강사는 직업적 의미로서 교육자를 넘어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짐. 이들은 우상으로 여기는 대학 교수나 강사의 예술적 재능을 우선시 여겨 그들로부터 성폭력 문제가 야기되어도 쉽게 드러 내지 못하고 용인하게 함.
- 문화예술계로의 사회진출 통로는 좁고 공식적인 기회도 적은데, 현장 영향력을 확보하는 교수와 강사는 해당 예술분야 진출의 중요한 매개



자가 되고 있음. 그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작품 참여 기회를 얻고, 추가 경력을 쌓아 데뷔를 함. 최근 현장 영향력이 큰 예술인들이 교육 현장으로 대거 투입되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음.

○ 공모나 대회를 통한 사회진출 기회가 공평히 주어져도 심사자로서 교수와 강사의 권력은 막강함. 예술계 작품에 대한 평가가 선배 예술인인 교수나 강사에 의존적이기 때문임. 학생들은 해당 영역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이들은 심사자나 평가자로서 학생들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2. 성별화된 위계구조 하에서의 교육

- 성별화된 위계구조는 문화예술계 대학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임. 학과 내 남학생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주로 해당 분야의 교수직으로 진출하면서 성차별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체육과 기타 음악 분야를 제외하면 문화예술계 학과 내 남학생 수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과 자원을 공유 하여 예술 현장으로의 진입이 여성에 비해 용이함. 현장으로의 진입은 남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예술 현장에 자리 잡은 남성 선배, 남성 교수와 강사, 남학생들로 이어지는 카르텔로 여성의 입지가 취약함.

3. 교육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통제

- 공동으로 참여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장르의 경우 위계와 통제가 당연시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이 같은 작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영역으로 진입 전, 대학에서 위계 문화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됨. 공동체 문화가 강조되는 연극계 경우, 집단생활을 통해 공적생활과 사적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합이나 구보와 같은 군대식문화가 전통으로 인식되기도 함.
- 도제식 교육이 일반적인데 문화예술계 학생들은 어렸을 적부터 1:1레슨



방식의 도제식 교육에 익숙하게 되는데 예중, 예고, 예대를 거치면서 선생님, 동기, 선배 간 위계가 잡힌 집단문화에 자연스럽게 편입됨. 교육 및 예술현장에서 끊임없이 교류하며 형성된 집단문화는 폐쇄적 이고 위계적 특성을 띠는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고 주위로부터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 기도 함.

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 문화예술계 대학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표현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며 이것이 예술가가 갖춰야 하는 필수적 요소로 교육되고 있음. 예술가 로서 표현의 자유와 성적 윤리의 기준을 성찰하는 일은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검토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섹슈얼리티 표현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관행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높고 발생하여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V.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 성희롱·성폭력 발생 공간

- 성희롱·성폭력 발생은 강의실, 연구실, 회식자리, 사적 술자리, 기타 상황에서 나타남. 수업 중 다뤄지는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성 관련 표현과 예시로 인해 학생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박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움.
- 수업 과정의 하나로서 매 학기 담당 교수와의 개인 및 집단상담은 회식 이나 교수의 개인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때 일부 교수들에 의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발생함.



- 개인 및 집단상담의 일환으로 회식자리에서 일부 교수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희롱·성폭력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함. 그러나 가해자가 평가권을 지닌 교수이기에 이러한 피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음. 공동예술작업 시작과 종료 시에 구성원이 함께하는 회식자리에서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작품의 완성과 평판 유지를 위해선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음.
- 인맥 형성의 장이 사적 술자리를 통해 형성되기도 하는데, 초대된 해당 영역의 유명 인사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평소 동경하던 유명 예술인을 만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에 의해 성희롱·성추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이용당함.
- 실습과정에서 명확한 규범이나 지침이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으로 불쾌함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를 성추행으로 여기고 있음. 더 나아가 일부 교육자는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빌미로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함.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대부분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통해 조사와 징계 절차를 피하기도 함.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학생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교수에 의해 성희롱·성폭력이 행사된 사례가 확인됨.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그것이 폭력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 떠올리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함. 피해 발생 이후 이들은 수치심, 불안,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 외상에 시달림. 조사 진술 과정에서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주변 동료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기도 함.

4.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가해의 전개 양상

○ 2차가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교수나 강사나 가해자 편에 있는 자가 피해자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발생함. 이외, 피해자 조력인에 대한 주변인 들의 반감과 악의적인 발언, 그리고 피해자를 문란한 여성이라 비난하며 2차가해가 발생하기도 함.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1.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 장시간 축적되어 온 문화예술계의 위계 문화 및 섹슈얼리티 표현과 관련된 관행 속에서 드러내기 힘들었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은 2018년 미투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되기 시작함.
- 말하기와 드러내기의 수단으로 대자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됨. 대자보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 키고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소통 창구로 밖에 기능하지 못하여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

2.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

- □ 비상대책위 등 학생 조력인의 등장
 - 본 연구 심층면접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학 당국이나



해당 학과 교수들의 미온한 대처에 학생들은 성고충상담기구가 아닌 학생자치단체나 대리인을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함. 학내 공동체가 연대하여 조직한 학생자치단체는 가해자 처벌을 통한 정의 실현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명의식에 기반하여 활동을 전개함.

□ 비상대책위의 초기 대응

○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조직된 비상대책위는 SNS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수집하고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며 대학 당국의 철저한 사건 조사를 촉구함. 이외 성명문 발표나기사화를 통한 교내외 공식적·비공식적 매체를 활용해 피해 사건을이슈화하여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사건 규명과 처리 절차에 압박을가하는 활동을 전개함.

□ 비상대책위의 대리인 역할

○ 학생 비상대책위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해 피해 사례 수집 및 학교 측의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할 뿐 아니라 징계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함. 또한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동행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법률 서비스 등 자원 활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 하지만 비상대책위는 학교 측에 의해 협상 파트너로 인정되지 못하 기도 하고, 활동에 따른 신분 노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함. 비상대책위 활동으로 학업이나 사회 진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 기도 함.

3.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 피해자 보호와 지원 미흡

○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성고충상담기구가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가해가 발생함. 피해자 학습 관련 지원조치나 심리적 후유증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체계도 미흡해 부차적인 피해가 이어지기도 함.

□ 외부기관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 대학 당국의 소극적인 사건 처리와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해당 사건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를 촉구 하기도 함. 그 밖에 수사기관을 통한 법적 처리를 위해 외부 지원 기관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등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도 함.

□ 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고충상담기구가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사건 처리 및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제공 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도 낮다고 지적함.

4.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 조사위원은 징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공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채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비상 대책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배경이 되기도 함.

5.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교내 조사와 징계를 중단하여 사건 처리가 흐지부지된 사례도 있음. 지속적 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이어 온 가해자에 대해 낮은 징계처분이 내려져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고, 가해자가 부당징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학교로 복귀하면서 고충처리 절차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무력하게 인식 되기도 함.



6.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학교 출입금지, 수업 배제, 즉각적 해임조치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대학도 있음. 신입생 대상 성인지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 하기도 함. 또한 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미투 신고를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 피해 접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인권 센터를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도 있음.

7.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

○ 학생들이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를 보면, 우선 모든 학생뿐 아니라 교육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되기를 원함, 이외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예술 실습 작업 중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규범과 행위 지침 확립 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교수와 학생 간 연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8.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바

□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인지도 제고와 사건 처리의 내실화

○ 학생들은 성희롱 고충상담기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학생 보호 및 사후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자원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해당 기구의 전문성강화가 필요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에게 해당 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널리 알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길 촉구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기를 강력히 주장함. 그러나 적극성과 강제성을 띠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성희롱·성폭력 전반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토론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람. 더 나아가 문화예술계 특성을 반영해 해당 분야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자각과 반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함.

VII.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1. 구성원들의 성인지성과 위계 문화

□ 학생과 교수의 성인지성

○ 성고충상담원의 경험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분야 특성상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고 함. 일부 강사를 비롯한 50-60대 교수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편이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수업에서 성 관련 주제를 다룰때 적절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하며, 사적인 자리에서 성적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행동에 항의하는 학생을 협박하기도 해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위계문화

○ 대학원생이나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은 학업 성과와 사회 입문에 있어서 미치는 강사나 교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선후배 간 위계 질서가 약화되는 추세지만,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위계관계를 강조하는 연대와 공동체 생활이 요구되는 워크숍 활동이 존재함.



2.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둘러싼 양상

□ 성희롱·성폭력 신고 현황

○ 대학 당국과 인권센터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바람직한 선례를 남겨 신뢰를 회복한 대학 사례도 있음. 신고접수 유형으로는 성추행보다 성희롱 건수가 많고 가해 행위자는 교수, 강사, 동료 등 다양함. 일부 인권센터는 외부 메일을 통해 피해자 신고 접 수를 받거나 익명의 신고 건은 피해자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대리인을 통해 조력하고,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대학 사례도 언급됨.

□ 가해자 지위에 따른 대응의 차이

○ 가해자가 강사나 교수일 경우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편이고 신고접수를 하여도 문화예술계의 긴밀한 인맥 구조 특성상 신분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중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 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함. 가해자가 동료인 경우에도 위계나 평판에 대한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편이나 동기간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하는 경향임.

□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평판

○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대한 학생들의 인지와 신뢰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담소나 인권센터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존재함. 인권센터의 신뢰성 회복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실기와 현장 수업이 많은 문화예술계 학생들을 고려한 전략적인 홍보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함.

□ 대자보를 통한 신고

○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학 당국 및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미온한 대처와 개입에 불만을 느낀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한 공론화를 선호함. 2차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자 입장의 성명서를 대리하여 게재하는 등 대자보 기능을 활용하기도 함.



○ 가해자 고발과 피해자 조력의 이점 기능이 있는가 반면, 무분별한 대자보 게재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학내 여론이 양비론으로 치닫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권센터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고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있음.

□ 2차피해

○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피해자 책임론이나 이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동료 학생 사이에 확산되어가 2차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특히 가해자가 해당 영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일 경우, 이들의 해명이 우선시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됨. 이 같은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일부 대학 학생회는 자치적으로 '피해 학생 인권 보호 위원회'를 설립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3. 대학 내 사건 조사

○ 성희롱 고충상담원에 따르면 사건 처리 절차 중, 신분 노출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으로 연락이 도중에 끊기거나 피해 접수를 철회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함. 이런 이유로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일부 상담기구는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하며,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징계 처리

- 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제라인에 따라 기존 논의되었던 징계 수준과 상이한 결정이 내려질 때, 징계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됨. 또한 퇴직을 앞둔 가해자가 소청 심의를 통해 가해 행위자로서의 혐의를 벗는 경우도 발생하여 징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됨.
- 개인정보보호법 상 징계결과가 공개적으로 개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통보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고지하게끔 규정을 수정한 대학도 있음.



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

□ 학내 분위기의 변화

○ 미투 이후, 공식적·비공식적 회식 자리가 줄고 있으며 학생을 대하는 교육자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짐. 다른 변화로는 학기 말에 실시하는 강의 평가서에 인권침해 문항과 주관식 항목이 추가되어 수업 중 발생한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

□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조회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교육기관으로써 교원 및 교육자 임용 시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관련 전력을 조회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조회를 실시하고 있진 않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교원 및 교육자의 조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지점이 확인됨.

□ 대학 당국의 직권조사

○ 미투 고발이 본격화 되면서 일부 대학 당국은 교수 대상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 규정을 개정 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음. 일부 대학의 과는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조사위원으로 외부 전문인을 위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음.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일부 대학은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신원 보호에 대한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여 2차가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함.

6. 폭력예방교육

□ 학생 대상 예방교육 과제

○ 심층면접에 따르면 현재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4대 폭력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만이 의무화되어 있어 OT나 새터 현장에서 단과대 별로 시행하고 있음. 현장 실습 전, 성희롱·성폭력 교육이 필수화되어 있는 사범대처럼 문화예술계 대학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수 의무화 규정을 구상하는 대학도 있음.

○ 일부 대학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 토론을 통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음. 전반적인 성인지력 향상에 목적을 둔 교육보다는 수용자의 성평등 인식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 대처능력과 성감수성 향상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폭력예방교육 참여 유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 이수 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장학금 제도를 장려하고 있고 교육 불이행 시 학점 확인을 불가하게 하는 등 여러 제도들을 통해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 현황

○ 전교생 대상 집체교육이나 대면교육 시행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예방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대학교나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각 콘텐츠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 이에 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7. 성폭력 방지업무 관련 고충상담원의 견해

□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고충

○ 상담원들은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 진술서 작성 업무까지 담당하여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이 외에도 탈북자나 성소수자 및 장애 학생 관련 업무도 겸직하여 인력 충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또한 징계 결과가 피해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불신임을 받기도 함.



가해자와 피해자 상담을 분리하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하게 됨으로써 중립의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함.

□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바라는 바

○ 고충상담원의 입장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최선책은 예방 교육의 횟수를 늘려 학내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받는 것임. 성폭력 예방이나 성인지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모든 대학이 필수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함.

Ⅷ. 정책 개선방안

1.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교육부 책무 강화

□ 관련 법령 정비 및 준수를 통한 이행력 제고

○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동 법령의 준수의무를 지님.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우므로 「고등교육법」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통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과 이에 따른 훈령과 예규 등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교육부에 권고 했던 바, 이를 수용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계 대학의 특별 관리·감독

○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에서 미투가 두드러졌던 것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피해 학생을 돕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학교 당국을 상대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법령에 근거한 성희롱 방지제도가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를 고려하여 교육부는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 그램이 운영되는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 이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방지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

○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평가는 자체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로 구성되어 있음. 자체평가에 근거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표는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리현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실험 및 실습실과 시설 안전관리,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 검토, 그리고 폭력예방교육 현황이라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성희롱·성폭력 방지 지표만 관리하여 공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학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이나 고충처리와 구제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학습권침해 발생 사실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약해 역시나 평가 이행력 제고를 기대하긴 어려움. 이에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정을통해 위와 관련된 항목을 대학기관 평가지표로 내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차별 실태조사

○ 본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차별적 인식이 타 학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이 확인됨. 이는 남학생에게 작품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가 더 주어지는 차별적 교육환경과 관련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전공 학생과 학과를 대상으로 성차별 실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함.



2.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계 대학은「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 고충처리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동 시행령 제20조 3호에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20조 5호에서는 고충처리 창구 운영사항과 이를 통한 관련 업무의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 내 고충처리기구의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방안

○ 2018년 초부터 국내 미투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이어 교육 분야 성희롱·성희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처 내 실무 담당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를 구성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문화예술계 대학에 초점을 둔 정책

□ 신고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력 강화

○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문화예술인들을 전담 지원하는 센터에서 피해 구제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예비 문화예술인인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문체부와 교육의 가해자 정보 공유

○ 문화예술계 대학교수나 강사가 대학뿐 아니라 사회 현장에서 문화예술 작품이나 프로젝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영역의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정보를 공유



하여 학내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국립예술학교 대상 문체부 관리 책임 강화

○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예술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함.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이들에 관한 징계 정보가 학내외 영역 간 공유되어야 함은 물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및 책임 부처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밝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교과목 확산

○ 문화예술인들의 성인지성은 이들의 작품과 공연에 투영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에 예비 문화예술인 대학생의 성평등 교육 강화가 시급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9년에 '예술가의 젠더연습' 이란 교과목을 개설하여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 같은 교육과정이 여타 대학에도 도입되도록 검토해야 함.

4.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선방안

□ 적절한 용어 사용과 적용범위 확대

○ 규정에 부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성폭력 문제의 규율 적용을 어렵게 함. 사건처리 과정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성폭력 사건 이후, 양 이해 당사자의 지위 및 신분 변화와 상관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담 인력과 전문성 확보

○ 2018년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 평균 0.9명의 상담원이 배치되어 경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적어도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다는 규정이 필요함.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 시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채용 이후 매년 보수 교육 실시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함.

□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자퇴, 휴학, 퇴학, 사직, 휴직 등을 보류·반려하는 조항 마련되어야 함.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건처리와 징계단계에서 피신고인의 부재를 방지하여 징계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며, 사건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사건 조사와 처리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조항도 필요함.

□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제고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피해자 중심 원칙을 준수하고, 2차가해 방지 및 개인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등의 피해자보호 규정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 피해자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련 비용을 대학측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사건 종료 이후, 피해자의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학과나 동료 학생들로부터 차별 등의 2차피해 상황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야함.

□ 사건조사 이후 주요 단계별로 피해자 대상 통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개시 이후, 주요 단계별로 피해자에게 처리 경과나 조치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이 필요함.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길 시 불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와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학생이



피해자로 연루된 교원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 시 대학 인사위원회가 추천 하는 최소 1명 이상의 학생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 참여로 삼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실질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패널티 부여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폭력예방교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방식이 시도·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금이나 포상의 유인책을 반영한 규정 수립이 필요함.

주제어: 성희롱 고충, 문화예술계 성폭력





목 차

Ι.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가. 언론기사 내용 분석	5
		나. 문화예술계 대학생 피해 관련 인터뷰	6
		다. 문화예술계 강사 인터뷰	10
		라.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11
		마. 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	13
Π.	문	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17
	1.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19
		가.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19
	2.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와 특성	24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	24
		나. 문화예술계 작업활동 여건과 성폭력	27
	3.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현황과 특성	30
		가. 문화예술계 대학 현황	30
		나.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실태	35
		다. 언론기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37
		라. 문화예술계 대학의 자정 노력과 한계	43
	4.	소결	44
Ш.	문	화예술계 대학 정책	47
	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	49
		가 무화예숙계 정책 추지경과 및 정책방향	49



		나. 시행 정책	-51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정책	60
		가. 추진과정	60
		나.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61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제안	68
		가. 대학 예술계열 학과의 특성과 현황	69
		나.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75
	4.	소결	. 77
IV.	문	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79
	1.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81
		가. 조사개요	81
		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석결과	85
		다. 규정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87
		라. 성희롱 고충 담당기관	89
		마. 사건조사 및 처리	91
		바. 피해자 보호조항	. 94
		사. 폭력예방교육	. 94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 95
		가. 정확한 용어사용 및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95
		나. 성희롱고충 상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	96
		다.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96
		라. 피해자 보호규정의 내실화	. 97
		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 97
V.	문	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99
	1.	교수와 강사의 권력	101
		가. 동경의 대상	102



		나. 기회로의 매개104
		다. 심사 권력107
	2.	성별화된 위계구조 하에서의 교육
		가. 남성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108
		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남성 카르텔111
	3.	교육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통제113
		가. 공동예술작업에서의 위계를 통한 통제113
		나. 도제식 교육과 폐쇄적 집단문화116
	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118
		가. 성적 자유분방함에 대한 강조118
		나.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 대상화121
	5.	소결125
VI.	문	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27
	1.	성희롱·성폭력 발생 공간129
		가. 강의실129
		나. 연구실130
		다. 회식자리131
		라. 사적 술자리133
		마. 기타 상황135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136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139
	4.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가해의 전개 양상 ······141
	5.	소결 ······142
VII.	문	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145
	1.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2.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149



		가. 비상대책위 등 학생 조력인의 등장	149
		나. 비상대책위의 초기 대응	151
		다. 비상대책위의 대리인 역할	154
		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156
	3.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158
		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미흡	158
		나. 외부기관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160
		다. 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	160
	4.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164
	5.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166
	6.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168
	7.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	170
	8.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바	173
		가.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173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174
		다. 미투운동 이후 성숙한 대응이 요구됨	178
	9.	소결	179
VIII.	고	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181
	1.	구성원들의 성인지성과 위계 문화	183
		가. 학생과 교수의 성인지성	183
		나. 위계 문화	186
	2.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둘러싼 양상	188
		가. 성희롱·성폭력 신고 현황	188
		나. 가해자 지위에 따른 대응의 차이	191
		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평판	192
		라. 대자보를 통한 신고	
		마. 2차피해	195



	3.	대학 내 사건 조사197
	4.	징계 처리198
	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199
		가. 학내 분위기의 변화199
		나.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조회200
		다. 대학 당국의 직권조사201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202
	6.	폭력예방교육203
		가. 학생 대상 예방교육 과제203
		나. 폭력예방교육 참여 유도206
		다. 온라인 교육 현황207
	7.	성폭력 방지업무 관련 고충상담원의 견해209
		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고충 209
		나.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바라는 바211
	8.	소결
IX.	정	책 개선방안217
	1.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교육부 책무 강화219
		가. 관련 법령 정비 및 준수를 통한 이행력 제고219
		나. 문화예술계 대학의 특별 관리·감독 ·······220
		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실적을 대학 평가에 반영221
		라.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차별 실태조사222
	2.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223
		가.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223
		나.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운영의 문제점224
		다.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부실한 운영224
		라.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방안225



3. 문화예술계 대학에 초점을 둔 정책 227
가. 신고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력 강화 227
나. 문체부와 교육의 가해자 정보 공유 227
다. 국립예술학교 대상 문체부 관리 책임 강화 227
라.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교과목 확산 228
4.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선방안 ······229
가. 적절한 용어 사용과 적용범위 확대 229
나.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담 인력과 전문성 확보 229
다.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230
라.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제고 230
마. 사건조사 이후 주요 단계별로 피해자 대상 통지 231
바.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231
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232
참고문헌 235
Abstract255



표 목 차

纽	I -1>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면접7
纽	I −2>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자 조력인 심층면접 질문내용7
狂〉	I -3>	문화예술계 학생 인터뷰 대상자9
狂〉	I -4>	문화예술계 학생 심층면접 질문내용10
狂〉	I -5>	문화예술계 강사 피면접자11
狂〉	I -6>	강사 심층면접 질문내용11
狂〉	I -7>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면접12
狂〉	I -8>	고충상담원 심층면접 질문내용12
狂〉	∐-1>	일반인 대비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비교 ·····25
纽	Ⅱ-2>	2018년 예체능전문 대학교 및 대학원 현황31
狂〉	∐-3 >	2018년 문화예술계 학과 분포 유형31
狂〉	II-4>	2018년 문화예술계 학과 전공에 따른 분포 유형 ···································
狂〉	II-5>	2018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계열 재적현황 ····································
纽	II-6>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계열 교원현황 ······34
狂〉	II-7>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관련 기사38
狂〉	Ⅲ-1 〉	대학계열별 전임·비전임 교원비율 및 교원1인당 학생 수 $\cdots 70$
纽	Ⅲ-2 〉	문화예술계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 행위자 유형71
狂〉	Ⅲ-3 >	대학 계열별 성별 전임/비전임별 교원 수 및 비율(2018) ······73
狂〉	Ⅲ-4 〉	대학 문화·예술·체육 세부전공별 졸업생 성별 비율 (2018) $\cdots 74$
狂〉	IV-1>	성희롱·성폭력 규정 분석대상 대학 명단84
狂〉	IV-2>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규정 명칭 분류 ·····86
狂〉	IV-3>	각 대학 규정제정 년도87
Æ〉	V-1>	문화예술계 대학의 여성 재학생 및 여성 교원 비율109



그림목차

[그림 Ⅲ-1]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 성별 분포(2018) ……72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미투운동 과정에서 심각한 수위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면서 우리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100일간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폭력 특별조사단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2018).1)

2018년 3월 정부합동 범부처 대책회의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등 공적지원 배제, 소관단체의 성폭력 사건 방임·은폐가 확인되면 행정감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 삽입, 단체 윤리강령 제·개정 방안 권고, 폭력 예방교육 실시, 예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행위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이 논의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¹⁾ 본 연구에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제시된 개념, 성폭력은 형법 제32장 '강강과 추행의 죄' '에 명시된 강간과 강제추행 등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 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http://www.law.go.kr〉 [접근일자 2019.11.30.])



문화예술계의 독특한 업무 계약 방식으로 종사자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이수연 외, 2018),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들 또한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학 당국의 미온적대응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이미정 외, 2018).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도 심각하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들을 대학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2018년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서 폭로된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과 특성 및 이에 대한 학생과 대학 측의 대응을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과제이다.

오랫동안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들은 수업과 실습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피해구제 조치는 미흡하였다. 2016년 전개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2018년 '미투' 운동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미비함과 피해자들의 심각한 고통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초반 이후 미투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여타 전공분야에 비해 관련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피해 발생률이 높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남성중심의 위계구조와 성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성희롱·성폭력 발생과 연결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자보를 게시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학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2)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한다.

²⁾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 출처는 Ⅱ장 3절 '다. 언론기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다.



Ⅰ. 서론 ▮ 5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 졸업생, 피해자 조력자, 강사,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담당자 등 관련자를 면담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인터뷰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연구방법 부분에서소개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 이에 대한 학생, 학과, 대학 당국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고충처리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전공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가. 언론기사 내용 분석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 사건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일간지, 인터넷신문, 매거진, 전문지등 41개의 언론매체를 검색하였으며, 기사 검색기간은 우리나라 미투운동이시작된 2018년 1월 29일부터 현재(2019년 8월 20일)까지 1년 7개월간으로하였다. 키워드는 '대학'+'성폭력', '대학'+'성희롱', '대학'+'성추행'을 사용하였다.

언론기사에서 노출된 예술·문화계 대학 성폭력·성희롱 피해 중 가장 이슈화되었거나 사건 가해자 및 피해내용, 처벌 등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여 가해자와 피해발생 학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유형, 발생장소,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문화예술계 대학생 피해 관련 인터뷰3)

1) 문화예술계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인터뷰

문화예술계 대학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피해 양상과 이후 경험, 사건처리 관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조력인 9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2019년 3-5월 기간 동안 각 대학의 피해 사례를 지원 활동을 전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와 서울여성회의 협조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진행 중인 대학의 피해자 조력인을 섭외하였다. 이들 기관을 통해소개받은 피해자 조력인에게 전화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설명한 뒤 면접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면담일시와 장소를 정하였다.

본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피해자 조력인은 학부생 7명, 학부 졸업생 2명이다. 인터뷰 질문은 피해 당시 상황, 피해 내용과 경로, 피해 이후 주변의 대응,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이용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6은 개별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례 4와 사례 5, 사례 20과 사례 21은 각각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피면접자의 동의를 거쳐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파일을 전사한 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2019년 3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³⁾ 연구진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심층면접 실시 이전에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2019년 5월 16일에 승인을 득하 였다. 시행계획에 따라 면접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심층면접 내용을 안내 하고, 면접 내용이 녹음되며 이것은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보고서에 활용되는 점, 녹취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점, 본인이 원할시 이에 대한 확인과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Ⅰ.서론 ▮ 7

〈표 Ⅰ-1〉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면접

사례	지위	면접일자	인터뷰 장소	면접방법
1	학부생	2019. 5. 16.		
2	학부생	2019. 5. 18.		개별면접
3	학부생	2019. 5. 18.		
4	졸업생	2019. 3. 19.		지다면저
5	졸업생	2019. 3.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집단면접
6	학부생	2019. 6. 5.		개벼대저
7	학부생	2019. 6. 7.		개별면접
20	학부생	2019. 7. 10.		지다면저
21	학부생	2019. 7. 10.		집단면접

주: 사례 4는 현재 문화예술기획자.

심층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조력인이 목격하거나 파악한 피해 내용, 피해 이후 피해자 및 학생단체의 대응, 피해자 지원 경로, 문화예술계 학과 사건의 특징,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에 대한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langle 표 $I-2\rangle$ 에 제시되었다.

〈표 I-2〉 문화예술계 성폭력피해자 조력인 심층면접 질문내용

구분	내용
피해 경험	피해 당시 상황, 피해 내용, 피해 경로 문화예술계 학과 문화의 성인지 특성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학과 분위기
피해 이후 대응	교수·선후배 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이유 성고충상담센터 이용 경험 조력인 활동을 통해 대응하는 이유
피해자 보호의 문제	학과교수/학과장/지도교수의 태도 대학 측이 제공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조력인이 겪는 어려움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에 대한 인식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이용 경험

2) 문화예술계 대학·대학원생 인터뷰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문화예술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데, 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것을 성희롱 표현 등의 대해서도 관대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강조되는 섹슈얼리티의 표현이 잘못 이해되어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성중심적 위계질서의 분위기가 연결되어 성희롱·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문화예술계 대학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수·강사 와 학생들의 수업, 실기와 실습, 교과외 모임에서 성적 표현과 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대학·대학원생 17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계의 일반 대학생을 섭외했지만 교육과정에서 성적 표현과 행동과 관련된이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가 성희롱에 노출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각 문화예술계 대학·대학원의 학생회 및 자치단체 접촉을 통해 섭외하였는데,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첫 단계에서 섭외된 피면접자에게 지인 소개를 부탁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2019년 5-7월 기간에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계 다양한 교육 분야의 특성 파악을 위해서 전통예술, 영상, 연기, 문예창작, 대중음악, 고전음악, 미술, 무용의 각 분야 학생을 섭외하였다. 인터뷰는 피면접자 일정에 맞추어 3-5인의 집단을 구성하여 혹은 개별로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교수·강사의 수업이나 실습, 교과 외 활동에서의 성적 표현의 내용, 이의 적절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집단에서의 성적 표현과 성희롱 문제, 레슨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졸업 후 사회진출과 관련된 교수·강사 및 선후배 집단의 영향력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된 파일을 전사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대상 인터뷰는 7월 2일에서 8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Ⅰ.서론 ▮ 9

〈표 I-3〉 문화예술계 학생 인터뷰 대상자

사례	지위	분야	면접일자	면접방법	인터뷰 장소	
8	학부생	영상	2019. 7. 2.			
9	학부생	전통음악	2019. 7. 2.			
10	학부생	영상	2019. 7. 2.	집단면접		
11	학부생	영상	2019. 7. 3.			
12	학부생	미술	2019. 7. 3.			
13	대학원 졸업생	문예창작	2019. 7. 3.			
14	대학원생	서양음악	2019. 7. 3.	개별면접		
15	학부 졸업생	문예창작	2019. 7. 4.			
16	학부 졸업생	문예창작	2019. 7. 4.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회의실	
17	학부생	영상	2019. 7. 4.			
18	대학원 졸업생	서양음악	2019. 7. 4.			
19	학부생	문예창작	2019. 7. 4.	집단면접		
22	학부생	서양음악	2019. 7. 23.			
23	학부생	문예창작	2019. 7. 23.			
24	대학원생	미술	2019. 7. 23.			
25	학부생	미술	2019. 7. 23.			
26	학부 졸업생	무용	2019. 8. 2.	개별면접		

심층면접 내용은 문화예술계 학생들이 경험한 수업이나 실습 중 성적 표현과 이이 적절성, 교수-학생 및 학생-학생 사이의 위계구조, 수업 외 사적 모임에서의 성차별 발언과 성적 표현,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표 I-4〉에 제시되었다.



〈표 I-4〉 문화예술계 학생 심층면접 질문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계 학과의 성적 표현의 문제	문화예술계 수업 및 실습 과정에서의 성적 표현과 행동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성적 표현 관련 윤리 교수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현황 수업 이외 사적 모임에서의 성차별과 성적 표현
교수-학생 위계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문제제기의 어려움 졸업 이후 사회 진출에서 교수의 영향력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
선후배 위계	선배가 행위자일 때 문제제기의 어려움
개선사항	학생, 교수, 학과, 대학 당국의 개선사항 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센터의 역할 및 개선사항

다. 문화예술계 강사 인터뷰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방식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상황을 교육자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교수 및 강사 섭외를 시도한 끝에 총 1인이 섭외되었다. 인터뷰 섭외가 수월하지 않았는데 2019년 6월~8월 중 섭외를 시도하였지만, 인터뷰를 수락한 사람은 1명이었다. 문화예술계의 좁은 인적 네트워크로 인하여 인터뷰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섭외 대상자에게 전화로 조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일정을 정하였다. 여타경우와 피면접자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성적 표현과 접촉 빈도와 정도, 이의 적절성, 교육 과정에서의 성 관련 윤리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교수학생 간 위계와 졸업 이후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면접 참여자의 열정으로 인터뷰는 2시간 조금 넘게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7월 18일에 실시하였다.



Ⅰ. 서론 ▮ 11

〈표 I-5〉 문화예술계 강사 피면접자

사례	지위	분야	면접일자	인터뷰 장소	면접방법
강사 1	연구교수	무용	2019. 7.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개별면접

심층면접 내용은 학생에 대한 문항과 공통으로 문화예술계 성적 표현의 문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 및 신고의 어려움,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구체적 질문 내용이 〈표 I-6〉에 제시되었다.

〈표 I-6〉 강사 심층면접 질문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계 학과의 성적 표현 문제	문화예술계 수업 및 실습 과정에서의 성적 표현과 행동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성적 표현 관련 윤리 교수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현황 수업 이외 사적 모임에서의 성차별과 성적 표현
교수-학생 위계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문제 제기의 어려움 졸업 이후 사회 진출에서 교수의 영향력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
개선사항	학생, 교수, 학과, 대학 당국의 개선사항 폭력 예방교육과 인권센터의 역할 및 개선사항

라.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문화예술계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특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위해서 대학 고충상담기구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는데, 8월 6일에서 8월 9일기간에 실시하였다.



〈표 I-7〉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면접

사례	지위	면접일자	인터뷰 장소	면접방법
상담사 1	상담원	2019. 8. 6.		
상담사 2	상담원	2019. 8.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회의실	개별면접
상담사 3	상담원	2019. 8. 7.		게달한엽
상담사 3	상담원	2019. 8. 9.		

2018년과 2019년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대학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섭외하려고 하였다. 총 1명이 최종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였다. 이들에게 전화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일정을 잡았다.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에 대한 내용은 \langle 표 $I-7\rangle$ 에 제시되었다.

심층면접 내용은 접수처리 과정,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 사건의 특성,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담당자의 고충, 미투운동 이후의 현황 등에 대한 것이 다. 구체적 내용은 〈표 I-8〉에 제시되었다.

〈표 I-8〉 고충상담원 심층면접 질문내용

구분	내용
사건접수 처리 과정	신고인과 피신고인 진술조사 학생단체의 요구사항 조사·징계 과정의 어려움 교수가 행위자인 경우의 어려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징계에 대한 불복 행위자 징계수위 적합성
문화예술계 학과 사건 현황	문화예술계 학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문화예술계 학과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징 문화예술계 학과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고충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자원과 근로 여건
미투운동 이후 현황	미투운동 이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미투운동 이후 성고충상담센터 담당자의 고충



Ⅰ.서론 ▮ 13

마. 인터뷰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이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인 9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12명,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5명, 상담사 4명, 그리고 강사 1명, 총 3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의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의 인과관계 방법론을 활용한 귀납적 코딩을 실시하였다(권향원, 2016).

학생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V장, VI장, VI장에, 고충상담기구 상담원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은 VII장에 소개하고 있다. 문화예술 대학 교육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을 먼저 소개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의 어려움과 이것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후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과정을학생의 관점에서 먼저 소개하고 뒤이어 고충상담기구 상담원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들 인터뷰 자료로 전반적 구조화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구조적 맥락

먼저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현상의 주요 배경이 되는 문화예술계 교육 과정의 구조와 문화, 학생들의 피해경험 및 대 응, 고충상담원이 바라 본 피해 상황을 핵심범주로 분류하였다.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남성 중심의 위계구조와 섹슈얼리티 표현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토대로 형성된 구성원들의 인식 과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문화예술계 전공 대학생들의 인식과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본 연구보고서 V장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 남성중심의 위계구조는 대학 교육과정과현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수와 강사는 이러한 위계구조에서 권력을 가진 자로 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며 이들을 현장으로 이끌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둘째, 협업을 통한 예술 작업에서 통제와 복종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제식 교육과



폐쇄적인 집단문화가 위계구조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계 교육 과정에서 빈번히 다뤄지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방식을 예술 가에게 필요한 자질로 요구하는 교육방식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넷째, 교육과정에서의 남성중심의 문화로 성차별의 만연하며, 여성의 성적 대상화, 남성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예술 활동의 자원과 기회를 남성들이 독점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배경과 요인들은 해당 교육과정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토양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상황 및 대응의 어려움

VI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에 발생 내용과 맥락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발생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피해에 대한 당사자 및 주변의 대응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피해발생 공간, 가해자 특성, 피해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과 2차가해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위계관계와 여성의 회식자리, 사적 술자리, 밀폐된 공간의 연습실이나 실습현장 등 다양한 공적 대상화의 만연으로 인하여성희롱·성폭력 피해는 강의실, 연구실, 회간에서 발생한다. 특히 가해자의 주요 타깃은 학과 내 분위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위계 권력에 대한 순용정도가 높은 신입생으로 이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시점부터 사건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주변인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대한 공격이근거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로 작용한다.

3)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 학생의 관점

VII장에서는 VI장에서 논의한 피해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학생단체를 구성하여 학교 내외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적 개념을 구성한다. 본 인터뷰 자료에서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피해자를 대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시위하는 방식으로 문제



Ⅰ.서론 ▮ 15

해결을 시도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피해자 조력자로서 학교당국과 형사사법기관을 상대한다.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조사와 징계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요구하며 대립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력인들은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비전문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대학 구성원으 로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아 제시하였다.

4)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 상담원의 관점

WII장에서는 대학 성희롱고충상담원의 관점에서 본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과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성희롱 고충상담처리기구를 통하는 것은 제도화된 문제해결 방식인데, 자발적 학생단체 구성을 통한 운동 전개는 제도적 해결의 한계를 의미한다. WII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담원의 견해를 소개하며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드러내려고 했다. 여타 전공과 비교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문화예술계교육 프로그램의 위계적 문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가해자 직위에 따른 사건 신고와 처리 양상의 차이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이유에 대해 소개하였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권 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자보, 성명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드러내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학생단체의 방식에 대한 고충상담원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미투운동 이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도 보완되고 있다고 보는 고충상담원들의 의견을 소개하였다. 고충상담원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여건 보장을 위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정리하였다.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1.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19
2.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와 특성	24
3.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현황과 특성	30
4. 소결	44





П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1.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2018년 초반 미투(Me too)운동 촉발 이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성희 롱·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달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미투운동 초반에는 성폭력 피해 폭로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뒤이어 문화예술계 전공 대학생의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들이 졸업 후 동일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 롱·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과 특성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다.

가. 미투운동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1) 미투운동의 전개와 의미

2018년 미투운동(Me too)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인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유현미, 2018:91). '미투' 운동은 여성 피해자 폭로를 지지하며 성차별·성 폭력 근절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주은혜·백영민, 2018:40; 유현미, 2018:91). 성폭력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나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고선영 외, 2004:118; 김재엽 외, 2010:83), 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행동의 제약이 미투운동을 초래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은 2006년 여성 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처음 제안하였는데, 2017년 할리우드 배우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가 여기에 해시태그를 붙이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 참여를 독려한 것을 시초로 급속히 확산되었다(주은혜·백영민, 2018:40).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 의해 자행된 여러 건의 성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Me Too'에 '#'(해시태크)를 추가하여 숨겨왔던 본인의 피해경험을 공개한 것이 사회적 공감과지지를 받으며 급속히 번져 나갔다(김수인, 2018:25). 미투운동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인식되었던 젠더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렸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주은혜·백영민, 2018:38). 우리나라 에서도 검찰, 문화계, 스포츠계, 정치계, 종교계,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운동이 전개되었다(김수인, 2018:25).

우리사회의 미투운동 전개 양상은 초기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 후 전반적 젠더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권향숙, 2018:261). 미투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를 밝히 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별 고정관 념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김수인, 2018:26). 미투운동에 따른 일반민의 인식 변화는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에서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투운동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이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미투운 동을 접한 이후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 심이 늘었다고 답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a:70). 나아가, 미투운동이 우리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현재 전개되는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8a:70).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 젠더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성평등 인식 변화를 위한 긍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a:73).

미투운동을 야기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주요 요인을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21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투운동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언론에 보도된 이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힘과 권력을 지닌 남성이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권력에 순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여성이라는 점에서 미투운동을 갑을 관계에 따른 권력형 폭력으로 보는데, 미투운동을 야기한 성추행과 성폭력은 남성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려는 행동이다(감수인, 2018:19).

미투운동의 해시태그 메시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건이 피해여성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위계 폭력과 여성배제의 문화, 남성중심의 카르텔에 대해 표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김효인, 2017:30). 가부장적 권력구조 하에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상황에서 지내야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미투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을 통해 젠더 불평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분위가 조성되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미투운동 이후 젠더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은 확대되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평등정책 전문가 7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투운동 이후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성차별·성불평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b).

이들은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 변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의가 성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b). 미투운동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도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성평등위원회등과 같은 정책 기구를 설치를 통한 지속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b).

미투운동에 참여한 폭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발생이다. 미투운동의 확산에 언론의 역할이 컸다. 미국의 경우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이슈에 대한 보도가 비판 여론을 이끌어내며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JTBC 뉴스룸'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에서 검찰청 내부의 성폭력 피해가 드러남으로써 미투운동의 촉발 계기를 마련하였다(주은혜·백영민, 2018:38).

미투운동 분위기에서 피해를 폭로한 당사자가 가해자에게 피소를 당하면서 이들이 역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경험을 알리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부담은 없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소 당할 위험 부담이 있다(이선경, 2017:1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표하여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수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고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데, 이는 다른 피해자의 폭로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투운동은 우리사회에 젠더폭력이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투운동이 처음 시작된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인식되었던 분야에서조차 위계를 이용한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했다는 점과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이 저명한 예술가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이선경, 2017:10).

2)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전개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6년인데 '#00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미술계, 문단계, 연극계, 영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적된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SNS '해시태그성폭력 말하기'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은 현장을 넘어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폭로와관련된 20개가 넘는 해시태그를 통해 20여 명의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이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이는 성폭력 반대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는 계기가되었다(김효인, 2017:6).

그 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높았는데, 최근 문화예술계 공동체 내에서 이를 성폭력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비판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8). 명백한 성희롱·성폭력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23

현장을 목도하고도 이해관계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이를 방관해오던 문화예술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이성미, 2017:21).

문화예술계 내 미투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책임큐레이터의 성추행 고발 글이 2000회 이상 공유되고, '성추행 논란, 출판계이어 영화·미술계 등으로 일파만파'와 같은 기사를 통해 영화예술계 미투운동이 보도되었다⁴). 2016년 문화예술계잡지 '아트인걸쳐'에서는 문화계 성폭력고발을 주제로 '폭력의 악순환을 끊자! 여성기획자들의 목소리' 등 관련 원고를 게재하였다(문소영, 2016:149). 이 외에도 영화잡지 '씨네21'은 영화계성폭력에 대한 기사와 영화인 대담 내용을 게재하고5), 한국여성민우회는 영화계성폭력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다⁶). 앞서 언급한 공식 좌담회 외에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모임이 개최되는 등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⁴⁾ 헤럴드경제, 2016.10.23. 일자 기사.

⁵⁾ 씨네21, 2018.03.12.일자 기사.

⁶⁾ 한국여성민우회 2017.02.17.일자 게시글.

2.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와 특성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으로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2017년 '영화계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는 영화계 종사자 749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응답자 46.1%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성별로 보면 여성 61.5%, 남성 17.2%로 여성 피해비율이 남성보다 높다(영화진흥위원회, 2018:7).

전체 문화예술계 대상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40.7%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여성의 57.7%, 남성의 6.8%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큰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2018:14).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른 분야 종사자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계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로입단 후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은 여성의 경우 33.1%다(한국 프로스포츠협회, 2019:71).

일반인과 비교했을 경우 예술문화계에서의 피해의 정도는 더욱 크다(〈표 II-1〉 참조). 2016년 실시한 전 국민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피해 발생은 0.4%이지만 예술분야는 7.4%이고, 스토킹 피해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0.9%지만 예술분야 실태조사는 11.5%로 조사되었다. 이 외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는 일반국민 대상조사에서는 10.7%이지만 예술 분야는 2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25

〈표 II-1〉 일반인 대비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 비교

구분		강간	강간 미수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신체적 성폭력	스토킹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2016년 전국 성 폭 력	지난 1년	0.0%	0.0%	0.0%	0.8%	0.8%	0.1%	-	-
실태조사7)	평생	0.1%	0.5%	0.4%	10.7%	11.0%	0.9%	1	-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⁸⁾	여성	-	-	-	-	-	-	14	1.2
	남성	-	-	-	-	-	-	4	.2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시 ^{®)}	전체	2.0%	4.0%	7.4%	20.1%	-	11.5%	25.6%	42.6%
	문학 분야	1.6%	3.1%	6.2%	18.1%	-	10.2%	22.1%	40.8%
	미술 분야	2.2%	4.2%	7.8%	21.3%	-	11.9%	26.5%	43.8%
	사진 분야	1.9%	3.1%	6.5%	9.8%	-	11.3%	25.5%	31.7%
2016 출판계 성 폭 력 실태조사 ¹⁰⁾		-	_	_	_	32.0%	_	10.2%	53.7%

- 주: 1) 강간: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
 - 2) 강간 미수: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 3) 성추행(폭행·협박 수반):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
 - 4)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
 - 5) 신체적 성폭력: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 6)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7)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로 유심히 쳐다보는 행위, 음란한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8)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 음란한 전화

⁷⁾ 황정임 외(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⁸⁾ 지난 3년간 12개 성희롱 피해유형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피해 경험 조사(황정임 외, 2018).

⁹⁾ 박근화·김지학(2017).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¹⁰⁾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2016). 「2016 출판계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자. 2017년 영화계 종사자 실태조사에 파악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28.2%),'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23.4%),'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봄'(20.7%),' '사적 만남이나 데이트 강요(18.8%),'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1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화진흥위원회, 2018:47).

피해 대상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영역에 갓 입문하였거나 입문을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위계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이었음을 보여준다. 영화계의 경우 입문 단계 피해자가 31.0%로 가장 높고, 프리-프로덕션 단계 25.2%, 프로덕션 단계 22.3%로 나타났고, 가해자는 '남성 상급자'가 63.2%로 권력을 가진 상급자 남성이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영화진흥위원회, 2018:62).

피해 발생 이후 적극적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풍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계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대 다수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음'이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고 '모른 척 하면서 살짝 피함'이 33.4%, '그 순간 자리에서 나와 가해자로부터 벗어남' 17.8%, '당황, 두려움, 취한 상태, 충격 등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음'이 10.5%로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함'과 같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적극적 대처는 12.2%로 소수에 불과하다(영화진흥위원회, 2018:66).

사건 발생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의논하거나 영화계 내부 기구에 상담이나 제보하여 공적 해결을 모색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한데, 이는 공론화에 대한 부담감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영화진흥위원회, 2018:66).

피해자가 공적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영화진흥위원회, 2018:137), 신고를 하여도 합의나 무혐의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다시 가해자를 대면해야 하는 부담감이 신고를 꺼리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27

나. 문화예술계 작업활동 여건과 성폭력

1) 성차별적 작업 환경

문화예술계에서 추구하는 '자율성'과 '독창성'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기존 규범을 벗어난 자유로운 탐구하는 경향은 때로는 예술가의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기도 한다(김효인, 2017:35).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일탈이 도덕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예술가의 속성으로 간주되며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이수연 외, 2018:32). 다시 말하면, 문화 권력자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이들이 자행한 폭력적 행위가 예술적 기행이라는 말로 포장되며 약자는 피해를 감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문제라는 인식이 구성원 사이에서 약화되며 피해가 집중되는 여성은 억압당하는 위치에 있다.

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계 저변에 깔린 남성중심의 카르텔 때문이다. 영화계에서 남성성은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으며 이는 여성배제 문화로 이어지는데,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인식되어 동료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혐오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데,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해도 이를 업계 입문 과정에서 겪는 과정으로 왜곡하는 태도로 여성 피해자는 고립된다(김효인, 2017:43-44).

여성의 피해를 축소시키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의 문화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도 한다(이수연 외, 2018:22). 피해 사실을 알린 결과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여성 피해자들은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2) 도제식 작업환경

문화예술계 지망생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기량을 연마해야 하는데 순수 예술영역인 클래식, 무용, 국악, 순수미술 영역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8). 문단의 경우 사교육-예고-대학 문학창작과 혹은 국문과까지 이어지는 교육현장, 교육자-저자-심사위원-문학상 수상자로 연결되는 현장에서의 권력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자가



28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이성미, 2017:32). 실기를 가르치는 강사가 기성 문인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학생은 강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등단과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는 침묵하여 피해는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이성미, 2017:31).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특징인 가해자 1인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경제적 불안정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이들의 근로자 권리는 잘 보장되지 못한다. 이들 대다수는 여타 분야 근로자와 달리 장기적 이며 정형화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경향이 있다(이수연 외, 2018:18). 영화계 실태조사 응답자의 약 21%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종사자 대다수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영화진흥 위원회, 2018:3).

문화예술업계의 독특한 고용 관행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노동'이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성적 착취를 당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김효인, 2017:42).

문화예술계에서의 경제활동 기회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등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여타 분야와 달리 문화예술계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연줄이나 인맥이 중요하다. 영화계 실태조사에서 종사자의 46.4%의 주된 구직경로가 '동료·선후배·아는 사람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여 인맥의 중요성이 드러났다(영화진흥위원회, 2018:3).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직급별 직무가 주어지는 여타 노동현장에 비해, 문화예술영역은 개인 인지도와 노하우에 기대어 활동하거나 소규모 공동 작업으로진행되기 때문에 고용 권한을 가진 소수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밖에없다(김효인, 2017:41).

여성들은 일자리를 빌미로 하는 모임이나 자리에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인맥 형성을 위한 술자리 동석 등 남성 중심적 문화에 동조하게 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10). 이와 같은 구조적 이유로 문화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29

예술계 종사자 다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해도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업계를 떠날 가능성이 높 은데, 이러한 상황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이 지속된다(김효인, 2017:43).

4) 문화예술계 자정 노력의 한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폭로는 피해자가 내부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도움 요청이나 형사고소를 통한 것이 아니라 SNS라는 소셜미디어를 선택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선경, 2017:11).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건폭로가 SNS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분쟁해결기구가 부족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접수시켜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김효인, 2017:6).

여성 문인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도 문단 내에 이들을 대변하는 보호창구가 부족하고 수사를 하여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SNS를 통한 공론화를 시도 한 것이다 (이성미, 2017:32).

미투운동 이후 문화 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계 공동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설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신희주, 2017:43).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예술계 공동체 윤리 확립과 자정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구성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다(이성미, 2017:30). 사건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하면 사건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김영주, 2017:36), 한국작가협회 등 사단법인은 사법권이 없어 조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다(김영주, 2017:36). 이에 문화예술계를 포괄하는 별도의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는데, 이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상시적 성폭력피해 상담 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이성미, 2017:34).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다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가해자가 과거 강단에서 성폭력 문제로 해임되었으나 이 정보가 타 기관과 공유되지 않은 탓에 이후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며 비슷한 범죄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성미, 2017:31).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는 특별 기구를 설립하여 성폭력 가해사실 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한 감독의 제안으로 영화 스태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되었 다(손희정, 2017:24).

연극계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분야 상황과 특성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하여 현장에서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불편한 연극'이라는 희곡의 형태로 교재를 발간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인격모독에서 성폭력 및 위계폭력 등 현장에서 벌어질 법한 사건들을 담아 문제점 지적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김태희, 2019:37).

3.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현황과 특성

문화예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예술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성희롱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시작된 폭로는 2018년 대학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사화된 대학만 20곳 이상으로 피해 상황은 다양했지만 학계 내에서의 지위, 영향력을 활용한 폭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유현미, 2018:91). 본 장에서는 국내 문화예술계대학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학생의 자정노력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 문화예술계 대학 현황

현재 국내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중 예체능 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총 1,864개이다(〈표 II-2〉 참고). 해당 학과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총 174개교이며 대학234개교, 대학원은 1,411교, 대학원대학은 45개교가 있다.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31

〈표 Ⅱ-2〉 2018년 예체능전문 대학교 및 대학원 현황

(단위: 개, (%))

78	7	<u>던</u> 체	예체능 전문학교 ¹¹⁾			
구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문대학	174	(100.0)	6	(3.4)		
대학	234	(100.0)	6	(2.6)		
대학원	1,411	(100.0)	84	(6.0)		
대학원대학	45	(100.0)	0	0.0		
 전체	1,864	(100.0)	96	(5.2)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academyinfo.go.kr〉, 표준분류 계열(2018), 가공, 2019.08.13. 업데이트.

국내 문화예술계 학과 분포를 살펴보면 미술계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용·체육, 음악, 응용예술분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미술학과는 146개교, 무용·체육은 142개교, 음악 106개교, 응용예술관련학과는 총 79개였다(〈표 II-3〉참조).

〈표 Ⅱ-3〉 2018년 문화예술계 학과 분포 유형

(단위: 개. (%))

								711, (70))
구분	전문대학		Cļ	학	대	학원	대학원대학	
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교육	0	(0.0)	36	(19.4)	85	(18.8)	0	(0.0)
무용·체육	79	(63.7)	142	(76.3)	175	(38.7)	0	(0.0)
미술	87	(70.2)	146	(78.5)	223	(49.3)	1	(14.3)
연극・영화	32	(25.8)	65	(34.9)	58	(12.8)	0	(0.0)
음악	47	(37.9)	106	(57.0)	131	(29.0)	3	(42.9)
응용예술	44	(35.5)	79	(42.5)	92	(20.4)	1	(14.3)
예체능학과 보유 학교	124	(100.0)	186	(100.0)	452	(100.0)	7	(100.0)

주: N.C.E 달리 분류되지 않는 (Not Classified Elsewhere :N.C.E.) 학과는 제외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academyinfo.go.kr〉, 표준분류 계열(2018), 가공, 2019.08.13. 업데이트.

¹¹⁾ 학교명에 예술, 음악, 미술, 체육, 영상, 뷰티, 공연, 영화를 포함하여 예체능전문 교육기관임을 표방하는 학교임.



각 문화예술 학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I-4〉 참조).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용·체육 분야의 경우 체육학과가 135개로 무용 43 개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미술은 디자인계열이 136개로 가장 많았고 순수미술 59개, 미술학 29개, 응용미술 22개 순으로 많았다. 연극영화계열은 연극학과가 41개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20개, 방송연예 19개였다. 음악관련 학과를 살펴보면 음악학이 6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실용음악 42개, 기악 41개, 작곡 24개, 국악 6개교로 나타났다. 응용예술분야를 살펴보면 6개 관련 학과 중 영상예술이 5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애니메이션과 28개, 사진 12개, 게임 7개, 만화 관련 학과는 6개교가 있었으며 음향관련 학과는 0으로 나타났다.

〈표 II-4〉2018년 문화예술계 학과 전공에 따른 분포 유형

(단위: 개, (%))

구분		전문대학		대학		디	학원	대학원대학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교육	중등예술 체육교육	0	(0.0)	36	(19.4)	81	(17.9)	0	(0.0)
무용	무용	7	(5.6)	42	(22.6)	43	(9.5)	0	(0.0)
체육	체육	77	(62.1)	135	(72.6)	159	(35.2)	0	(0.0)
미술	공예	16	(12.9)	32	(17.2)	46	(10.2)	0	(0.0)
	디자인	83	(66.9)	136	(73.1)	177	(39.2)	0	(0.0)
	미술학	0	(0.0)	29	(15.6)	50	(11.1)	0	(0.0)
	순수미술	1	(0.8)	59	(31.7)	56	(12.4)	0	(0.0)
	응용미술	11	(8.9)	22	(11.8)	21	(4.6)	1	(14.3)
	방송연예	13	(10.5)	19	(10.2)	3	(0.7)	0	(0.0)
연극 영화	연극	21	(16.9)	41	(22.0)	40	(8.8)	0	(0.0)
0-1	영화	4	(3.2)	20	(10.8)	11	(2.4)	0	(0.0)
음악	국악	2	(1.6)	20	(10.8)	19	(4.2)	0	(0.0)
	기악	1	(0.8)	41	(22.0)	15	(3.3)	0	(0.0)
	성악	1	(0.8)	31	(16.7)	5	(1.1)	0	(0.0)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33

구분		전등	근대학	디	학	디	학원	대학원대학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실 용음 악	30	(24.2)	42	(22.6)	28	(6.2)	0	(0.0)
	음악학	12	(9.7)	62	(33.3)	93	(20.6)	3	(42.9)
	작곡	1	(0.8)	24	(12.9)	5	(1.1)	0	(0.0)
응 용 예술	게임	4	(3.2)	7	(3.8)	7	(1.5)	0	(0.0)
	만화	6	(4.8)	6	(3.2)	3	(0.7)	0	(0.0)
	사진	8	(6.5)	12	(6.5)	15	(3.3)	0	(0.0)
	애니메이션	7	(5.6)	28	(15.1)	22	(4.9)	0	(0.0)
	영상예술	29	(23.4)	54	(29.0)	59	(13.1)	1	(14.3)
	음향	2	(1.6)	0	(0.0)	1	(0.2)	0	(0.0)
기타	기타 뷰티아트		(45.2)	29	(15.6)	29	(6.4)	0	(0.0)
예체능학과 보유 학교		124	(100.0)	186	(100.0)	452	(100.0)	7	(100.0)

주: N.C.E 달리 분류되지 않는 (Not Classified Elsewhere :N.C.E.) 학과는 제외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academyinfo.go.kr〉, 표준분류 계열(2018), 가공, 2019.08.13. 업데이트.

대학의 문화예술계학과 내의 남녀 재학생 수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158,281명(61.6%)으로 남학생 98,767명(34.8%)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II-5〉참고). 그러나 반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성비를 살펴보면 전임교원의 경우 남성이 4,875명(63.9%)으로 여성 2,757명(36.1%)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중심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표 II-6〉참고). 이러한 문화예술계학교의 남성교수진 중심의 구성은 권력과 젠더불균형에 기반을 둔성폭력·성희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표 II-5〉 2018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계열 재적현황

(단위: 명, (%))

								(= 11	3, (70))
구분	재학생 수(A)			휴학생 수(B)			재적학생 수(A+B)		
	계	남학생	여학생	계	남학생	여학생	계	남학생	여학생
전문대	54,847	21,396	33,451	24,626	18,389	6,237	79,473	39,785	39,688
	(100.0)	(39.0)	(61.0)	(100.0)	(74.7)	(25.3)	(100.0)	(50.1)	(49.9)
디를	177,662	68,777	108,885	59,406	40,691	18,715	237,068	109,468	127,600
대학	(100.0)	(38.7)	(61.3)	(100.0)	(68.5)	(31.5)	(100.0)	(46.2)	(53.8)
LIIZIOI	24,360	8,531	15,829	5,856	2,480	3,376	30,216	11,011	19,205
대학원	(100.0)	(35.0)	(65.0)	(100.0)	(42.3)	(57.7)	(100.0)	(36.4)	(63.6)
 대학원 대학	179	63	116	59	24	35	238	87	151
	(100.0)	(35.2)	(64.8)	(100.0)	(40.7)	(59.3)	(100.0)	(36.6)	(63.4)
합계	257,048	98,767	158,281	89,947	61,584	28,363	346,995	160,351	186,644
입계	(100.0)	(38.4)	(61.6)	(100.0)	(68.5)	(31.5)	(100.0)	(46.2)	(53.8)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academyinfo.go.kr〉, 2018/예 체능계열/재적 학생 현황, 2019.07.23 업데이트

〈표 II-6〉 전국 고등교육기관 예·체능계열 교원현황

(단위: 명, (%))

								(= 11	0, (,,,,
구분	전임교원 수(A)			비전임교원 수(B)			교원 수(A+B)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문대	1,728	1,028	700	5,198	2,706	2,492	6,926	3,734	3,192
	(100.0)	(59.5)	(40.5)	(100.0)	(52.1)	(47.9)	(100.0)	(53.9)	(46.1)
대학	5,561	3,631	1,930	18,245	8,992	9,253	23,806	12,623	11,183
	(100.0)	(65.3)	(34.7)	(100.0)	(49.3)	(50.7)	(100.0)	(53.0)	(47.0)
대학원	322	204	118	2,034	1,007	1,027	2,356	1,211	1,145
	(100.0)	(63.4)	(36.6)	(100.0)	(49.5)	(50.5)	(100.0)	(51.4)	(48.6)
대학원대 학	21	12	9	71	28	43	92	40	52
	(100.0)	(57.1)	(42.9)	(100.0)	(39.4)	(60.6)	(100.0)	(43.5)	(56.5)
합계	7,632	4,875	2,757	25,548	12,733	12,815	33,180	17,608	15,572
	(100.0)	(63.9)	(36.1)	(100.0)	(49.8)	(50.2)	(100.0)	(53.1)	(46.9)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사이트〈http://academyinfo.go.kr〉, 2018/예 체능계열/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2019.07.23 업데이트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35

나.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실태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특징으로 미성년자와 갓 성년기에 접어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2018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 전공 분야에서 성관련 사건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18:164). 이는 문화예술계 교육의 특성에 기인 하는데 도제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특성 상 대학입시를 앞둔 청소년과 문화예술계학과에 재직 중인 학생은 스승인 현직 예술가와 교수의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11). 이러한 위계적 관계를 활용해 남성 예술가나 교수가 예술성을 핑계로 학생에게 예술가는 성적으로 자유로워야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입시켜 성행위를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6). 또한 졸업 이후 사회진출 시 교수 및 선배의 영향력이 큰 문화예술계 재학생의 경우 교수의 뜻에 반하는 의사표현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미정 외, 2018:39).

피해자에게 겪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폐단은 특히 미성년자와 사회진출 혹은 입문을 압둔 집단들에게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생이나 지망생은 자신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가해자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상당하며, 가해자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가 고의인지, 혹은 불쾌한 기분을 스승선배에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효인, 2017:33).

문화예술계 대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 일반 대학생 조사결과를 소개하려고 한다. 12) 부산과 경남 지역 10개 4년제 대학에 재학생 대상로 954명이 조사되었는데, 전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11.4%로 여학생 12.9%, 남학생 9.2%인데, 성별로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 여성과 남성 각각 29.3%, 32.4%, 술 따르기 강요 10.7%, 5.9%, 노골적 신체접촉 44.0%, 52.9%, 강간 6.7%, 2.9%로 조사되었다(공미혜, 2010).13)

¹²⁾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는 없고 개별 연구자에 의한 소규모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들 연구의 표집방식이나 기준이 다양하여 결과 수치를 비교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대학의 성희롱고충처리 기구 운영과 사건처리 현황에 대한 것이다.

¹³⁾ 동 연구에서 성폭력 용어를 성희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공미혜 연구에서 행위별 피해는 성별 각 집단 내에서 비율을 산출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특정 항목에서는 남성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다. 아주대성폭력상 담센터가 수행한 성희롱 실태조사이 내용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 48.4%, 시각적 37%, 신체적 9.4%이고 강간 및 강간미수 5.1%로 조사되었다(아주대성폭력상담센터, 2015). 아주대 조사에서 행위자는 친구인 경우 39.1%, 선배 22.3%, 교수·강사 8.2%, 학교직원은 3%로 나타났다(아주대성폭력상담센터, 2015).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예대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총 403명이 응답하였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2018: 5,21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응답여성 339명 중 135명(39.8%), 남성 64명 중 12명(18.8%)으로 나타나 여성이 2배 이상 높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2018:213).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여성과 남성 각각 28.9%, 14.1%, 원치 않는 신체 접촉 10.9%, 7.8%, 회식에서 옆에 앉는 것이나 술 따르기 요구 11.8%, 3.1%, 성관계 강요나 회유는여성 6.8%로 조사되었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2018:215). 이러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가한 자를 보면 선후배와 동료인 경우가 여성과 남성 각각 75.6%, 75%, 교수 각각 46.7%, 16.7%, 비전임교수 31.9%, 25%, 대학 외 문화예술계 인사 20%, 8.3%로 나타났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2018:22).

조사 기준과 개념의 상이함으로 기존 대학생 대상 조사나 문화예술계 대학생·대학원생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 행위자 중 교수나 비전임 교수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자살 및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의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성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겪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경험이 자살과 우울증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 대학생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에놓이게 된다(나현주, 2018:311).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37

문화예술계학과 내에 성폭행·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 내 지원체계가 온전히 갖춰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한 대학은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아우르는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고충 방지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2018년 전국의 312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는 열악한 예산과 인력 및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낮은 조직위상을 갖고 있었다(이미정 외, 2018:3). 나아가 대학기관에 따라서 성폭력 해결을 위한 학교의 대응에서 격차가 있었으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 저조, 대학 내 성폭력예방교육 방식 및 내용의 한계가 지적되었다(이미정 외, 2018:117). 일례로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비밀보장 미비,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문제,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 부족 및 콘텐츠의 한계, 전담기구로서의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대학생 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에서는 피해 자들이 폭로 이후 겪는 2차피해와 역고소에 따른 부담을 언급하였으며, 대학 내 분쟁해결기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18:158). 이는 담당자의 업무 과다와 잦은 교체 및 타 업무를 겸임하는 현실에서 기관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징계에 대한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이는 결국 교내기구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만든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로 이어졌다.

다. 언론기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1) 언론기사 선정 개요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2018년 초 미투운동 이후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는 사건발생 상황과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기에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의 건수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도된 기사 중 사건의 맥락과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사의 선정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투운동14)이 시작된 2018년 1월 29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1년 7개월간 동안 일간지, 인터넷신문, 매거진, 전문지 등 41개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검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대학'+'성폭력', '대학'+'성희롱', '대학'+'성추행'인데, '대학'+'성촉력'로 검색된 기사는 4,088건, '대학'+'성희롱' 기사는 2,253건, '대학'+'성추행' 기사는 2,686건으로 총 9,027건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중 가장 이슈화되었고 사건 가해자, 피해 내용, 처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기사를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계 대학 성폭력·성희롱 피해 18개 사례를 선정하여 가해자와 피해발생 학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유형, 발생장소,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한다(〈표 II-7〉 참조). 분석대상 18사례는 12개 대학에서 발생했고 3개 대학에서 피해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피해사례가 5건 발생한 대학도 있었다.

〈표 II-7〉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관련 기사

연번	사례	대학 소재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피해내용
115)	A 사례	서울	관현학과 교수-학생들	•관현학과 S교수 지속적으로 학생 외모평가, 성희롱 발언, 자세 교정을 해준다며 성추행
2 ¹⁶⁾	B 사례	서울	조소학과 교수-학생	•조소학과 K교수 MT에서 학생 성추행, K교수 주최 술자리에서 그의 지인에 의한 학생 성추행을 보고도 방관
3 ¹⁷⁾	C 사례	서울	문예창작과 교수-학생들	•문예창작과 교수가 10년 전 제자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 를 입은 학생이 2~3명 추가 폭로

¹⁴⁾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은 2018년 1월 29일 한 현직 검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¹⁵⁾ 서울신문, 2018.06.11., 한국대학신문, 2018.03.27., 중앙일보, 2018.03.22., 뉴스1, 2018.10.24. 일자 기사.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39

연번	사례	대학 소재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피해내용
4 ¹⁸⁾	D 사례	서울	영화예술학과 교수-학생들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20년 전 모텔에서 제자를 성폭행 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하고 다른 피해자를 차안 에서 성추행
5 ¹⁹⁾	E 사례	청주	공연영상학부 교수-학생들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학생의 공연 준비 지도 후 자신의 오피스텔이나 노래방으로 불러 성희롱적 발언과 성추행, 성폭행 시도
6 ²⁰⁾	F 사례	서울	의상디자인과 교수-학생들	•의상디자인과 교수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성적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실습용 샘플을 가슴골에 넣었 다가 돌려주는 등 성추행
7 ²¹⁾	G 사례	부산	예술문화 영상학과 교수-학생들	•2014년부터 술집, 연구실에서 기치료를 핑계로 성추행, 노래방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적 발언
8 ²²⁾	H 사례	서울	현대실용 음악과 교수-학생들	•2018년 4~5월 수업시간에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개인 교습 중 손을 잡는 등 성추행
9 ²³⁾	 사례	서울	연극영상학과 교수-학생들	•학과 영상편집실을 안마방으로 개조하여 학생을 불러 안마 지시하는 등 성추행
10 ²⁴⁾	J 사례	제주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교수-학생들	•수년간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 참고 서적 강매, 노동 력 착취 등 갑질
11 ²⁵⁾	K 사례	서울	음대 교수-학생들	•음대 교수가 학생과 회식자리에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성추행하였으며, 남자친구와의 진도를 묻는 등 언어적 성폭력
12 ²⁶⁾	L 사례	서울	문예창작학과 교수 -학생들	•2015년 2월 학생에게 식시와 반주를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
13 ²⁷⁾	M 사례	서울	예술디자인 대학 교수 -학생들	•2012년 5월 본인지 지도하던 학생과 저녁식사 후 자신 의 차에서 성추행, 2012년 9월 학생들과 연습공연 후 뒤풀이 자리에서 여학생들 성추행, 당시 술취한 대 학원생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강간미수
14 ²⁸⁾	N 사례	서울	방송영상과 교수-학생들	•2018년 학생들과 뒤풀이 과정에서 성추행, 2016년 공개수업 중 강의실 앞에서 촬영장비 다루는 시범을 보이면서 성추행
15 ²⁹⁾	O 사례	서울	연극원 교수-학생들	•2018년 2월 학생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연번	사례	대학 소재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피해내용
16 ³⁰⁾	P 사례	서울	영상원 교수-학생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여러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1731)	Q 사례	서울	연극원 교수-학생들	•강의 중 여학생들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1832)	R 사례	서울	연극원 교수-학생들	•수업 중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불편을 유발 하는 발언

위에 소개된 18개 사례가 언론 기사로 보도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자료와 정보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 에서 이들 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성 희롱·성폭력 사건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위에 소개한 언론기사를 통해 소개된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모두 교수이고 피해자는 모두 학생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성폭력

¹⁶⁾ 서울신문 2018.03.27., 서울신문, 2018.06.11., 한국대학신문, 2018.03.20. 일자 기사.

¹⁷⁾ 노컷뉴스, 2018.06.08. 일자 기사.

¹⁸⁾ 중앙일보, 2018.03.01., 중앙일보, 2018.04.03., 뉴시스, 2018.09.11 일자 기사.

¹⁹⁾ 동아일보, 2018.02.21., 세계일보, 2018.05.30., 조선일보, 2018.03.10. 일자 기사.

²⁰⁾ 중앙일보, 2018.05.09., 중앙일보, 2018.05.24., 세계일보, 2018.06.27. 일자 기사.

²¹⁾ 국제신문, 2019.07.10., 세계일보, 2019.07.10. 일자 기사.

²²⁾ MBC뉴스, 2019.06.24., 국민일보, 2019.06.24. 일자 기사.

²³⁾ 중앙일보, 2018.11.19., 서울신문, 2018.11.19. 일자 기사.

²⁴⁾ 세계일보, 2018.10.25., 한국일보, 2018.11.01. 일자 기사.

²⁵⁾ 중앙일보, 2019.08.14. 일자 기사.

²⁶⁾ 경향신문, 2019.04.14., 한겨레, 2019.04.15., 국민일보, 2018.07.22. 일자 기사.

²⁷⁾ 일요서울, 2018.07.06. 일자 기사.

²⁸⁾ 노컷뉴스, 2019.06.09., 일요서울, 2019.06.26. 일자 기사.

²⁹⁾ 노컷뉴스, 2019.06.09., 일요서울, 2019.06.26. 일자 기사.

³⁰⁾ 노컷뉴스, 2019.06.09., 일요서울, 2019.06.26. 일자 기사.

³¹⁾ 노컷뉴스, 2019.06.09., 일요서울, 2019.06.26. 일자 기사.

³²⁾ 노컷뉴스, 2019.06.09., 일요서울, 2019.06.26. 일자 기사.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41

사건 가해자는 모두 교수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투운동 맥락에서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제기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덮어 두었던 사건들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이 교내 고충처리기구에 의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피해가 발생한 학과는 연극·영화 관련학과에서 9사례, 미술관련 학과에서 4사례, 음악관련 학과에서 3사례, 문예관련 학과에서 2사례로 발생하였다.

3) 피해 발생장소

사건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18사례 중 장소 미상인 사례는 2건이다.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은 7사례인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강의실과 술집으로 각각 5건이었다. 그 다음은 차 안으로 3건, 교수 연구실과 모텔, 노래방이 각각 2건, 가해자 집, 피해자 집, 연습실 및 편집실, MT장소, 도로변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4) 성폭력 피해 양상

피해유형은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언어적 성희롱으로 다양하고, 1사례에 피해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다. 18사례 중 강간은 1건, 강간미수는 2건, 성추행은 14건, 언어적 성희롱은 11건이었다.

성희롱의 경우 학생에 대한 외모평가나 성관계 질문과 "여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해야 기(氣)가 죽지 않는다"33), "밖에서 만났으면 오빠다", "널 보면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34).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관련 언론기사에 의하면 해당 교수들은 학생 진로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어필이 필요하고 성관계 경험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요소로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유명한 큐레이터를 꼬셔서 좋은 데서 전시도 하고 그래. 내가 여자라면 진짜 성공할 자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걸 못하니?", "여성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35), "여자애들은 경험이

³³⁾ 국제신문, 2019.07.10. 일자 기사.

³⁴⁾ 국민일보, 2019.06.24. 일자 기사.



없을수록 글이 별로다. 내 딸이 만약 처녀라면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얘랑 좀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36). "여배우는 색기(色氣)가 있어야 한다. 성상납은 당연한 거래다. 다 벗고 달려들 정도로 욕망이 있어야 한다"37) 등의 심각한 수준의 성적 발언이 확인되었다.

본 언론기사 자료에서 확인된 성추행은 개인레슨 중 자세교정 등 지도나 기(氣)치료를 핑계로 강제추행하거나 마사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습관적으로 강의 중 수업재료를 건네거나 수업용 장비를 다루는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술집이나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몸을 더듬는 성추행도 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당해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지르고도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 언론기사 자료 중 M사례의 경우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석사 졸업을 시켜줄 수 없고 음악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할 것"38)이라고 위협하며 모텔에 갈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레슨이나 도제식 교육은 밀폐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 발생에 취약하다. 전시·창작·작품준비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고, 공연이나 전시 후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 하기도 했다. 이들 학생은 학업 수행 기간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가해자 교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교수의 졸업 후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두려움을 갖고 가해교수를 고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5) 가해자 처벌

사법절차와 별개로 가해교수는 학교 당국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징계수준이 피해자나 학과 학생들의 기대에 비해 낮아 이들의

³⁵⁾ 한국대학신문, 2018.03.20. 일자 기사.

³⁶⁾ 한겨레, 2019.04.15. 일자 기사.

³⁷⁾ 중앙일보, 2018.03.01. 일자 기사.

³⁸⁾ 일요서울, 2018.07.06. 일자 기사.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43

불만이 적지 않다.

본 언론보도 자료 소개된 가해교수 징계는 해임 또는 해촉은 7건, 정직 4건, 파면 3건, 징계 보류 3건, 학교 측의 구두 경고 1건으로 나타났다. 해임된 가해교수 중 1명은 기 마사지를 핑계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례로 재판에서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39)을 받았고, 정직처분을 받은 4명의 가해교수 중 2명은 소송 승소 및 증거부족 등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었으며, 1명은 경찰 조사 전 자살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징계보류 된 가해교수 3명은 학교 측이 정식조사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3명 중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명은 재판부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1명은 성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접수가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문화예술계 대학의 자정 노력과 한계

미투운동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으로 젠더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피해자지지 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개된것은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학생자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하여 학교 본부에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일례로 P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에서 일어난 L교수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본부의 인권센터와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대한성명문을 내고 본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였다⁴⁽⁰⁾. 구체적으로 비대위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행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며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센터 내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체계적 매뉴얼 마련 이행을 요구하는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공지도 학내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개제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기

³⁹⁾ 국제신문, 2019.07.10. 일자 기사.

⁴⁰⁾ 연합뉴스, 2018.03.15. 일자 기사.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개별 대학 중심으로 미투운동이 진행되었다면 이에 한발 나아가 공동 대응을 통한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3월 개인 천여 명과 100여개의 단체가 모여 '3.8 대학생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직장·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촉구함.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단체는 대학 내 발생하는 성폭력의 원인으로 교수에게 집중된 현 권력구조와 이를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 문제 교수를 용인하는 교수사회의 폐쇄적 구조 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41). 또한 대학 내 총여학생회가 차례로 폐지되는 현실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한 활동 외에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교수 연구실 앞에 교수를 비판하고 사퇴 및 재발방지를 촉 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포스트잇이 연대와 저항을 뜻하는 수단 으로서 자발적으로 개인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는 미투운동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음을 뜻한다. 한 예로 SNS를 통해 E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과 음악 대학 교수들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연구 실 앞에 'OUT! 나가세요'등이 적힌 포스트잇 수백 장을 붙이며 강도 높은 비 판을 이어갔다42). 이는 과거 학내 성차별적 위계질서 앞에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에 비해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교내 성 폭력에 대해 비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소결

2018년 한국에 등불처럼 퍼진 미투(Me too)운동은 이후 많은 언론보도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문화예술계 내의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분야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빈번히 성폭력이 자행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문화예술계가 지닌 독특한 작업환경과 교육방식에서 기인

⁴¹⁾ 교수신문, 2018.03.12. 일자 기사.

⁴²⁾ 뉴시스, 2018.04.07.일자 기사.



Ⅱ.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폭력 관련 현황 ▮ 45

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별적 작업환경이 있다. 문화예술계는 기존의 규범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성적 일탈과 예술적기행이라는 말로 포장될 때 그 폐해는 권력의 약자인 여성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남성 중심의 카르텔은 여성의 피해를 눈감고 때로는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둘째, 도제식 작업환경이 있다. 문화예술계는 일대일 도제식 교육이 중심이 되면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갖게 되고 성폭력은 주로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종사자의 경제적불안정성이 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근로자로서의 권리보장이 취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적활동 기회는 개인의 인맥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자리를 빌미로 한 성폭력의 위험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막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화예술계 대학 또한 미투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예술계 교육의 특성에 기인한 도제식 교육은 현재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수의 남성 예술가나 교수가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도 학생이 교수의 뜻에 반하는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대학 실태조사에서 예체능 계열 전공 분야에 성관련 사건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미정 외, 2018:64).

이에 문화예술계 내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계 내에 성폭력피해자 상설 기구 설립과 함께 기존의 분쟁해결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피해자를 2차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사법적 권한이 없거나 강제성이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 내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막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성폭력예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1. 성의동·성독덕 근실들 위안 군외에줄게 성색	49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정책	60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제안	68
4. 소결	77





\mathbf{III}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1.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정책

가. 문화예술계 정책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

1) 정책 추진경과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후 여성 예술 인들은 여성문화예술연합⁴³)을 결성하고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와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정책 11가지를 담은 '정책제안서'⁴⁴⁾⁴⁵⁾를 제출했다. 문체부는 2017년 예술인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문학, 미술, 사진 분야)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문화예술계 권력형 미투 이후 3월 8일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⁴⁶⁾ 100일간 특별신고센터와 특별조사단⁴⁷⁾을 운영했다. 문체부 성 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2018년 3월부터

⁴³⁾ 여성문화예술연합 홈페이지 https://www.waca2017.org/

^{44)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17.2.14.일자 기사.

^{45) 2017.2.8.} 문체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여성문화예술연합 홈페이지 https://www.waca2017.org/forum/jaryosil/2017nyeon-yeoseongmunhw ayesulyeonhab-jeongcaeg-jeanseo》에서 확인 가능하며, 2018년 미투 이후 문체부가 3월 8일에 발표한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⁴⁶⁾ 관계부처 합동(2018a).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3.8.).」.

⁴⁷⁾ 정확한 명칭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며 2018년 3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간 운영되었다. 특별신고센터는 문체부가 서울해바라기센터에 위탁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은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운영하였고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이수연외(2018)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 보고서」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의 「문화예술계



2019년 6월까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성폭력 정책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48) 2018년부터 문화예술계 전담 성폭력 피해 지원, 국고지원금 선정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문화예술인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 성폭력 가해자 국고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정비, 표준계약서에 성폭력방지조항 추가 등의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2019년 5월부터 문체부에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정책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방향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은 다음을 고려해서 수립되었다.

첫째, 70% 가량의 문화예술인들이 프리랜서4950)로 활동하고 있어 현행노동법에 포섭되지 않으며 소속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기본 구조로 하는 성희롱 금지와 구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5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징계조치를 할 조직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국고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 지원과 국고 지원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징계성 조치를 취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52)

둘째, 문화 분야 종사자들은 예술작품과 문화 콘텐츠를 깊이 수용해서 문화예술인이 되었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⁴⁸⁾ 문화체육관광부(2019b).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권고과제 및 이행 현황」. 내부문건.

^{49) 14}개 예술분야와 18개 지역의 예술인 5,002명을 조사한 결과,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0%, 겸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67.9%이다(전업예술인 : 겸업예술인 비율 = 57.4 : 42.6). 문화체육관광부(2018c). 「2018 예술인 실태조사」, p.22 참조.

⁵⁰⁾ 전국 국공립 및 민간 공연단체와 민간기획사 2861개의 고용형태별 단원 현황은 정규직 22.2%, 비정규직 77.8%,이며, 이 가운데 민간공연단체 2234개에서 단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8). 「2018 공연예술 실태조사(2017 기준)」 pp.201-202 참조.

⁵¹⁾ 박선영(2019).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구제 시스템의 구축과 실질화가 필요」 p.53. 참조.

⁵²⁾ 관계부처 합동(2018a).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3.8.),」.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51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3)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내 조직문화 점검과 성인지감수성 인식향상에 대한 교육방향을 설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54)

나. 시행 정책

1) 문화예술계 전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개소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2018년부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55),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56), 한국예술인복지재단57)에서 문화예술인 성폭력 피해 상담 및

^{53) &}quot;예술가들은 예술작품과 문화콘텐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룹이면서 또 그 것을 생산하는 자이다. 예비 예술가들은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작품들을 학습하면서 작품에 내재된 성차별적 관점과 남성 중심 서사,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내면화하면서 예술가로 성장한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다시 남성 중심 서사의 예술작품과 문화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예술계 및 국민 전체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성차별 의식이 재생산되고 지속되어 온 과정이며,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이성미(2019), 「#문화예술계_성폭력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정책활동의 성과와한계」p.5 참조.

^{54) &}quot;3.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 문화예술계의 모든 공적 지원 신청, 공공사업참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대상별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내 조직문화 점검과 성인지감수성 인식향상에 대한 교육방향을 설정. -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모니터링 및 공공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교육 확산에 노력. ○ 성인지감수성 교육,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 나아가 국민 전체에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2018a).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2018. 7.2.)」중 교육에 대한 부분 참조.

⁵⁵⁾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고 (사)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고 있다. 든든 홈페이지 http://solido.kr/ (검색일 2019.10.15.)

⁵⁶⁾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홈페이지 http://bora.kocca.kr/bora/main.do (검색일 2019.10.15.)

^{57) 「}예술인 복지법」 개정(2018.10.16.)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동법 제10조 제1항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별로 성폭력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심리상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영화계, 콘텐츠산업 분야 예방교육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든든은 소송지원뿐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합의 중재도 지원하고 있다.

2) 성폭력 행위자 국고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공직과 심사위원직 배제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① 성폭력 행위자와 단체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며,58) ②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보조사업자선 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59) ③ 문화예술발전 유공 포상 후보자로 추천

제10호) 그 외에도 동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제2항 신설 ("②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제3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불공정행위 유형 제1호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추가되었다.("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social/sub11.do (검색일 2019.10.20.)

⁵⁸⁾ 단체의 경우 행위자 1인으로 인해 단체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위자가 단체의 단순한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주관 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9)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② 보조 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해당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53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성폭력 발생 사업 또는 성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점검을 할 수 있고,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60)

3) 표준계약서 및 서약서 성폭력방지조항

① 표준계약서에 성폭력방지조항 추가

문화예술계는 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이고⁶¹⁾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⁶²⁾ 문화예술인들이 용역비 체불, 저작권 침해 등 권익을

^{60)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주관 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성폭력 발생사업 또는 성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기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⁶¹⁾ 콘텐츠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10만 5,475개이고 종사자 수는 총 64만 4,847명이다. 이 가운데 12,189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1-9인 규모의 사업체 수가 96,496개로 91.6%인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8d).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년기준)」 pp.59-60 표 2-1-4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참조.

⁶²⁾ 문화체육관광부(2018c)의 「2018 예술인 실태조사」(응답자 5,002명)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률은 평균 37.3%이며 사진 분야의 경우 8.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예술업계는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아(18년 기준 76%)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2.2.). 「예술인 복지법」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참조.



5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침해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문체부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참고할 표준 계약서를 분야별, 계약형태별로 만들어 고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63).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2차 권고에서 표준계약서에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고,64) 미술 9종, 출판 5종, 대중문화 3종, 만화 6종 등의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방지 및 책임조항이 포함되어 개정 고시되었다.65) 계약 당사자 간 성폭력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9종에는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66)

⁶³⁾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미술, 영화, 대중문화, 공연예술,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저작권계약, 방송, 근로표준계약서 등 분야별로 업로드되어 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게시글 "표준계약서 보급" http://www.kawf.kr/welfare/sub03.do 참조.

⁶⁴⁾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제2차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권고문(2018.11.13.)」을 통해 "4.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부 장관은 성차별 금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라.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를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8b). 「제2차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권고문(2018.11.13.)」, p.6. 참조.

⁶⁵⁾ 가장 최근에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개정된 만화 6종 표준계약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개정 고시된 표준계약서 가운데 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서, 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6종에 성폭력 방지 및 책임조항이 추가되었다. 웹툰연재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⑥ 저작권자가 서비스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 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1호)」(2019.9.30.)"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 ew.jsp?pSeq=2525 참조.

⁶⁶⁾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중「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제21조 (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55

② 서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 지원센터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67)68) 참여 단체는 예방교육 이수, 사건 발생 시 대응 등을 서약하고 위반 시 공모선정 취소, 이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항이 미술 9종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 체육관광부(2019c).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참조.

67)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공지하며(홈페이지 사업공모 443번, 2019.10.1. 게시) "2020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편내용"으로 "예술가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여 인건비 편취나 횡령을 방지하고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시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 위원회 간 지원조건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교육을 필수화합니다.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내 '2020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첨부자료 p.9.

참조.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 ew&page=2&cid=1602444&sf_icon_category=cw00000019;

68)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응모요강에도 지원신청서와 함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가 필수 제출서류로 공지되어 있다.(사업공모 455번, 게시일 2019.12.02.) 그런데 서약서 내용이 단체 신청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어서 개인 지원사업에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 ew&page=&cid=1602641&sf_icon_category=cw00000019 이 외에도 보조 사업자를 공모하는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청년예술형) 공모 안내"(사업공모 407번, 2019.3.26.게시)에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사항 공통안내"를 별첨자료로 공지한 바 있다.



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① 공적 지원금 및 공공사업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공적 지원금 신청,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진위의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는 크랭크인 전에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69)

②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공공기관, 기업 등의 조직과 다른 다양한 예술창작과 문화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2018년에 시행되어 19명이 위촉되었고 2019년에도 교육과정이 진행중이다. 70) 영화진흥 위원회와 든든은 영화인을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교육하여(2017-2018) 10여 명을 강사로 위촉했고 영화제작 현장 및 영화제 예방교육 신청 시 영화인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71)

③ 문화분야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감을 얻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문화분야 현장의

⁶⁹⁾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년 현장영화인 VR단편영화제작교육 일반(입문+)과정 2기 및 첨단영화제작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홈페이지 사업공지 40번, 2019. 8.19.)에서 '기타 유의사항'으로 "촬영 전 제작참여자 전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 대상자와 스탭 등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서 진행하는 '영화산업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2시간)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라고 공지하였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영진위 정책은 2018년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prom/promotionBoardDetail.do (검색일 2019.8.30.) 참조.

^{70) &}quot;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9월 2일부터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8.30.)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참조.

⁷¹⁾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홈페이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http://solido.kr/enVIronment/request/ (검색일 2019.8.30.)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57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개발중이며 이후 문화 분야 예방교육과 강사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예정이다.72) 든든은 영화 성평등 교육 표준강의안을, 보라는 방송 성평등교육 강의안을 개발했다.73)

5)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2017년 문학, 미술, 사진 3개 분야에서 예술인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와 영화 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7⁴) 2018년에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문화예술 종사자(프리랜서 등), 문화예술 대학(원)생,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고,7⁵) 문체부는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체육 분야 성인지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7⁶)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77), 2016년 해시태그 전까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었고, 여성가족부가 정기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직업 항목에 '예술인'이 없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예술분야의

⁷²⁾ 문화체육관광부(2019b).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권고과제 및 이행 현황」, 내부문건

⁷³⁾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콘진원-양평원, 성평등 의식 확산 위한 업무협약체결〉 "올해는 일차적으로 방송콘텐츠 분야 종사자 및 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방송콘텐츠 분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8/1840464.do?menuNo=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8/1840464.do?menuNo= 200831 (2019.8.29. 홈페이지 게시) (검색일 2019.8.30.)

⁷⁴⁾ 문화체육관광부(2017).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영화진흥위원회(2018). 「2017년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⁷⁵⁾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조사단 결과보고서」

⁷⁶⁾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9.10.).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방표

^{77) 「}예술인복지법」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10.27.) 참조.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8)

6) 추가 과제

①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현재 문화예술계 사건처리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문화예술인 및 예비 문화예술인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하고 있으나 세 곳의 상담센터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는 신고처리시스템은 아니다. 또한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적용되고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다. 법률상 성범죄 외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은 조직 내, 또는 업무 및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조사해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처리가불가능하다. 문체부 담당자들은 신고상담센터를 신고처리시스템 이행으로 답

^{78)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R9D0U4L1S 9F1I8B0L3A0C8U0S5U7 (검색일 2019.10.15.)

⁷⁹⁾ 문화체육관광부 대책위 권고 이행현황에 대한 내부 문건(2019b)을 보면 「예술인 복지법」 제6조2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과 유사한 성희롱금지 규정 신설하라는 대책위의 권고 이행현황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문화 체육관광부 예규 제43호(2017.3.16. 개정)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의 예술창작활동 방해의 예시로 "(가) 출연자 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경우"(p.23)를 들고 있다. 한편, 2018.10.16. 개정된(2019.1.17.시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성희롱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은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예술인복지법이 개정 된 지 1년이 넘도록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만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다. 법령과 지침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의 경우 2018년부터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지원 업무를 시작했을 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조사, 판정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59

변하고 있는데 "신고상담센터와 신고처리시스템은 분리되어 구축될 필요"가 있다.80) 문체부 예방대책위원회는 4차권고(종합권고)에서 이를 지적했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도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81)

② 입법 보완: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일어났을 때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제31조 문체부 장관)하면 조사(제30조 예술인 보호관)를 거쳐 심의(제28조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해서 징계조치(제41조 문화체육부장관)를 취할 수 있다.82) 또한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 통과가 시급하다.

7) 추진체계

① 문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전담 인력과 부서 신설

8개 부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도 2019년 5월 7일부터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83)이 신설되어 인력 8인의 부서가 만들어졌다. 이 전담부서에서 문화

⁸⁰⁾ 문화체육관광부(2019a).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종합 권고」(2019.7.1.) 내부문건은 한 포럼 발표문을 통해 재인용한 것임, 이한본 (201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법.제도적 과제」 p.19 재인용 (대책위원회 종합권고의 내용은 이한본(2019) 발표자료에 요약되어 있다).

⁸¹⁾ 교육부 보도자료(2018.5.31.). "교육분야 자문위원회, 대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82)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지원차별,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등에 의한 예술인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예술인 조합의 결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R9D0U4L1S 9F1I8B0L3A0C8U0S5U7 이 제정 법안(검색일 2019.10.15.) 참조.

⁸³⁾ 문체부뿐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5개 부처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경찰청은 2018년에 임시로 설치한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인력 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안이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됨. [여성신문], "국무회의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신설 의결" 2019.4.30. 일자 기사 참조.



분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과 성폭력 방지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서 운영하던 민관으로 구성된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되었다.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영화 등 분야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예방교육 및 강사 양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성평등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② 성평등 사업 및 성폭력방지 사업과 예산 신설

2019년 관련 예산이 신설되어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예술계 행동 강령 개발 지원,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포럼, 성평등 콘텐츠 발굴, 성인지 현황조사 등의 사업을 시행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에도 성폭력 피해 지원과 예방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2018년과 2019년에 신설되었다.

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정책

가. 추진과정

2018년 3월 대학이 개강하면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84 미투와 학생들의 대응이 이어졌다. 4월에 대학생, 교육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84) &#}x27;권력형 성폭력'이란 명명에 대해 신상숙의 다음 글 참조: "최근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언론의 지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 사건들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다. 이러한 조어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교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이라든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표현을 훌쩍 뛰어넘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성희롱·성폭력은 그 자체가 젠더의 불균형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문제이지만, 대학 캠퍼스에서의 그것은 집단이나 조직에 상존하는 위계적 질서와 지위격차에 따른 권력의 불균형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교수-학생의 관계는 학점, 논문지도, 나아가 진로와 고용기회를 좌우할 수있기 때문에 위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점에서는 학부생보다 오히려 대학원생이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신상숙(2018).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p. 22-23 참조.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61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가 열렸다.85)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스쿨미투에 대응했으며,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자문위원회는 1차 권고문에서 고등교육기관 개선과제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했다.86) 교육부는 현장 간담회와 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수렴하여 12월에 [교육 분야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 심의하였다.87). 그 후 2019년 6월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88)

나.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많고 대학 자율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정책 현실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주체는 대학과 대학별 전담 기구이다. 따라서 첫째, 대학별로 존재하는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랑을 강화하여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둘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수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한다. 셋째, 예방교육 대상을 대학 구성원 전체로 확대 강화한다. 넷째, 이행 상황을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공시하여 정책 이행을 유도한다.

⁸⁵⁾ 이 간담회는 대학(원) 미투 당사자, 총학생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학생 주체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어떤 제도의 공백이 있는지 공개 발표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교육부에 질의하는 정책 간담회였다. 노웅래 의원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공동주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촉구 간담회〉(2018.4.11. 이화여대). 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학생과 대학원생은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권력형 성폭력'으로 칭하고 사건처리 제도 개선과 '대학내 공동체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제기했다.

⁸⁶⁾ 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구성, ② 사안 처리 절차, ③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징계 및 사후조치,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⑤ 권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교육부 보도자료(2018.5.31).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제1차 권고: 고등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구제절차 관련」.

⁸⁷⁾ 관계부처 합동(2018b).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12.21.)」.

⁸⁸⁾ 관계부처 합동(2019).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19.6.28.)」.



1) 신고 대응체계 강화

①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

2019년 3월부터 교육부 산하에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를 설치해 대학별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112개 대학 상담소가 회원인 비영리법인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가 주관 운영한다. 대학별 상담기구의 현황 파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직무연수,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처리 행정문서 작성 및 기록물 관리워크숍,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89)

② 교육부에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교육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201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대학에 이첩하여 조사, 처리한다.⁹⁰⁾ 2019년 5월부터 익명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2차피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2) 가해자 징계 강화

① 교원의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학생은 피해가 있어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교수, 강사가 자신의 학점과 진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수, 강사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신 고하기 어렵다.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에 신고하면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징계 시효를 연장해 피해자가 교원의 영향 력에서 벗어난 후에 신고와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91)

⁸⁹⁾ 김영희(2019). 「대학 신고시스템 운영한계와 개선방향」 p. 52 참조.

^{90) 2018}년 3월~2019년 6월까지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학 성희롱·성 폭력 사안은 68건이다. 김지연(201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 현황」 p.14 참조.

^{91) 「}교육공무원법」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u> 수 있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63

②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학술연구 지원사업비 지급 중단, 1년간 학술연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교육부와 교원의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됨'을 협약에 명시하기로 했다.92) 이를 근거로 학술진흥법 시행령93)에 따라 협약 위반 시 학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된다.

③ 중징계 대상인 경우 의원면직 허용하지 않음

가해 교원이 사직서를 내더라도(의원면직)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⁹⁴⁾

행위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개정 2018.4.17.〉; 사립학교법」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수 있다.</u>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8. 4. 17.〉 (검색일 2019.10.15.)

92) 관계부처 합동(2018b).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2.21.) p.11 참조.

^{93) 「}힉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힉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 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⁹⁴⁾ 이 조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에 확인하여야 한다. 1.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④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강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징계의결 절차를 사립학교법에 명문화했다.95)

⑤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했다.97)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장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장계의결이 요구된 경우다른 장계사건에 우선하여 장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중장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때. 2.제62조에 따른 교원장계위원회에 중장계 의결을 요구 중인때. 3.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때. ⑤ 제4항에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2020.2.21.]

- 95) 「사립학교법」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 96) 「국가공무원법」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97) 「교육공무원 징계령」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②징계등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65

⑥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교육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했다.98)

3) 예방교육 강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시간강사도 예방교육의무대상이 되었다. 학생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원이나 학생이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해도 불이익 규정은 없는 학교가 대다수다. 예방교육 의무 이수가 학칙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며이에 대한 의무 법령은 없다.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성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거나 이수율을 공시하는 것으로 대학의 예방교육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9.2.26., 2019.8.6.〉

^{98) 「}교육공무원 징계령」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 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6.]"



-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시 지표 반영
- 대학 정보공시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 반영99)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을 연계. 2021년 3주기부터 시행 예정.100)
-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등 예비교원의 교육과정에 양성평등교육,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등 11개 주제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함.101)

4) 추진체계

교육부는 2018년 3월부터 부처 내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을 설치, 운영해왔는데, 2019년 5월부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개편되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2018년부터 4월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 분야 대책 안건을 상정 논의할 수 있다.

5) 추가 과제

교육부가 향후 중점과제로 발표(2019.6.28.)한 대학 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 사례집 발간

교육부는 2020년 계획으로 성희롱·성폭력 시안 내용, 처리과정 및 징계 결과를 수집하여 사례집(학교명과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을 발간, 배포하겠다고 함.

⁹⁹⁾ 교육부(2019). 「대학분야 성희롱 성폭력 자문위원회 권고내용 및 이행상황 (190827)」. 내부문건.

¹⁰⁰⁾ 관계부처 합동(2018b)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12.21.)」 p.12.

¹⁰¹⁾ 예비교원에 대한 대책은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대책이지만 예방교육 외에도 대학 교과과정에 성평등교육 및 예방교육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기에 서술했다. 관계부처 합동(201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19.6.28.)」 참조.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67

② 교육부의 적극적 개입

"중대, 심각한 교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 측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할청(교육청, 교육부)이 적극 개입하여 조사하고 징계 요구를 실시"102)하겠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기관 정책과 비교하면 대학 성폭력 정책은 빈약한 편이다. 결국 대학 성폭력 근절 정책은 각 대학의 의지와 여건, 대학별 상담기구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한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신고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 대학별 전담기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과 예규, 훈령 등이 필요103)
- 대학별 전담기구 인력 안정화 및 예산 확보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필요104)
- 대학 사건 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과 외부위원 위촉 및 징계위원회 회의 에 학생대표 참여 보장105)

대학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교수가 동료 학생과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력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교수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조력자의 경우는 학교 밖의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 담소의 법률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 또한 학생-학생 간 사안에서는 당사자분리조치를 취할 근거 법령이 부재하여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106)

¹⁰²⁾ 관계부처 합동(2019).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19.6.28.)」 p.6 참조.

¹⁰³⁾ 김영희(2019). 「대학 신고시스템 운영한계와 개선방향」 p.53 참조.

^{104) &#}x27;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또한 제1차 권고에서 "피해자와 신고인, 사안처리 전담인력에게 법적 분쟁시 법률 조력 제공"을 권고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8.5.31.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제1차 권고 (2018.5.31.)」.

¹⁰⁵⁾ 교육부 자문위원회의 권고 내용이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참여"가 필요하며 그래야 "봐주기식 징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성호(2018). 「발제2-대학 안에서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이란 무엇인가 2」p.34 참조.

¹⁰⁶⁾ 김영희(2019). 「대학 신고시스템 운영한계와 개선방향」 P.51 참조.



심의에서는 성폭력 전문가의 사건 판단이 필요하며,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학교 구성원의 한 축으로서 학생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107) 더구나 교수 -학생 간의 사건이며 징계과정에 학생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¹⁰⁸⁾ 제안

대학 권력형 미투에 왜 문화예술계열이 많았을까? 예술계열 교수는 학교에서만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현업 예술가를 겸하는 교수는 학생들이 진출할 직업적 예술계의 선배 예술가로서 졸업 후에도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술계열 교수의 영향력과 권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109) 예술대학성폭력 근절 대책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대책 외에 별도로 수립, 시행되고

¹⁰⁷⁾ 정계위원회에 학생 1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2017.12.28.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N7J1Z2E2 K8B1W7R3H8O5C3O9Z6W2 (검색일 2019.10.15.) 참조.

^{108) &#}x27;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예술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예술대학 제도개선 방안은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및 보급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이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 pp.43-47 참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정책과 차이가 없어서 따로 서술하지 않는다.

^{109) &}quot;문단의 인정을 받은 작가나 평론가는 문학제도의 여섯 가지 요소들에 대한 결정권을 겸하게 되면서 소수의 인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등단할 신인을 뽑는 심사위원은 곧 문예지의 기획위원이자 문예창작교육의 강사거나 교수이며, 문학상 심사위원이거나 수혜자이고, 때로는 출판사의 출간심사위원이며,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 등 공적 지원금의 심의위원이거나 수혜자가 된다." (p.36), "외부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권력이 문학계에서는 훨씬 막강하게 작동하는데, 이 권력은 작품을 인정받은 문인으로서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영향력, 즉 문화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p.37). 이성미(2018). 「문단_내_성폭력과 권리침해, 문단 권력구조와의 관계」참조.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69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대학별 전담기구를 중심에 놓고 대학 자율에 많은 것이 달려 있고, 예술계는 프리랜서가 대다수라서 교육이나 사건을 처리할 구속력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공적 규율 장치가 적은 두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이 문화예술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대학 예술계열 학과의 특성과 현황

1) 비전임 교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대학 예체능계열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2018년 비율을 보면, 전임교원이 23.4%, 비전임 교원이 76.6%인데, 전체 전임교원 비율 평균 44.9%에 훨씬 못 미친다. 실기 수업과 소규모 수업의 비중이 높은 예술계열 교과 특성과 연관이 있다. 2019년부터 시간 강사 등 비전임 교원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시간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지않았고 성추행,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학교 징계시스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다음 학기에 재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되었을 뿐이다.

이런 경우 다른 학교 강사로 실기 강의를 나가면서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 내 성희롱 등 조직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과 학교 내 징계시스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예술계열 교원의 비율이 다른 계열에비해 훨씬 높았다는 뜻이다.

한편 예술계열의 등록금은 의학계열 다음으로 높은데,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23.1%로 전체 계열 연체율 평균 9.2%를 훨씬 웃돈다.¹¹⁰⁾ 예술계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적 예술인이 된 이후에 예술활동 수입이 불안정하고 적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예술인의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1,281만원이 평균이며, '없음'과 '5백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예술인 비율은 56.2%이다.¹¹¹⁾ 대학 예체능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균에 못 미치는 것과 연계해볼 때 예술인이 교육직을 겸하게 되더라도 안정된 일자리 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뜻한다.

¹¹⁰⁾ 신혜슬(2019). 「실태증언」p.25 표5 참조.(2017년 기준)

¹¹¹⁾ 문화체육관광부(2018c). 「2018 예술인 실태조사」(14개 예술분야, 예술인 5,002명 응답)



〈표 Ⅲ-1〉대학계열별 전임·비전임 교원비율 및 교원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단위: 명)
2018	8년	교원 수	전임 비전임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체	전임	66,863	44.9	31.9	-
신세	비전임	81,953	55.1	_	-
인문	전임	10,096	37.6	26.6	25
인균	비전임	16,777	62.4	-	-
사회	전임	11,438	46.8	49.1	25
시외	비전임	12.984	53.2	_	-
교육	전임	3,430	39.4	32.2	-
业车	비전임	5,279	60.6	-	-
	전임	14,758	57.1	40.1	20
공학	비전임	11,108	42.9	-	-
TICH	전임	7,929	52.0	30.7	20
자연	비전임	7,310	48.0	-	-
OlOt	전임	13,973	63.8	10.0	8
의약	비전임	7.942	36.2	-	-
M 케노	전임	5,107	23.8	44.7	20
예.체능	비전임	16,709	76.6	-	-
 소속학과	전임	132	3.3	-	-
없음 	비전임	3,844	96.7	_	_

주: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2018. 자료 재구성

2) 대학 외부에서도 피해 발생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2018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 예술대학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행위자 유형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71

〈표 Ⅲ-2〉 문화예술계 대학 성희롱·성폭력 피해 행위자 유형

(2018년, 응답자 수 117명, 복수 응답)

행위자 유형	대학 선후배 및 동료	교수	비전임 교수	문화예술계 인사
비율	75.5%	44.2%	31.3%	19.0%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성폭력 행위자 유형 중 문화예술계 인사의 비율이다. 예술대학생이 학교 밖의 사설 문화예술 교육기관이나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 하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6년 문화예술계 해시태그 운동 때 SNS에 올라온 다수의 고발 내용과 일치한다. 예술대학에 재학중인 예술계열 전공 학생 또한 예술계 공식 진입에 필요한 현장성 있는 훈련을 받기 위해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예술 경향을 가진 예술 가로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 밖 교육기관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수가 학생 또는 대학원생과의 수업 후 이어진 회식 자리에 지인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부르거나, 교수의 예술행사 일을 보조하도록 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를 만나게 되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대학생의 피해가 학교 영역을 넘어 예술계에 걸쳐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유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를 동원함으로써 가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지배력은 더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112)

3) 예술계열 교원과 학생의 성비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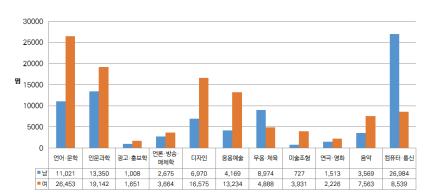
〈표 Ⅲ-3〉은 2018년 대학(전문대학과 대학원 제외)의 전임교원 수와 비전임교원의 수와 비율을 계열별 성별로 정리한 표이다. 예체능계열 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36%로 전체 평균 23.4%보다 높다. 한편 비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112) &}quot;가해자가 현직 예술가(시인, 연출가, 감독, 극작가, 화가, 배우 등)이자 대학교수인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직업 영역이 긴밀히 연결된 데다가 다른 영역에 비해 평판의 비중이 막대한 만큼 상당한권력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술 분야의 경우 전시와 지도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된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안정된 작품 활동과업계 인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수연 외(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보고서」p.72 참조.



전체 평균 40.8%로 전 계열이 통틀어 전임교원의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예체능계열의 비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51.7%로 가장 높다. 이점은 앞서 말했듯이 예술인들에게 전임교원의 일자리 수가 적은 것과 더불어특히 여성들에게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주로 제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영화아카데미(KAPA)의 전임교수는 5명 전원이 남성이지만, 외부강사 중여성의 비율은 33.3%이다.113)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교수는 13명전원 남성이며, 멀티미디어영상과, 방송영상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이론과 등영상원 전체 교수진29명 중에서 여성 교수는 5명으로 17.2%이다. 무용원 역시15명 교수진 중 여성 교수는 6명으로 40%이다.114)

그런데 예술계열의 학생 수는 여성 비율이 높다. 체육계열의 남학생 비율이 높아서 전체 예체능계열의 학생 수의 성별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자료를 재구성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림 III-1〉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세부 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2018)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1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2019d),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Ⅲ-1]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 성별 분포(2018)

¹¹³⁾ 조혜영·김선아(2019). 「데이터로 본 한국영화 성평등 현황: 한국영화 성평등 영화정책연구 중간발표」, 제2회 한국영화 성평등정책 포럼(2019.10.5.) 자료집, p.11 참조

¹¹⁴⁾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http://www.karts.ac.kr/index_karts.jsp

¹¹⁵⁾ 문화체육관광부(2019d).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p.37 (그림 8.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의 성별 분포). 전문대학, 대학과정, 대학원 졸업생을 합친 전체 188,826명을 분류한 것이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73

〈표 Ⅲ-3〉대학 계열별 성별 전임/비전임별 교원 수 및 비율(2018)

(단위: 명, %)

구분			교원 수			성별 비율	
Т	正	전체	남	여	남	여	
전체	전임	66,863	51,207	15,656	76.6	23.4	
신세	비전임	81,953	48,481	33,472	59.2	40.8	
010	전임	10,096	6,849	3,247	67.8	32.2	
인문	비전임	16,777	8,406	15,656 76 33,472 59 3,247 67 8,371 50 2,474 78 4,210 67 1,401 59 2,564 51 826 94 1,826 83 1,488 81 2,644 63 4,372 68 3,718 53 1,837 64	50.1	49.9	
사회	전임	11,438	8,964	2,474	78.4	21.6	
시외	비전임	12.984	8,774	4,210	67.6	32.4	
70	전임	3,430	2,029	1,401	59.2	40.8	
교육	비전임	5,279	2,715	2,564	51.4	48.6	
	전임	14,758	13,932	826	94.4	5.6	
공학	비전임	11,108	9,282	1,826	83.6	16.4	
TLCH	전임	7,929	6,441	1,488	81.2	18.8	
자연	비전임	7,310	4,666	2,644	63.8	36.2	
OlOt	전임	13,973	9,601	4,372	68.7	31.3	
의약	비전임	7.942	4,224	3,718	53.2	46.8	
M 케느	전임	5,107	3,270	1,837	64.0	36.0	
예.체능	비전임	16,709	8,073	8,636	48.3	51.7	
소속학과	전임	132	121	11	91.7	8.3	
없음	비전임	3,844	2,341	1,503	60.9	39.1	

주: 교육부.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2018. 자료 재구성

표 〈III-4〉는 그림의 표에서 전문대학과 대학원 졸업생 수를 제외하고 대학 과정 졸업생의 성별 비율만 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예체능계열 세부전공별 여성 학생 수의 비율은 미술조형 84.7%, 디자인 74.4%, 음악 72.9%를 비롯해 무용과 체육을 같이 묶인 35.4%를 제외하고는 여성 졸업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런데 예체능계열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은 36.0%로 성비가역전되는 것이다.



한편 예체능계열 취업자 남녀 취업률은 남자 67%, 여자 61.9%로 취업률에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6) 즉 취업자 수에서 여성 졸업생의 수가 많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예체능계열 취업에 있어서 성별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 진입 후에 신청하게 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분야 예술지원기금 신청자의 남녀 성별 비율도 예술대 졸업생의 성별 비율이 역전되어 취업자의 성별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7)

〈표 Ⅲ-4〉대학 문화·예술·체육 세부전공별 졸업생 성별 비율 (2018)

(단위: %)

-	- -	대호	ţ 과정
Š	각과 세월	41.7 58 30.4 69 39.3 60 37.0 63 40.2 59 25.6 74 27.3 72 64.6 35 15.3 84 39.4 60 27.1 72	여
	합계	41.7	58.3
이므케어	언어·문학	30.4	69.6
인문계열	인문과학	39.3	60.7
TI웨덴	광고·홍보	내명 남 함계 41.7 언어·문학 30.4 인문과학 39.3 광고·홍보 37.0 언론·매체학 40.2 디자인 25.6 응용예술 27.3 무용·체육 64.6 미술조형 15.3 연극·영화 39.4 음악 27.1	63.0
사회계열	언론·매체학		59.8
	디자인	25.6	74.4
	응용예술	27.3	72.7
예체능	무용·체육	대체학 40.2 다인 25.6 대예술 27.3 ·체육 64.6	35.4
계열	미술조형	15.3	84.7
	연극・영화	39.4	60.6
	음악	27.1	72.9
공학계열	컴퓨터·통신	75.0	25.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118) 문화체육관광부(2019d),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p.37 표12 재구성

¹¹⁶⁾ 김혜인(2018).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p.46. 〈표 8. 2015년 2016년 예체능계열 취업률 현황〉 2016년 자료 재구성

¹¹⁷⁾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2016-2019 아르코 지원 제도 성평등 팩트체크(2019.10.10.)〉 발표자료.

¹¹⁸⁾ 대학과정에는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 문화체육관광부(2019d).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연구」 p.37 표 12 참조.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75

나.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예술계에서 작품을 인정받은 예술가는 예술대학 교수를 거쳐 국공립 예술 단장 또는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하는 등 문화예술계 권력층과 대학 교수 집단이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대학 정책은 문화예술계 정책 으로 포괄해야 예술대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계 대학은, 문체부 소속의 국립 예술학교, 사립 예술학교,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예술계열로 구성된다.

1) 예비예술인에 대한 문체부와 교육부 협조 강화

① 문화예술계 전담신고센터에서 예비예술가 피해자 지원

대학의 전담기구가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이 많고 대학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 외부의 지원체계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지원센터는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의료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학생 등 예비예술인에게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전담 센터의 과제로 피해자의 예술계 및 예술활동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문화예술계 조력자에 대한 지원 필요

피해자를 조력하던 동료 학우나 학교 동아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 학생들이 가해 교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되는 경우 외부 상담소나 여성 가족부 기금으로는 법률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대학 상담소에서 지원해야하지만,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지원센터에서 조력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이다.

③ 대학과 문체부의 징계시스템 연계

대학 교수 및 강사가 현업 예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징계는 대학과 문화 예술계가 상호 가능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징계 효과가 있다.



2) 국립예술학교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관할 이래 있지만, 설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정하게 된다.119) 문체부소속 예술학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증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등 5개교가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미술원 등 6개원은 예술계 현장에서 인정받은 현업 예술가들이전임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고 비전임 교원도 대부분 현업 예술가들이라할 수 있다. 미투 이전에는 국립예술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교육부와 문체부가 서로 소관이라며 떠넘기던 경우도 있었는데 문체부 소속기관이므로 문체부가 책임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3) 성평등 과목을 교과과정에 추가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술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대학생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1년에 1-2시간의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로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예술가의 젠더연습'이라는 교과과목이 2019년부터 개설되었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작품 창작에 있어 성인지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다.

4) 예술대학 교수의 성비 불균형 개선

예술계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공적 지원금 심의의 원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여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년 영화진흥사 업 심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심사위원 성비를 5:5로 개정했다. (120) 2019년

^{11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 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Ⅲ.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 ▮ 77

문체부는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임원과 국고지원사업 심사위원 성비를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¹²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는 국고지원사업 선정자의 성비를 조사하여 발표했다.¹²²⁾

4. 소결

문화예술계와 교육 분야는 미투가 가장 폭발적이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사각지대였는데, 종사자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예술활동을 하며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지원과 국고지원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 중단 등의 징계성 조치를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입법 미비로 징계의 실행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정책은 대학별 전담기구를 중심에 놓고 대학 자율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주체는 대학과 대학별 전담기구이며, 대학별 전담기구의 위상과 역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공적 규율 장치가 적은 두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이 예술대학이라고 할 수 정책은 없다.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피해 발생 영역은 대학을 넘어 예술계에 걸쳐 있다. 또한 예술대학 교수는 현업 예술가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직업

¹²⁰⁾ 영화진흥사업 심사위원의 여성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개정했다.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5명이상 외부전문가 비율 50%이상, 여성 비율 50%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심사위원 구성이 과도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성 위원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르되 전문분야별 특성상 여성 심사위원 구성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주유신(2019).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활동보고」p.4 참조.

¹²¹⁾ 문화체육관광부(2019d).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류정아).

¹²²⁾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는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1차 오픈 테이블에 이어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하였는가?〉를 열어 2016-2019년 아르코 예술지원 성별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2019. 10.10.)



78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적 예술계에 진출하면 교수와 같이 활동하게 되어 졸업 후에도 영향력 아래에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대학 정책은 문화예술계 정책으로 포괄해야 예술대학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예술대학 학생에 대한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센터에서 예술대학생 피해자와 조력자를 지원하고, 대학과 문체부의 징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둘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국립예술학교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의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평등 과목을 교과과정에 추가한다. 넷째, 대학, 공공기관, 국고지원금 심사의원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여 문화예술계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한다.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71 515101	니니다 나ㅠ데	7174	그ન 나다	- 04
1.	각 내악의	성희롱·성폭력	꾸던	규정 문식	81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95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1.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가.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본 장의 연구 분석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선정하였는데, 최근 미투운동 과정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대학 사례를 포함하려고 하였다. 총 29개 대학의123)

123) [건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출처: http://rule.konkuk.ac.kr:8080/lmxsrv/law/lawFullVIew.srv〉 [접근 일자 2019.10.01.]

[계원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kaywon.ac.kr/CmsHome/intro_06_02.aspx〉 [접근일자 2019.08.22.]

[국민대학교],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출처: http://https://reg.kookmin.ac.kr/site/educational_administration/administration_27.htm〉[접근일자 2019.08.22.]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출처: https://rule.dankook.ac.kr/serVIce/law/lawVIew.do?seq=336&hi storySeq=0&gubun=cur&tree=part〉 [접근일자 2019.08.22.]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출처: http://www.dgau.ac.kr/Campus/Campus02.asp〉 [접근일자 2019. 08 22]

[동국대학교],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출처: https://rule.dongguk.edu/lmxsrv/law/lawFullVIew.srv〉 [접근일자 2019.10.01.]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dima.ac.kr/sub_01/bbs_VIew.aspx?num=22&pageNum=1 2&bbsID=ruleBook03〉[접근일자 2019.08.22.]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www.scau.ac.kr/Application/02_Intro/Rule.aspx?MRID=73&URID=55&TID=6〉[접근일자 2019.08.22.]

[백제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출처: https://www.paekche.ac.kr/ict/pms/board.php?bo_table=main_ life_003&wr_id=1#stop〉[접근일자 2019.08.22.]

[명지전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출처: https://www.mjc.ac.kr/rulebook/rulebook.do?menu_idx=99〉 [접근 일자 2019.08.22.]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정규정"

〈출처: http://www.pusan.ac.kr/rule/CMS/RuleMgr/VIew.do?mCode=MN025&rule_seq=446〉[접근일자 2019.08.22.]

[부산예술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busanarts.ac.kr/page/board/board.php?TREE_NO=1400&DEPTH=3&BBS_CODE=z412&bbs=see&data=cGFnZWNudD0wJmlkeD0xMjgmbGV0dGVyX25vPTYxJm9mZnNldD0wJnNlYXJjaD0mc2VhcmNoc3RyaW5nPSZCb2FyZGtleT16NDEyJlN1Yl9Obz0wJkRCVGFibGU9YmJzX3J1bGUwMQ==||> [접근일자 2019.08.22.]

[서울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출처: https://www.seoularts.ac.kr/mbs/kr/jsp/rules/rules.jsp?configIdx =2&cId=6&id=kr 0501010000000 [접근일자 2019.08.2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aist&target=school &ID=2200000018221&type=HTML&mobileYn=〉[접근일자 2019.10.0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rule.uos.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289〉 [접근 일자 2019.10.01.]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s://rules.skku.edu/state/current/recent.do?mode=VIew&board No=36&articleNo=66734〉 [접근일자 2019.09.30.]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rule.sungshin.ac.kr/rule/serVIce/law/lawVIew.do?seq=263 &historySeq=0&gubun=cur&tree=part〉[접근일자 2019.08.22.]

[세종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board.sejong.ac.kr/boardVlew.do?pkid=118023¤tPage=1&searchField=ALL&siteGubun=19&menuGubun=1&bbsConfigFK=456&searchLowItem=ALL&searchValue=> [접근일자 2019.08.22.]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s://rules.yonsei.ac.kr/search?rule_name=%EC%9D%B8%EA%B6%8C&rule_text=&dept_name=#top0> [접근일자 2019.10.01.]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83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이 선정되었다.

이들 규정을 검토하며 이의 장점과 미비한 점을 파악한 후 규정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정 대학의 규정 중 타 대학에 모범이 되는 사례도 본 분석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대상 대학의 명단을 규정 명칭, 제정년도, 최종 개정년도와 함께 〈표 IV-1〉에 제시하고 있다.

[예원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출처: http://www.yewon.ac.kr/AboutYewon/sub0501.jsp?tabNum=04〉 [접근일자 2019.08.22.]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출처: https://rule.dankook.ac.kr/serVIce/law/lawVIew.do?seq=336&hi storySeq=0&gubun=cur&tree=part〉 [접근일자 2019.08.22.]〉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www.jejunu.ac.kr/schoolinfo/rules/rule〉 [접근일자 2019.08.22.]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출처: https://www.cau.ac.kr/cms/FR_CON/index.do?MENU_ID=30#;〉[접근일자 2019.09.30.]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rule.cju.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246〉 [접근 일자 2019.08.22.]

[추계예술대학교], "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출처: https://www.chugye.ac.kr/mbs/university/jsp/rules/rules.jsp?configIdx=6767&cId=93&id=university_010701000000&#ruleTop〉[접근일자2019.08.22.]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성폭력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3.pro.ac.kr/webSerVIce.pro?menuCode=K00M030703〉 [접근일자 2019.08.2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규정"

<출처: http://www.karts.ac.kr/nri/bbs/NuriBbsDetail.do?pageIndex=1 &bbsId=BBSNURI_003&nttNo=9999979957〉[접근일자 2019.08.22.]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knsu.ac.kr/web/kor/i_07_01?p_p_id=EXT_REGULA TION&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lew&p_p_c 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REGULATION_struts_action =%2Fext%2Fregulation%2Fget_file&_EXT_REGULATION_extFileId=760 5277〉[접근일자 2019.08.22.]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접근일자 2019.09.30.]



$\langle \text{H} \text{ IV-1} \rangle$ 성희롱·성폭력 규정 분석대상 대학 명단

	학교명	규정명칭	제정년도	최종개정 년도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						
1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8.4.11	2019.2.19			
2	국민대학교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2001.5.1.	2018.2.13			
3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017.11.24	2018.8.31			
4	대구예술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2005.4.1.	-			
5	동국대학교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2015.10.12.	2019.8.21			
6	디지털서울문화 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6.4.20	2017.8.28			
7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2018.3.28	-			
8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규정	확인불가	2014.10.21			
9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규정	2018.4.11.	2019.2.19.			
10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규정	2018.9.1.	-			
11	성신여자대학교	인권센터규정	2019.5.1.	-			
12	세종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1.9.1.	2019.7.3.			
13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7.8.1.	2019.6.5			
14	예원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2003.10.6.	2017.5.10.			
15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8.6.20	-			
16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7.2.27.	2019.6.25			
17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2012.6.14.	2018.8.23.			
18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8.3.6.	2019.4.9.			
19	추계예술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1.6.11.	-			
20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규정	2018.12.3.	2019.7.29			
21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9.3.25	-			
22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	2018.12.7.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85

	학교명	규정명칭	제정년도	최종개정 년도
	문호	예술 분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	
1	계원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1.5.1.	2018.10.1
2	동아방송예술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1.4.24.	2018.2.7.
3	명지전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07.7.1.	2019.7.30
4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10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확인불가	2013.2.28
5	부산예술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1.5.3.	2018.8.28
6	서울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2007.5.7.	2019.6.1.
7	한국영상대학교	성폭력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1.12.1	_

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석결과

1) 규정 명칭

각 대학의 규정명칭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포함한 것이 14개소,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침해 방지를 포함한 것 14개소이고,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함께 명칭에 표시한 곳은 1개소다. 이전에는 각 대학의 규정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구성원의 존엄과 인권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센터로 규정의 목적을 변경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표 IV-2〉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규정 명칭 분류

T	개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구제 및 처리	9(30.0)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과 처리	4(13.8)
	성희롱 예방	1(3.4)
	인권센터, 인권센터 운영	12(41.4)
인권센터 운영/인권침해 방지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1(3.4)
O- 1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	1(3.4)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3.4)
	29(100.0)	

2)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규정 제정년도

이들 대학의 관련 규정 제정년도는 2001, 2018년이 각각 7개소(25.9%)로 가장 많고, 2017년 4개소(14.8%), 2007, 2019년 각각 2개소(7.4%)이다. 성 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은 2001년 대다수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제정한 이후 꾸준히 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인권센터 운영규정으로 개정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인권센터 운영규정을 둔 대학은 2017, 2018, 2019년에 제정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경우 이전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을 운영하다가 폐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련 규정은 역사가 더오래 되었으며, 대학들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운영하거나 인권센터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를 보면 관련 규정 개정이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학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87

〈표 IV-3〉 각 대학 규정제정 년도

제정년도	개소(%)	제정년도	개소(%)		
2001	7(25.9)	2015	1(3.7)		
2003	1(3.7)	2016	1(3.7)		
2005	1(3.7)	2017	4(14.8)		
2007	2(7.4)	2018	7(25.9)		
2012	1(3.7)	2019	2(7.4)		
TH. 07/400 0\					

계: 27(100.0)

주: 제정년도 확인불가 대학 2개소 제외

다. 규정 내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1) 용어정의

규정의 용어정의를 보면, 대체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명칭을 갖고 있는 규정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를 제시하는 데 비해 인권센터의 경우는 이에 추가하여 '인권', '차별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로 소개하고 있다. 이외 두 가지 규정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당사자', '관계부서', '본교 구성원' 등으로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2차피해'나 '2차가해'라는 용어는 성희롱·성폭력 명칭의 규정이나 인권센터 규정 모두에서 사용된다. '성폭력'용어만 소개한 경우는 성폭력에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성희롱'만 정의한 경우는 이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 행위로 보고 있어 성희롱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한 학교는 성폭력의 정의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한 성적행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속한 농담, 2. 불쾌한 시선, 불필요한 접촉, 부당한 서비스 요구, 불온전한 유인물 배포 및 화상에 표출"이라고 하여 주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성폭력'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한 학교는 '성희롱·성폭력'을 정의하면서 "성범죄 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주로 성희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는 성폭력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규율하는데 문제가 있다. 후자 역시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쓰지만 규정의 내용은 성희롱을 지칭하고 있어서 성폭력 문제를 포괄하기 어렵다. 반면에 규정 명칭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곳도 있다.

2) 규정의 적용범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본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을 '본 대학교에 재직, 재학(휴직, 휴학 포함) 중인 모든 교원과 직원, 학생, 대학 기관과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와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사건에 적용된다'고 하여교직원, 학생 및 대학교 기관이 채용한 계약직도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학교도 있다.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학교 구성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조 항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인인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적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은 적용 범위 대학 소속 구성원으로 제한한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대학 사례에서는 "성폭력행위가 발생한 후 행위자 또는 피해주장 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통해 행위 발생 시점에 행위자가 학교 구성원이었다가 이후 휴학, 졸업, 퇴직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미정 외, 2018:188). 이처럼 규정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혼란을 줄일 수 있기에 여타 대학의 규정 개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89

라. 성희롱 고충 담당기관

1) 성희롱고충 상담실

가) 상담실 업무

대학 내 성희롱고충 담당기관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고충민 원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실(센 터)¹²⁴⁾과 성희롱·성폭력고충 민원사건의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자 징계요청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담당하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다. 성 희롱 고충상담실의 명칭은 성폭력상담센터, 성희롱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인권센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분석대상 29개 대학 중 1곳에서 성희롱 상담실 기능에 관해 명시한 조항이 없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조항만 두고 있다. 성희롱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또 동 위원회가 상담실 기능까지 같이 담당하는지 규정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실 업무가 비상설·임시로 수행되거나 위원회에서 상담실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있는데 사건처리업무 기능과 심의·의결기능을 동일 주체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실 조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상담실의 업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고충 관련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 피해자 지원 및 심리치료, 가해자 교정교육 및 관리,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을 담당한다. 인권센터를 두고 있는 대학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관련 업무가 추가되어 있다.

¹²⁴⁾ 각 학교 규정은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상담소, 센터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나) 고충상담원

상담소의 고충상담원 배치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많은 대학들이 전문상담 원, 전담 직원, 상담위원, 상담전문교수, 전문연구원 등의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고충상담원 임명과 관련하여 몇 개 대학은 "고충상담원은 직원, 교수, 노동 조합 임원, 학생대표 중 2인 이상으로 상담실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단,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고충상담원 선정이 직원, 교수 등 각 직역 대표의 추천과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있다.125)

"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여성교원 1인을 학장이 지 도교수로 임명한다"는 조항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을 상담실 운영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대학에서 고충상담 원 구성 시 성별 할당을 고려하는 이유로 여성 피해자는 여성 상담원에게 고 충을 털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지만 성별구분 없이 성인지적 감수 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학도 있는데 교내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고충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지원하도록 한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상담원 역량강화는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¹²⁵⁾ 각 대학의 성별균형을 명시하는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원은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남성 고충상담원은 비상 근자로 인사담당 및 학생담당 부서별 남자 직원 최소 1인으로 한다", "상담소는 본교 구성원의 성고충 상담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학내 관련 전문가 중 2인 이상을 상담소장이 임명한다. 이 때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상담실에는 상담위원과 간사를 두고, 그 중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남, 여 각 1인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고 하여 고충상담원 구성시 성별 대표성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91

2)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규정을 살펴보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규정한 대학이 가장 많다. 위원 구성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특정한 성(性)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한 곳도 있다. 학생위원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들은 학생 관련 사건에만 참여한다고 명시한 곳도 있다. 위원의 구성은 가급적 남녀 동수로 하되불가피하면 특정 성별이 60~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곳도 있다.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한 규정은 성별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

위원회 기능으로 피해자를 위해 법적 정보제공,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 피해자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공개사과, 봉사, 배상 등을 명령, 기타 사건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사건 처리, 사안 조사·중재,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마. 사건조사 및 처리

대학 구성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해 각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구제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조사 및 처리와 관련주요 사항에 대한 각 대학의 규정을 검토해보자.

1) 신청·조사 및 심의

성희롱·성폭력사건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는 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나 사건관련자는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이들에게학교 규정상 절차를 모두 고지하고 원하는 사건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소는 첫째, 사건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둘째, 사건당사자, 사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피신고자의 성희롱·성폭력 여부,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사건처리 종결 시까지 행위자의 자퇴, 퇴학, 휴학, 사직, 휴가 등을 보류· 반려하는 조항 유무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그 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대학이 1곳 있다. 또 다른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 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원면직, 자퇴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센터장 요청에 의해 학생, 교수 등 피신고인의 자퇴, 휴학, 사직, 휴가를 보류,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항이다. 피신고인이 부재한 상태 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치의 실효성을 약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이 부재한 여타 대학에서 규정 개정 시 참조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징계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 서 의원면직, 자퇴 등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

사건조사 및 처리시한 명시를 살펴보면 이것이 명시된 곳은 3개월 또는 6 개월로 되어 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처리한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다. 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건접수 이후에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정

상담실장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가해자에게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재발방지 각서 작성이나 공식사과를 하게 하거나 소속 기관 책임자에게 사건보고, 가해자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가해자의 교내봉사 이수, 가해자 접근금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비용 및 치료비 제공, 사건이 발생한 집단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93

의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가해자가 조정위원회 의결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치이행 합의 후 일정 기간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실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 개최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조정 또는 화해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동일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3)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요청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하여 상담소장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로 첫째, 사건을 공개하는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면 일부분만 공개 할 수 있다. 둘째,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셋째, 금전적 피해보상 넷째, 비공개 사과문, 반성 및 각서, 다섯째,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강사의 변경, 부서의 전환, 휴학, 공식사과, 재발 방지교육, 피해보상, 심리치료 등을 규정한 학교도 있다.

징계요청 관한 것을 보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교원 및 교직원은 각각 교원 및 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학생은 학칙에 따라 징계처리를 한다. 126)

한 대학에서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가해자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담소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 등 사건당사자에게 2차가해를 한 경우 상담소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해당 징계기간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행위 가해자를 지원하는 자에 의해 협박이나 강압으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동조자나 누설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징계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¹²⁶⁾ 교육부(2018, 내부자료)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별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안 처리가 형사절차와 별대로 진행되도록 명시하려고 한다.



바. 피해자 보호조항

각 대학의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 분석대상 중 많은 대학이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성희롱·성폭력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의원칙,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비밀의 준수의무를 규정하였다.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조사 등 처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료공개 금지에 대해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와처리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상담소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둔 대학도 있다.

한편, 상담소는 피해자 대상의 긴급한 구호나 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대학도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 및 보호조치는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매우 필요한 조항이다.

사.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한 대학에서는 총장은 성희롱,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원 및 직원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별로 매년 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학생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주제별로 1시간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95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 학생의 교육은 분리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학생이고 성별화된 교수와 학생사이의 위계관계가 성희롱,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되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도 성희롱과 성매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예방교육의 대면교육 실시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분석대상 대학 중 1곳에서 최소 1회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도 이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규정 개선방안

이상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실 및 위원회,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규정, 피해자 보호규정,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대학 규정을 정비할 때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미투 상황을 계기로 법, 제도,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정비는 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기준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가. 정확한 용어사용 및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본 연구의 대학 규정 분석에서 각 대학이 '성폭력'과 '성희롱'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대학에서 '성폭력'용어를 정의하면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경우는 '성희롱·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라고 명시하며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용어를 성희롱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성폭력의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고, 성희롱·성폭력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규정의 내용이 성희롱을 지칭하는 경우 역시 성폭력 문제를



포괄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성희롱과 성폭력 용어를 분리하여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에 성폭력행위 발생 후 행위자나 피해주장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행위 발생 시기에 행위자가 당해 학교구성원이었다면 그 이후 휴학, 졸업, 퇴직 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건발생 이후 신분변화와 무관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 성희롱고충 상담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지원

몇몇 대학에서 상담원은 반드시 남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고충상담원을 성별로 할당하여 구성하는 이유는 피해자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성별의 상담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 할당에서 더 나아가 성별을 떠나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춘 사람을 상담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상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교내 관련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외부에서 초빙하여 피해자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소수 대학에서 이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서의 교육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조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종결 때까지 행위자의 휴학, 자퇴, 퇴학, 휴가, 사직을 보류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 피신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센터장 요청에 의해 학생, 교수 등 피신고인의 휴학, 자퇴, 휴가, 사직를 보류, 반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IV.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분석 ▮ 97

경우만 의원면직, 자퇴 등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지만, 징계 종류에 상관없이 이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조사 및 처리시한이 명시한 대학이 소수이다. 사건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건접수 이후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에 기간을 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피해자 보호규정의 내실화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한 각 대학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가 준수되지 않거나 2차피해 발생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이로 인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환경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긴급한 구호 및 구제를 위한 비용지원,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거나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보호조치를 위원회가 인사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좋은 사례로판단된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실질적 지원방법이 될 수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수 학교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교직원만이 아니라 학생도 성희롱, 성매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면교육을 규정에 명시하고, 대규모 집체교육 방식의 대면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대면 교육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1. 교수와 강사의 권력	101
2. 성별화된 위계구조 하에서의 교육	108
3. 교육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통제	113
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118
5. 소결	125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예술계는 교육과 현장이 직결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직업인이기 이전인 학생 신분일 때부터 요구받는다. 예술인으로서의 경험은 개인 혹은 예술 영역에 따라 학생시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랜 시간 몸 담아오면서 경험했던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구조와 문화의 힘은 예비 문화예술인을 오롯이 지배한다.

문화예술인에게 있어 대학은 문화예술계로의 진입 이전 교육의 현장으로서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이미 그 자체로 문화예술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대학 프로그램을 경험한 대학생, 대학원생,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예술계 대학 고유의 문화적 구조와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계 대학의 구조적 관행과 내부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 성폭력 사건이나 그 가해자에게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용이하게 만드는 환경, 침묵과 묵인의 맥락, 피해 드러내기의 어려운 구조를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1. 교수와 강사의 권력

대학이라는 사회 안에서 강의 성적, 논문심사, 다양한 학내 활동, 장학금 결정, 향후 진로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교수의 권한이 부여된다. 교수-직원-강사-학생 순의 피라미드형 위계구조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김태현 2018:101).



102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문화예술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대학과 현장의 연계가 긴밀하다. 연계의 매개가 되는 사람은 선배 예술가들로, 대학사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수와 강사이며 이들은 동경의 대상, 기회 제공,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계 대학 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 동경의 대상

문화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으로 21세기 문화예술 산업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최상위 구조의 산업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과 젊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영역 중 하나이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도 지속적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이다(이수연외 2018:17).

대학의 교수나 강사는 예술로의 길을 안내하고 예술가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에게 있어 이들은 교육자 이상의,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앞서 간 존경하는 '예술가'로의 의미를 가진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계 학생들은 예술가로의 꿈을 어린시절부터 확고하게 가져온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관련 분야의 정보를 탐색해 온 이들에게 대학에서 만나는 교수나 강사는 그동안 만나오기를 고대했던 진짜 예술인이거나, 동경해 온 '우상'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비문화예술인은 대학 교수나 강사를 예술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예술적인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절대적으로 수용할 태도를 가지게 된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나는 이게 꼭 되겠어.'라는 분이 없잖아요. 일단 내가 갈 수 있는 과, 내가 좋아하는 과를 가고 그 과정에서 내가할 일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대를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 지향자체가 "나 어렸을 때 대통령 될 거야."라고 거의 동급으로 어렸을 때 이걸꿈꾸고 가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과에는 대부분 내가 존경하는 배우나 어떤 유명한 교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이 경향성이 동시에 있거든요. (중략) 문화생 급의 1:1 지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서와 존경, 나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있는 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건 우리가 워래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03

이것이 우리의 정도의 길이야."라는 것들을 내 개인의 힘으로 빠져나온다는 게 직업 선택의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문예창작과를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는데 (중략) 고등학생들이어서 일찍이 작가나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 처음으로 본 기성 작가 잖아요. 존경심도 엄청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 많이 일어났던 거 같아요. (사례 23, 대학생)

처음에는 '저 선생 저거, 입시를 가지고 저런 어린 애들한테 성추행이나 하고 정말 미친 또라이 아니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학생도 선생님과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 동경이 있다 보면 선생님의 행동들을 조금 더 (용인하게 되는 거죠). 아예 모르는 남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행동이 달랐을 텐데 우상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사 1)

더불어,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적 재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로 여겨진다. 교수나 강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여겨지는데, 이는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를 용인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피해 고발을 어렵게 한다.

예술이란 게 참 묘해요. 경이롭다고 할까? 예술 정말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쫓아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작은 차이가 재능인 거 같은데, 그런 재능을 바라볼 때 경외심 같은 게 들거든요. 경외심을 받아들일 때, 특히 학생들, 공연예술 하다 보면연습하다가 "선배 오빠가 정말 춤을 너무너무 잘 추고, 북을 너무너무 잘 치고" 그런다면 그 오빠의 모든 게 용인되고 "그 사람 잘하니까" 이러면서 묻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로 인해서 재능이 썩힌다는 거, 사장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어느 정도냐면 그분이 그랬다는 사건의 얘기를 듣고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중략) 사람들은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 선생님이커리어, 그 선생님이 나름 쌓아온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또 (한편으론) 있는 거예요. (강사 1).



나. 기회로의 매개

예술은 표현의 장에서 실행되어야만 예술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회가 주어져야 표현이 가능하고, 표현 이후에야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다른 영역은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입사 시험 등의 지필고사나 직무능력시험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고 업계로의 진입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 분야는 업계도 좁고 공식적 기회가 부재한 편이다(이수연 외 2018:73). 문화예술 작업의 특성상 단발성의 프로젝트 형태가 많아 공식적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대부분은 실무자차원에서 계약과 인력수급이 이뤄지게 되면서 예술적 표현과 검증의 공식적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집단은 대학에서는 교수와 강사 집단이다. 사실상 문화예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계약과 인력 선발의 권력이 소수인 이들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면접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교수나 강사의 추천으로 새로운 작품 참여할 기회를 얻으며,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경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 감독으로 데뷔하는 일도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수나 강사의 도움이 없이 각종대회나 수상제도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대회 참여 기회조차도 교수나 강사의 통제를 받기도한다. 최근 들어서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가 대학 내 전공으로 확대되면서예술현장에서 인정받은 예술인이 전공강사 등의 형태로 대학사회로 투입되고있어, 기회 제공과 관련한 교수와 강사의 권력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꼭 교수님들이 나쁜 영향력만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 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음악 스태프로 참여해 볼래?"라는 식으로 다른 분야처럼 기회를 조금씩 연결을 해 주세요. 교수님 정도 되시면 어디 음악 감독이나음악 연출가분들을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스텝이나 연주자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례 14, 대학원생)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05

어느 교수한테 사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사받은 사람도 타이틀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 아래에 학생에게 "내가 누굴 사사하여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고 레슨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사례 14, 대학원생)

지도 교수의 입김에 의해서 커리어가 좌지우지될 정도는 아닌데, 너무 밥그릇이 없다 보니까 지도교수한테라도 밉보이면 안 되는 상황. 000(유명 영화배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잘 됐냐면, 000을 처음 발탁한 소속사 매니저이나 대표가 와서 "좋은 배우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교수님을 따로 찾아 왔을 때, 교수님이 "얘 좋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성공의 루트가.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아무래도 항상 연습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 같은 부분도 다 도제식이었으니까. 요즘에는 그 풀이 좀 넓어졌다고 해도 예전에는 한 사람의 연출 앞에서 계속 촬영이든 조명이든 일을 하다가 감독이 한 번 시나리오 주고 "너 이제 찍어봐." 이러면 그게 감독 데뷔 길이 되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례 20,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특히 촬영 쪽이 완전히 도제식이거든요. 촬영 감독이 스텝을 항상 데리고 있고, 촬영 감독을 먼저 구인하고 "촬영(하실)분들은 당신이 알아서 고르세요."라고 계약을 보통 진행해요. 그러니까 촬영 쪽을 희망하는 쪽은 완전히 도제식이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제 시스템에 들어가야만 촬영 쪽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보통 학과에서 3~4분이 주름을 잡고 계시면 그분들이 학생들을 키우고 키운 애들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되는 식이라 그쪽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사례 11, 대학생)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유명한 한국 미술관들에서 아르바이트나 도슨트나 이런 거로 "이 학생이 괜찮다."는 식으로 넣어주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저희는 순수 미술과이긴 한데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계열 회사로 넣어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졸업 후에 순수미술 쪽은 취업이 어려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게 있어요. (교수님의 영향력은) 디자인이랑 순수미술 비슷한 거 같아요. (사례 12, 대학생)

전통예술 등 일부 분야에서 교수는 인간문화재이거나, 무용계에서는 교수 의 이름을 내세운 무용단이 있기도 하다. 이들은 해당 영역의 예술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들에게 예술을 '전수' 혹은 '사사' 받음은 해당 분야의 예술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통예술의 경우) 교수님이 문화재인데. 전수받아야 되고. 무용단도 이름 붙여서 000 무용단. 거기 들어가야지 업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훨씬 심한 거 같아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제 주변에도 클래식 전공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피아노 학생들은 교수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한 교수의 사사를 받아서 대학 진학을 하고, 대학원 진학도 하고, 유학도 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14, 대학원생)

아무래도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게 (대학 내,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접 전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누구한테 전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커리어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례 20,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지방의 문화예술계 대학의 경우 문화예술로의 진출과 관련한 정보나 기회가 적어 보다 교수나 강사에게 의존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기회 자체도 적고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적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자기들끼리 뭔가 해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 교수님 (학교 내) 파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물론 지방 학생들도 자기가 찾아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좀…. 소식도 전달이 느리고 교수님 자체가 서울에서 내려오신 교수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의존하는 것도 있고, 교수님이일 같은 거 소개시켜주면 지방에선 좀 절박하니까 더 잡으려고 하는 거고. (사례 14, 대학원생)

물론,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예술의 영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미디어 발달로 인해 음악이나 영화 등은 예술 표현의 기회나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열려있어 교수나 강사의 매개자로서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정받으면서예술가로 진입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 분야에서 조차도 관련 산업으로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07

진입하기 위해 매개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대학생들에게 전공 교수나 강사는 절대적이게 된다.

영화는 그 풀이 좀 넓어졌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느낌이긴 한데 아직도 공연예술 쪽은…. (요즈음) 영화는 접근성이 좋죠. 일단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배워야 된다는 게 강해서 진짜 무조건 현장 가서 도제식으로 배우면서 하는 게 강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하나 있으면 찍을 수 있으니까. (사례 20,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실용음악이 대중과 쉽게 연결되어 있고 대중에게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한 분야이니 만큼 교수님에게 평가 받는 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분야처럼. (학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모든 학교를 다 알진 못하지만, 제가 아는 대다수 학교는 그래요. (사례 14, 대학원생)

다. 심사 권력

공모나 대회 등의 공식적인 예술 표현의 기회가 있어 기회가 공평히 주어 진다 하더라도, 교수나 강사의 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선배 예술인의 '심사'라는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역시 대학 내 교수나 강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술작품에 대한 심사위원 풀이 대학 내 교수나 강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예술가로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심사자 혹은 평가자로 지금의 교수와 강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잘알고 있었다.

문단 내 미투에 대하여, 이성미(2017)는 문예창작 분야 내 교육자-저자-심 사위원-문학상 수상자 등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에 저항하거나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이성미, 2017:32). 교수나 강사 집단이 가지는 권력은 대학이라는 현재를 넘어, 예술 가로서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절대적이다.

(문학계는) 일단 신춘문예나 신인상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심사위원들 중의 상당수가 교수님들이세요. 교수가 아니면서 심사를



108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면서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중 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수가 대상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교수 눈에 들면 유리해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 (사례 13, 대학 원생 졸업자)

저희 학교는 다른 대와는 달리 특이하게 전임 교수의 능력보다는 강사가 훨씬 필드에서 유명한 소설가나 시인들이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실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신춘문예나 공모 같은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오시는 편이어서 저희는 전임교수님보다는 강사 교수님한테 좀 더 의지하고 작품을 따로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한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학과에 있었어요. (사례 15, 대학생 졸업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찍혔다고 망하는 건 아니지만, 잘 보여야 뭐라도 하나 떨어지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가고, 교수들이 보통. 그대로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학교에서 교수랑 학생이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아도 어느새 연기과에 얘, 얘, 얘, 얘는 연출과 교수랑 밖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는 술자리로 선후배가 연결된다기보다는 교수님과 학생의 1:1 개인적인 게 더 큰 거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졸업하기 전까지 교수님과 친해지고어떤 연을 맺어야 하는 게 더 커요. 성적인 표현을 하는 교수님이 싫으면다른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교수님도 안 계셔서 학생들이 담당해주실 교수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많아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선후배가 이끌어 주는 거보다 교수님들이 좀 더 이끌어 주거나, 아니면 평론을 더 좋게 써 줄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께 반발을 잘 못 하는 거죠. (중략)(저희가) 전시회를 열었을 때, 교수님이 뭔가 글이라도 한 자 써주시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있거든요. (사례 12, 대학생)

2. 성별화된 위계구조 하에서의 교육

가, 남성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이상과 달리, 그 위계구조가 상층부에는 남성이, 하층부 에는 여성이 몰려 있는 장이며(유현미, 2018:104), 문화예술 분야의 유리 천장 역시 다른 어느 영역 못지않게 공고하다(이수연 외, 2018:20). 문화예술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09

계 대학은 많은 여성인력이 대학 과정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인 교원의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문화예술 대학의 경우 여성학생이 55%인데 비해 여성 교수의 비율은 36%이다. 특히 미술/조형의 경우여성학생의 비율이 77%인데 비해 여성교수의 비율은 29%에 불과하였는데,이는 학과 내 남성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교수직으로 진출하고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디자인(여성학생 59%,여성교원 22%),시각디자인(여성학생 72%,여성교원,28%),사진/만화(여성학생 57%,여성교원 17%),순수미술(여성학생 78%,여성교원 30%),응용미술(여성학생 79%,여성교원 31%),조형(여성학생 71%,여성교원 22%)등의 영역의 경우 큰 격차를 보인다.

〈표 V-1〉 문화예술계 대학의 여성 재학생 및 여성 교원 비율

구분		학생			교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문화예술계 전체		236,139	130,387	55%	5,205	1,893	36%
디자인	계	66,414	44,165	66%	1,438	589	41%
	디자인일반	9,891	6,593	67%	296	104	35%
	산업디자인	9,545	5,595	59%	207	46	22%
	시각디자인	12,718	9,180	72%	222	63	28%
	패션디자인	9,812	7,189	73%	213	184	86%
	기타디자인	24,448	15,608	64%	500	192	38%
응용 예술	계	39,625	26,201	66%	766	314	41%
	공예	4,620	3,710	80%	115	48	42%
	사진/만화	6,583	3,742	57%	131	22	17%
	영상/예술	28,422	18,749	66%	520	244	47%
무용/ 체육	계	61,361	16,842	27%	1,161	240	21%
	무용	4,847	3,918	81%	119	91	76%
	체육	56,514	12,924	23%	1,042	149	14%



110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구분		학생			교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미술/ 조형	계	18,591	14,349	77%	508	145	29%
	순수미술	13,591	10,627	78%	355	107	30%
	응용미술	2,002	1,581	79%	51	16	31%
	조형	2,998	2,141	71%	102	22	22%
연극/ 영화	계	14,356	7,341	51%	302	93	31%
	연극/영화	14,356	7,341	51%	302	93	31%
음악	계	35,792	21,489	60%	1,030	512	50%
	음악학	8,786	5,698	65%	324	175	54%
	국악	2,092	1,482	71%	70	32	46%
	기악	8,579	6,171	72%	257	155	60%
	성악	3,273	1,939	59%	100	53	53%
	작곡	1,863	1,138	61%	73	26	36%
	기타음악	11,199	5,061	45%	206	71	34%

주: 1) 재학생 : 휴학생, 재학생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이 포함된 수임

2) 교원 : 총(학)장 및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수로 휴직자 포함하며 퇴직자 제외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재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계 대학의 교수와 강사 집단이 갖는 권력은 지배적인데 이러한 권력은 성별이라는 구조 하에 새롭게 재편된다. 본연구 면접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과 내 여학생이 더 많지만 예술 현장으로의 진입은 남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문화예술계 현장에서의 남성 교수와 강사의 막강한 영향력은 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예술 현장으로의 기회 제공과 작품 심사자로서의 교수와 강사의 권력이 성별화되어 있는 것은 남성 위주의 기존 예술산업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여성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보통 문창과가 여자 7~8, 남자 2~3 정도에요. 그런데 수업을 나오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남성 교수님들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전임교수님들은 확실히 남성 위주에요. (사례 13, 대학원생 졸업자)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11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그런 발언이 되게 쉬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애초에 현업에 있는 분들이 다 남성, 교수님들도 다 남성이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려면 교수님 통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추천해줘서. 거기에 남자들이 남자를 추천하다 보면 아무리 [학생]성비가 여성이 많아도 남성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걔네한테 잘 보이고 걔네랑 친해야그 시장, 산업에 진입이 쉬워요. (사례 10, 대학생)

저희는 여자가 7, 8이고 남자가 3, 2 정도 비율이에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더 남자애들을 더 챙겨 주세요. 소수고, 눈에 더 튀기도 하고, 실제로 국악계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대회들이 있어요. 기성대회들이 있는데, 그 대회들이 인정받는 이유가 올해까지 병역면제를 해주는 대회였어요. 1등을 할 시에 병역면제를 해주는 게 3개 정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쟤를 군대 빼줘야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국악계에서는 남성이 돈을 가정에서 벌어야 된다는 인식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쟤 남자애니까 공연 자리 주고, 피아노 칠자리 있으면 남자애 부르는 게 더 강하고, (중략) 그 [청소년기]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대학 입시 할 때도 남자애들을 챙겨서 뿜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례 9, 대학생)

수업의 성비보다 저희는 여성이 7 정도에 남성이 2 정도인데, 성비가 되게 편향적인데도 불구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성 졸업자의 수가 더 많아요. 다들 학과 생활하다가 떠나고, 유학을 가고, 전과를 하고. 실질적 발언권이 막혀있고 기회균등이 없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1, 대학생)

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남성 카르텔

〈표 V-1〉을 통해 살펴본 바, 문화예술계 학과 내 성비는 체육과 기타음악 분야를 제외하면 여성 비중이 모두 절반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수적으로 소수 집단인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하며 자원 을 공유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현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저희 기수는 41명에 6명 정도가 남자로 오히려 남학생들이 적은데도 학교라는 안전한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진짜 전쟁터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남학생들이 더 빨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승이 되는 거 같아요. 여학생들한테는기회를 주지 않고 배제시키고. (사례 25, 대학생)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남자들 문화더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일 따주고, 일이 있으면 부르고, 작업이 있어서 전시하게 돼서 기회가 생기면 남자를 꼭 데려가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전시하실 때도, 일하는데, 보조가 필요하면 여학생들한테 컨택을 절대 안 해요. 남자들끼리의 문화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례 24, 대학원생)

수업에서도 여학생들 비율이 더 많아도 거기 앉아 있는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남자 단톡이라고 해서 입학하는 남학생들을 전 기수가 있는 단톡에서 촬영 기회를 준다든가, 아르바이트, 고용 기회를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이미 영화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선배들이 남자 후배들한테 전달 해주고 그 친구들이 커리어를 더 빨리 쌓고. 같은 수업 공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남학생들이 더 많은 거죠. (중략) 명목상은 조기 축구에요. 명목은 그런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친하게 지내는 영화과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다 모이는 조기 축구 방도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또다른 구인·구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중략)

그러기엔 자리를 잡은 남자 선배들이 너무 막강해서. 예를 들면 저희 선배들은, 특히 남자 선배들은 SBS, JTBC, tvN, 이런 메인 방송국들에는 이미 다 큰 자리를 하고 계시고, 각종 영화제에서도, 그리고 배급사에도, 배급사를 이미 차리신 선 배도 서너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끌어주는 거랑 저희는 어디 가신지 모른 여성 선배들을 찾아가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사례 11, 대학생)

예술 현장에 앞서 자리 잡은 남성 선배, 남성 교수와 강사, 남학생들로 이어지는 카르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고, 예술작업 현장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는 예술가로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 이는 또 하나의 유리천장인 셈이다.

거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민하고 되게 깐깐하다고 소문이 나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걔 그럼 현장에 부르지 말아야겠다, 걔랑 같이 일하면 괜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네, 내가 괜히 잘 못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 형성이 과 특성상 되기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판 같은 것에 의해서 작업이들어오기 때문에 더 참고 쉬쉬하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그런 [성희롱]발언이 되게 쉬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중략) 걔네 [남학생]한테잘 보이고 걔네랑 친해야 그 시장, 산업에 진입이 쉬워요. (사례 10, 대학생)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13

이런 남자애들이 그런 말을 지속하는 것도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여자 남자관계에서 다른 능력이 동등하고 같이 있는 환경이 같다고 할 때, 차이가 나는 건, 성별에 의한 차이라고 보면, 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면 "쟤 예민하네"라고 치부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쟤 예민하니까 그래"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례 8, 대학생)

문화예술계가 아니더라도 대학사회에서 동일한 계층에 속한 학생이라고 성별에 따라 권력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김태현, 2018). 그는 2018년 교육부가 제출한 「2013~2017 대학 내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근 거로 들었는데,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적발된 성폭력 건수가 320건 중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2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내 남학생 단톡방 사건, 신입생 OT, 학과/동아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성별로 위계화된 환경에서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태현 2018:102-103).

3. 교육과정에서의 위계에 의한 통제

가. 공동예술작업에서의 위계를 통한 통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장르의 경우 예술 인 공동체라는 명목 하에 위계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공동 작업의 전권을 갖는 연출이나 감독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제권을 강 화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계적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강화된다. 예비 예술인들은 해당 분야의 현장으로 진입하기 이전 이미 대학 교육과정에서 예 술인으로서 위계적 문화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이러한 과정에서 배출된 예술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화를 활용하여 편하게 예술 작업을 진해하는 방법 을 터득하게 된다.

이게 문학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오롯이 작업하는 개인 작업이 성립된다면, 공연 예술이란 건, 연극은 더 심할 거고, 집단 작업이라는 이 특성이 사람에 대한 자각까지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이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통제 권한을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연출인 케이스이고, 사회에 나오면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1, 2, 3학년 작업에서는 3학년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1학년끼리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명목이 이거에 순응하게 만들어 가는, 이 인간형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무용계에서 카리스마랑 혼돈이 되는 거 같은데, 그 선생님이 애들을 잡아 때리고 공개적으로 언어로 망신 주고. 예를 들어, 별것도 아닌데, 줄 서는 게 좀 틀리면,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다가와서 장구로 때린다든지. 그랬을 때, 걔를 보고 공포감이 조성되죠. 그러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 자신은 피라미드의 지배구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를 통해서 얼차려나 집합하는 걸 용인해주고 "잘했어"하고. 관리가 편한 거죠. 내가 혼내야 할 걸 밑에 애들이 하니까. (강사 1).

공동체 문화가 두드러진 문화예술 분야로 연극이 있다. 연극계에서는 연습이나 합숙 같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작업 활동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으며, 일종의 '대리 가족'으로서 운명공동체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이수연외 2018:70). 현재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 5에 의하면 대학 시절선배가 학년별로 소집하여 기합을 주거나, 아침 구보로 학교 일상을 시작하게하는 등 군대문화식 '전통'을 경험했고, 교수 말을 거스르는 일체의 언어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예술을 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히는데, 이는 위계적 문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수들의 어떤 말을 거절하기 힘든... "안돼요"랑 "싫어요"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가장 빨리 배우는 언어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습관 같기도 하고, 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성희롱적인 접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흐려지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교수님이 널 위해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니?" 이렇게.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15

[위계 문화에] 적응을 못 하면 "너는 연극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는 낙인 이 바로 찍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것만이 내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지는 거죠. 애초부터 "입학하자마자 못 버틸 거면 자퇴해라"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위계적 문화는 후배와 선배 사이, 학생과 교수 사이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데 선배는 후배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위계와 질서를 세우고, 조교, 강사, 교수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이다.

머리 박는다거나, 새벽에 갑자기 어디 뒤로 집합하라고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면 모든 동기들이 다 그때까지 머리를 박고 기다려야.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가야 다른 친구들이 덜 고통스러운. 아니면 예비역 총회나 여학생총회가 따로 있어서 그 안에서 혼난다거나, 직접적인 구타가 있기도 하고.지금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보통은 딱 한 학년만 불러요. 보통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이 혼나는 대상이 되고, 그 수업을 속일 수 없는 거는 조교도 선배 출신이고, 교수도 우리 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전통을 다 알고 있고, 조교가 선배들한테 "1학년 애들이 수업 잘 안 나온다, 오늘 누구누구수업 안 나왔다." 이런 거 알려주면, 선배가 1학년 불러서 "너희 수업 안 나가? 머리 박아라." 이런 식으로.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전통음악 쪽은 선배와의 위계가 훨씬 심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편하게 수업하실 수 있게 선후배 간에 쫙 닦아 놓으면 교수님이 오셔서 "고개 들고!" 이런 정도. 거긴 위계가 훨씬 심해요. [이 분야가] 지방 연극영화과보다 더 심하다고 보면 돼요. 거기는 아침 6시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전통음악 전공자와] 룸메이트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일 년 내내. "가서 뭐해요?" 그러면 청소한대요, 연습실.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그런 군대 문화에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길들이는 방식이 오리엔테이션부터 계속 있다는 거고, 문제는 그걸 교수가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술 대학의 교수는 그학교 졸업생인 경우가 참 많아요. (중략) 그걸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 폭력적인 문화가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공동작업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지않게]... 이건 우리의 전통이라는 아주 뭉뜽그린 말로 다 승인을 하는 게 최고 정정에 있는 교수들인 거예요.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예술 대학 내에서 가장 심각한 건 위계 폭력이었어요. 그런 위계는 사실 어느 정도 다들 가지고 있고. 교수가 나서서라기보다는 선배들이 그 위계를



116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계속해서 교육시켜 내려오거든요. 교수님 있을 때, 교수님 뒤로 지나가는 거, 교수님 수업 시간에 단체 기합, 이런 식으로 교수님을 존중해야 하는 존 재로서 그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세서 90도 인사는 물론이고 머리끈 색깔까지 지적하고 핸드폰 쓰면 안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사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냐면 입학했을 때,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를 전교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사는 친구들 위주로 기숙사에 신청해서 들어가는 제도였는데 선배들이 방을 돌았어요. 방을 돌면서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너희 인사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사례 9, 대학생)

000[전통공연] 쪽에 풍물이나 리듬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00과[전통 공연]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그룹이 되어 있고 제가 나름 외부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굉장히 놀랍게 느꼈던 게, 학생들이 미리 모여있고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오세요. 선생님 들어오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일단 다 같이 일어나니까 저도 일 어났죠.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앉으시면 다 같이 앉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례 9, 대학생)

나. 도제식 교육과 폐쇄적 집단문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도 제식 교육과 폐쇄적 집단문화로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되면서 권력이 남용되기 쉬운 분야로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와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지적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19.8.1.일자).

문화예술계에서 도제식 교육은 일반적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시절부터 일대일 레슨의 도제식 교육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능 있는 소수 아이를 선발하여 엘리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사교육부터 예중-예고-예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인맥으로 선생님, 동기나 선배는 이후 예술현장에서 만나게 될 선후배와 동료가 되는데 이들은 폐쇄적 집단 문화 특성을 띈다. 도제식 교육과 폐쇄적인 집단문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면서 예술 활동에서의 위계성을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환경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17

으로 인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 드러내기가 어렵고 피해자 와 주변인들은 묵인의 압력을 느낀다.

"선생님, 요즘은 그런 [성희롱]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나쁜 일이 아닌 건데, 그런데 그게 낙인 찍힐까봐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자신들이 여기서 두드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중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찍히면 안 된다는, 우리는 이 사람을 계속 볼 거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 중학교 동기들이 평생 볼 동기들이라고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한 학년 정원이 ○○명이었고, 고등학교는 ○○명이에요. (중략) [다른 지역에 있는] 그○○학교에서 웬만하면 모든 ○○과로 진학을 합니다. 그 ○○과로 진학을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자기들도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래 볼 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찍히거나 안 좋게 생각되면 안 된다는 게너무 강해서 중학생 때부터 청소년 사이니까 서로 다툴 수도 있고, 험담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쉬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 짙었어요. (사례 9, 대학생)

저희 지도교수님[한테 성추행 피해를] 얘기했지만 그런 태도, "나 모른 척할 래" [하는] 이런 태도도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거잖아요,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 "나는 계속 볼 사이니까. 난 모른 척할래." 이 말이 계속 볼 사이. 문화예술계는 결국 활동하는 [영역과]사람 [폭]이 좁고 계속 볼 사이들이 있고, 제재를 당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권력자로서 행동들을 하니까. (강사 1).

정말 사돈의 8촌까지 다 알더라고요. 얘가 어디서 왔고, 누구 선생님한테 배웠고. 국악이다 보니 대부분 국악은 00,00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가족들끼리 아는. 이 정도까지의 문제여서 학생들이 일단 [피해 상황을] 말하기가 어려운. (사례 7,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4.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

가. 성적 자유분방함에 대한 강조

본 연구 인터뷰에 의하면 예술가들은 성적 자유분방함을 유지하며 성적 금기를 깨려는 성향을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 현장에서도 관찰되는데 문화예술 대학교육에서 원초적 감성과 본능에 충실한 성적 묘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수연 외 2018:68).

실제로 수업 내에서 성적인 충동과 표현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것이 확인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성적으로 자유로운 태도는 예술가 갖추 어야 할 필수적 요소로 주입되고 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말해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반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 그것이 너의 문학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검열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생각하지 않아서 내 소설이 늘지 않은 건가?'[라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사례 23, 대학생)

자유로운 성적표현이란 범주가 애매하긴 하지만 충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교육이 연기 교육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충동을 발생시키고 충동과 연결되고 그 충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머무르는 상태를 되게 지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연기과 위주로 얘기를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1인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남학생이 막 옷을 벗어요. 물론 여학생과 장면을 하는 연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객이 수업 내에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다 벗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걸 연기하기 위해] 팬티까지 벗으려는 순간, 선생님이 저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스갯거리로, 재밌는 이야깃거리로 [여겨져요]. 선생님도 그냥 "재밌는 놈이 하나 나왔구나, 우리 학교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여자 배우들은 '배우가 이런 걸 뭔가 위축되면 내가 배우로서 자질이 없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배우면 '키스신 당연히 할 수 있고, 노출 정도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례 17, 대학생)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19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다룰 때, 약간 적절치 못한 발언이 오가든가, 질문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교수 관점에서 이렇게 쓰인 부분을 평할 때... "이런 (성적) 경험이 있었냐? 네가 소설이지만 이런 걸 경험해서 써야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유도하면서 일부러 질문하는 경우가 저희는 좀 있었 거든요. 그때는 다 학생들이지만 그 정도의 판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불쾌하게 느꼈어요. (사례 15, 대학생 졸업자)

수업 중 섹슈얼리티 표현에 대한 예술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병행되지 않은 채, 성적인 자극이나 충동만이 강조되는 일도 적지 않다. 성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작품으로 제출한 것이 어떠한 예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지도 못한 채 교수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떠한 맥락 하에서 노골적 성적묘사와 표현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교수나 해당 학생으로부터 듣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이것에 노출되는 것이다. 예술의 이름으로 예술적 가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설명도 없이 교육자가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독려하여 학생들은 혼란과 함께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낀다.

특히 자극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거 너무 약해, 이거 좀 더 한 거 가져와!"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건 섹슈얼리티와 별로 관련이 없는 작업이었는데, 최고 점수를 받은 게, 자신이 남자친구와 성행위를 하고 콘돔을 빼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최고 점수를 받았거든요. 드로잉 수업이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과제물을 스케치북에 붙여서 가져 왔어요. 그걸 보고 [교수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너무 완전 놀랍다!"고.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이걸 최고라고 할 만한 게 되나, 지금 이 과제와관련이 있나?' [싶은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학생이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최고"라고 "자극적이고 너무 좋다!"고 하는 교수님이 불쾌하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례 12, 대학생)

교수가 수업에서 성적인 얘기들을 하고 성적인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모텔에서 계속 며칠을 묵어봐라. 주변에 성관계 소리를 들어보라"는 얘기를 들었고, "바(bar)나 클럽 같은 곳에 가서 사람을 관찰하는 도움이 된다."고. 제가 다닌 초중고에 비해서 쉽게 성적인 말을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지만, 주변 분위기를 보고, 교수도 "너희가 어려서 그렇고, 좀 있으면 너희도 다 이해될 거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들도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 분위기에 동화가 돼서 이게 좀 멋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사례 16, 대학생 졸업자)

대학사회 안에서 예술가적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부족해 보인다. 예술가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성적 윤리의 경계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위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검토는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지 않다.

'너무 불쾌하다, 저게 어떻게 예술이냐'부터 시작해서. 사진 작업자가 여성의 몸을 묶어놓고 매달아 놓고 성기를 클로즈업 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불쾌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 교수님의 무슨 설명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지 않냐"라는. "이런 거까지 할 수 있어야 예술가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규범과 윤리의 금기들을 깨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였어요. 그 생각 자체에는 저도동의를 하지만,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빛 좋은 개살구나 핑계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사례 13, 대학원생 졸업자)

또한 예술가이기 이전에 학생으로 성적으로 불쾌한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지침이나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생 배우와 학생 감독을 위한 키스신, 베드신등의 노출 수위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며 배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강요되어 여학생들에게 강한 압박감을 준다.

저희는 시나리오나 콘티를 짜내면서 구현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키스신, 베드신 등 성적인 장면을 구현을 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 감독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판타지를 그런 거로 푸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시나리오나 이런 게 자기 전 여친에 관한 드라마를 쓴다든가, 영화 각본을 써서 그걸 실제로 찍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연기과 학생들이랑 작업하는데, 배우라고 해서 모든 몸을 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 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배우면 감독이 요구하는 걸 다 해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아무런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교수랑 같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찍기전까지 면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뭔가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21

촬영현장에는 교수가 없어요. 학생들끼리 이뤄지는 자리에서 베드신, 키스 신, 여성의 몸을 노출하는 수위가 연출의 마음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례 17, 대학생)

저희는 제작 실기니까 제작 실습수업에서 진짜로 영화 찍는 동기들이 요새는 베드씬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 보니까 옷을 입을 상태로 배우들이 불편하지 않을 선에서 그런 실습 과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하는 베드씬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교수님께서 그 과제에 대한 비평을 너무 신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옷을 입고 저게 어떻게 베드씬으로 성립이 될 수 있냐, 이게 무슨 베드씬이야?" 이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하시고. 그러면 그걸 듣는 그거에 재밌는 선배들은 즐거워하죠. 그거에 대해 기분이 나쁜 다른 친구들은 저들이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나의 창작물이라 할지언정 저들의 평가를 받아야 인정되니까 묵인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사례 11, 대학생)

나.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 대상화

문화예술계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관행은 남성 중심의 위계구조와 결합 하여 다양한 방식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대상화를 양산하고 있다.

성별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여성 학생을 향후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절하하며, 예술 영역 안에서 차지하는 성별 역할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에 힘쓰기보다는 빨리 시집가는 게 낫다', '여자가 작가가 되겠어', '여자 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냐' 등의 성차별적 표현이 수업시간 안과밖에서 교수나 선후배 사이에게 만연하다고 한다. 성차별적 언급 외에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데,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성에게는 평판이나 이미지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미투운동 이후인 상황이라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조성되긴 했는데 알게 모르게 있는 성차별 발언 같은 게 만연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들 웃어넘기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게 성차별이라고 인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여성 예술가들은 예술에 힘쓰기보다는 빨리 시집가는 게 낫다." 이런 발언들.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부터시작해서 그런 발언들을 종종 들었던 거 같아요. 그걸 그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례 14, 대학원생)



제 학부엔 남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졸업 전시할 때도 남학생이 없었거든 요. 졸업 전시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졸업한 선배들이 껴들어서 "너희 여자밖에 없는데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자 선배들도 그런 식의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남자 선배들이 "너희못 해, 안 돼, 결혼이나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하다 보니까…. (사례 24, 대학원생)

여성들한테 기대하는 건 연기력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작업에 들어갔을 때도 까칠하게 하지 않고 문제 제기 많이 안 하고 얌전하게 같이 작업하기 편한 털털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 배우들은] 퇴근해서도 계속 평판 조사 들어가고 이미지 관리해야 되고. 학교 안에서만 보자면, 처음에 [어떤 여자]얘랑 [연기] 장면을 했어요, 남학생 입장에서. 다음 장면을 할 때, 여자 배우를 선택하는 거죠, 걔네는. 여자 배우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한편 성별 고정관념은 예술작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기존의 예술작품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시대나 사회의 맥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수업시간에 예술장르마다 다양한 고전작품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는데, 고전 작품을 통해 재현되는 여성의 성적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해석 없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데 이는 현실과 작품을 넘나들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학교가 되게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학습하고 보는 예술 작품들 안에 이미 혐오적인 맥락이 되게 많은데 그걸 비판적인 능력 없이 습득하고 재생산을 하고 그것을 연기하고… 예를 들어 강간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강간당하는 역할을 연기로 하는 거고, 남자는 하는 거고. 점점 삐뚤어지는 거죠. 말을 잘 못 해서 정리를 해 왔는데 잠깐만요. 전반적으로 여자는 항상 대상화되고, 저희가 하는 인물들도 되게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하고 혹은 뭔가 당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히스테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여성성을 습득하고. 그게 이 학교가 연기와 일상, 그리고 작업이랑 존재를 분리를 잘 안 해요. 애들이 다 연기 생각만 하고, 작업 생각만 하고 일상이 거의 없고, 저는 제가 없고. 그런 역할 하는 게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춘향가에도 묘사된 걸 보면 좀 되게 노골적이고 그거 자체가 쓰여진 때가 옛날이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죠. 특히 탈춤 장면도 승려가 매혹당하게 되는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23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탈춤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요. 그냥 이렇게 걷는데 승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치마 들치고 이런 장면인데….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하죠. 왜냐면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그대로 배우게 되거든요. (사례 9, 대학생)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을 인격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표현으로도 연결된다. 수업이나 각종 오디션에서 여성은 남성과 달리 품평과 소비의 대 상이 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언행이 본 연구 면담에서 확인되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화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가해 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솔직히 말하면 배우로서가 아닌 평가 부분들. "몸매가 어떻고, 걔가 나를,"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꼴리게 만들고" 하는 말들이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선배들까지. ['꼴리게 만든다'가] '성적으로 약간 흥분되게 만든다'라는 말이래요. [그런 언급을 오디션에서 하면서] "너 연기하는 게 사람을 꼴리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은]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너 너무 창녀 같아." 이런 얘기.(사례 7,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예를 들면, 남성 인물이 여성 인물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작품 안에서 그걸 하고, 작품 밖에서는 "아, 이번엔 누구 가슴을 만져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플랫하게. 그런 일이 되 게 많아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교수님 중 한 분이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춤을 한번 취보자고 했는데 "남학생들은 이 기회로 여학생들 손도 좀 잡아보고 허리도 좀 둘러보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중략) 교수님 중 한 분은 "여기는 왜 이렇게 여학생들이 없어서 분위기가 침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중략) (사례 12, 대학생)

최근에 들은 건, 정준영 사건 때 즈음이었는데, "물뽕은 서약의 묘약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남자 문인들이 전부 예쁜 여자 좋아하니까 평가 받고 싶으면 잘 꾸려라." (사례 23, 대학생)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자가 작가나 되겠어, 시집이나 가"라는 말을] 당하긴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남자 선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어서 아직도 여전히 [그런 차별적인 문화는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제 학부 동기가 아직 학교에 다니는데 그런 문제적 발언을 하던 선배가 동기 남자한테 와서 "1학년 친구들을 빨리 꼬셔라. 빨 리 성관계를 맺어라. 그러기에 쉬운 대상들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 닌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성인식 자체가 많이 부 족한 상태인 친구들이 아직도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사례 24, 대학원생)

하지만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일이 불쾌하여도 이를 문제제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성적 대상화 문화는 대학 문화예술계 프로그램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규범이기 때문에 여성 개인 일부 여성들은 차라리 이를 수용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는 편을 택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불쾌한 감정이 드는 일에 대해 가벼운 농담이나 '웃고 넘어가는 성희롱'으로 승화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가슴이 좀 크다 그러면 '쭈쭈'. 가슴이 좀 작다 그러면 '찌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르기도 하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유분방함으로 무마가 되는. 남학생들이 보통 [그 명칭을] 지어주고, 그것을 모두가 별로 거리낌 없이. 남학생들이 계속해서 "찌찌다!"이랬으면 수치스러웠을 텐데, 같은 여학생들끼리 "찌찌야~쭈쭈야~" 이렇게 부르면 심각성이 훅 낮아지면서 점점 둔감해지고 같이 자유분방해지는 쪽이 여기에서 살아남기에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내 실제이익을 따져봐도 [참고 적응하는 게 나으니까]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오디션 자리에서 "클럽은 가니? 춤 좀 취볼래? 연애는 하니?" 이런 걸 공개적인 통합오디션 자리에서. 그걸 아주 농담하듯이 친근감을 과시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저희 과 특수 상 커요. 우리는 깨끗하고 다 친하고 자유분방한거고, 다른 과와 달리 그런 데서 일어나는 웃고 넘어가야 하는 성희롱이 진짜 많아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V. 문화예술계 대학의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 125

5. 소결

본 장은 문화예술계 대학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예술계 대학을 경험했던 면접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문화예술계 대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계 대학 내 권력집단으로서 교수와 강사가 갖는 지배력을 들 수 있다. 교수와 강사는 예술가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스승을 넘어, 오랜 시간 존경해 온 '예술가'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교수와 강사는 문화예술계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심사'라는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문화예술계 대학이 성별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수와 강사가 갖는 지배적 권력이 지배적 성별 구조와 교차되면서 갖게 되는 권력이다. 많은 여성이 유입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교수와 강사 중심으로 집중된 권력이 낳는 결과이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구조는 학생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예술 현장에 앞서 자리 잡은 남성선배, 남성 교수와 강사, 남학생들로 이어지는 카르텔로 이는 여성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고 있다.

셋째, 구조와 문화의 위계성이다. 문화예술계 대학은 공동체라는 명목 하에 위계를 정당화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예비 예술인들은 해당 분야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대학과정 안에서 예술인으로서 위계적 문화에 순응해야 함을 배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교육과 폐쇄적인 집단문화는 개인을 위축시키면서 예술 분야 내 위계성을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위계적 특성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 시 피해 드러내기를 어렵게 하며 피해자와 주변인들로 하여금 묵인하도록 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넷째, 예술인 특유의 성적 인식과 표현의 관행을 들 수 있다. 수업 내에서 성적인 충동과 표현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성적 태도는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 요소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남성 위주의 구조와 결합



되면서 문화예술계 대학의 다양한 방식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적대상화를 양산하고 있는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화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 성희롱·성폭력 발생 공간	129
2. 성희롱·성폭력 기해자 특성	136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139
4.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기해의 전개 양상	141
5. 소결	142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 성희롱·성폭력 발생 공간

가. 강의실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여타 전공 경우보다 성(性) 관련 발언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레 행위자의 성희롱 언행에 노출된다. 성문화를 다루는 강의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거리낌 없이 높은 수위의 성적 발언이나 예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수업중 다수 학생 앞에서 벌어져도 학생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제가 201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 피해 당시는 2017년 3월이었어요. 1학년 이었고 완전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당시 과목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략] 그 수업이 매주 과제가 있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가해 교수가 뭐라고 하죠. 탁자 같은? 강단이 있는 그런 곳에 서 있었고, 저는 스크린 옆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제가 발표를 이렇게 하다가 그 발표 내용 중에 어깨동무하는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놨었는데 발표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가해 교수가 '여기로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렇게.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옆으로 갔는데 갑자기 제 여기 팔뚝을 딱 끌어안고 만지면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어깨동무도 아니고 팔을 잡아서 끌어안듯이 안은 다음에 팔을 이렇게 주물럭거렸거든요. 여기를. 그런데 그 당시 강의실에 서른 명 넘는 사람이 있었고 동기들도 다 있었고 타과생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딱 하니까 제가 머리가 새하여져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수업 중에도 'VR이127) 발전했다'고 얘기하면서 'VR이 발전해서 혼섹, 혼자섹스가 가능해졌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도 구애받지 않고 VR을통해서 혼섹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있던 한 남학생을 지명해서 '000학생, 너무 좋지 않아요?'라고 물어보면서 그학생에게 대답을 계속 요구하면서 그학생을 당황하게... 그리고 발표 때, 어떤 남학생이 앉아 있고 주변에 여학생에게 둘러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냐? 좋지 않냐?'는 식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을 계속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자)

수업 시간에도 성희롱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어떤 남학생한테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서 '섹스 로봇이 나오면 어떨 것 같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 이야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질문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관련한, 수업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그런 이야길 했어요. 저희가 들었을 때 불쾌할 것 같은 그런 성적인 농담도 하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40대 중반의] 강사님이었는데...[중략] 이분은 기관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셨어요. 추행까진 아니었고, 희롱의 발언이었어요. 얼굴 평가라고 해야 되나? '여자 학생들이 많으니까 수업하기 기분 좋다'는 농담으로 시작해서 '역시 여자라면, 이 여자 봐라'라고 하면서 '말할 때도 사근사근하게 예쁘게 말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는 식으로. (사례 7,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나. 연구실

학생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집단상담은 담당 교수의 연구실이 나 공적 회식자리에서 학기별로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 참여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사례 2와 같이 매 학기 상담 시간 마다 여학생들은 특정 교수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례 3과 같이 교수와 단 둘이 있는 연구실에서 그의 노골적인 언행으로 불쾌감과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¹²⁷⁾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 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위키피디아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3%81%ED%98%84%EC%8B%A4)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31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손바닥 혈 자리를 봐준다고 하면서 손을 주무르면서 추행 시도를 하고. 지도 교수가 그 가해 교수여서 저희는 매 학기 교수님과 상담을 진행해야지 성적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음 학기에도 교수님과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분께서 상담하러 갔더니 '요즘은 건강이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서 또 혈 자릴 봐 준다는 이야길 할까 봐 '요즘은 괜찮다'라고 했더니 '비결이 뭐냐?'라고 해서 '요새 운동한다, 스쿼트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더니 '잘 모르겠다, 보여 달라' 이런 얘길 한 적도 있고. 다른 분한테는 자궁 건강?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과의 상담은 매 학기 있으니까 '그 상담 자체가 되게 큰 부담이고 좀 힘들었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2학기 때] 집단 상담을 갔는데 전 너무 그 시간이 두려웠거든요. 옆에 앉기 싫어서. 또 그런 짓을 할까 봐. 그런데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저한테 옆에 앉으라고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다 여학생이었는데 그때는[1학기때] '옆에 왜 앉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야, 너 옆에 앉아'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그때 [1학기 때 집단상담 피해 이후] 두 번째 피해가 있었어요. 저는 술을 안 해서 안 마시고 있었는데, 또 똑같이 팔을 이렇게 주무른다거나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특히 여기, 이말랑말랑한 부분을. 여기를 만지거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어버려서 '어떻게 하지…'.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다. 회식자리

특정 교수에 의한 성추행은 회식 자리에서도 빈번한데 문제는 이것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일부인 개인·집단 면담이나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이 같은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행위자가 평점을 주는 위치에 있는 교수였기 때문이다. 평점 외에도 교육과정 특성상공동 작업이 빈번하여 학생으로서 작품을 완성하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이러한 문제를 묵과하게 된다.

저는 그 수업하러 가는 것도 괴로웠지만 지도 교수 상담 때가 더 괴로웠는데, 첫 지도 교수 상담 때는 제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여자 선배한테 등을 쓰다듬는다거나 술을 따라 달라고 한다거나 팔을 만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반대편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하 진짜... '또 저러네'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아 쟤 또 저러네' 이렇게 넘어가는. [중략] 집단상담이라고 교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얘길 하는



자리인데, 그 교수는 항상 '0000'라고, 저희 학교 뒤편에 있는 산에 밥 먹는 곳에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얘길 하는데 막걸리를 항상 시켜요. 그것도 공식적인 자린데. 그래서 막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밖에 있는 식당은 다른 사람도 있고 외부 사람도 많은데 거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외진 데고, 또 따로 있는 방 같은 곳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옆에 앉은 여자 선배의 등을 쓰다듬고 술 따르라고 하며 팔을 만지는 행위를] 더 그렇게 한 것 같았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제가 학교를 다닌 처음 3년에는 [중략] 학과 공식 술자리가 엄청 많았어요. [선후배 간] 대면식을 7번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또 따로 하고 기수 부여식 이라고 따로 하면서 실제로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배우 분들이 오시기도 하 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성의 영화를 많이 찍으니까 그거 하면 시파티, 쫑파 티를 해요. 그러면 꼭 선배들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중략] 술 취해서 후배 들을 만진다든가, 치마를 입은 후배한테 '너 일어나, 돌아 한 번' 이런 식으 로. 그게 비단 3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올해 3월의 있었던 얘기고. 그런 식 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번에 문제였던 게, 어떤 팀에서 촬영 감독 이 10학번 정도로 나이가 되게 많으신 선밴데, 제적을 당하셨다가 방송계에 서 엄청 오래 일을 하시고, 촬영 감독으로 영화계에서. 그래서 경력을 인정 받으신 후에 재입학을 했어요. 재입학하셔서 처음 찍은 영화에서 [여자] 조 연출, 완전 까마득한 후배죠. 조연출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으 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일축했는데, 연출 자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감독의 편을 들면서 조연출한테 '너만 조용히 하면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요해서 영화를 결국 찍었 는데, 조연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서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화계는 인맥으로 영화제를 가거든요. 영화제도 나이를 엄청 보고. 나이랑 경력이 있으면 좀 우선시해서 뽑아주는 것도 있고, 졸업 영화가 영 화제에 갈 확률이 높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들은 결국 기회를 하나 잃고 피해도 보고, 선배들 사이에서는 '쟤가 촬영 감독의 학교생활을 망치려 한 다' 이런 식의 소문도 돌아서 학교생활도 힘들고 그 자체로도 심각했던 일 이 있었어요. (사례 11, 대학생)

[중략] 대학교 때는 성인이니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터치가] 더 많았죠. 교수님이나 강사 선생님이나 공연이 끝나면 뒤풀이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학교에서도 그런 적 있지만, 다른 쪽에서도 '너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고 해서 가서 술을 같이 먹다 터치를 계속한다든지, 그중에 심한 건 화장실에 가서 뽀뽀, 키스해서 강간하고. (사례 26, 대학생 졸업자)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33

라. 사적 술자리

학생 대상 심층면접에 의하면 사적 술자리에서도 성희롱·성추행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같은 피해는 교수나 강사와의 술자리에서 자행되는데 인맥형성의 장이 되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들이 해당 영역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데려오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수업의 일환으로 사적 술자리를 조성하거나 평소 학생들이 동경하던 유명 인사를 초대하여 자연스레 술자리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던 학생들은 이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유명 예술인과의 만남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인적네트워크를 넓히기를 기대하나, 정작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은 학생을 자신이성적욕구를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2018년] 3월 초 대학교에서 술을 많이 먹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서 교수님을 만났고 교수님이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다 술을 한 잔 사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술자리로 이동을 했고, 교수님이 추행했고…. 이런 사실들을 친구들이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학번을 딱히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그런 고발 사실들이 나오게 됐어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강사는] 오랫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3년이 되면 무조건 강사를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학생들의 신뢰는 받으면 서 자기의 책임감은 전임교수보다는 더 낮은데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학생 들이 잘 따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술자리도 되게 많고 그런 술자리를 수업 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학점을 술자리에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매기 기도 하고, 술자리에서의 자유분방함? 수업에서 이뤄질 수 없는 걸 요구하 기도 하고, 학우가 선생님을 불러내고, 자기가 강사니까 본인들이 친했던 나이 많은 문인들에게 학생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술자리에 어린 여학우들 을 데려와서…. 자기 선배 문인이나 친구 문인들한테 '나 강사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애들이다'라고 보여주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선배 문인들, 필드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면 서 '야, 영광인 줄 알아'라는 식의 뉘앙스를 많이 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 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좋은 기회처럼 생각하는 것도 좀 많았어요. 그게 학점이랑 연결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사실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만약에 만점을 받아 'A+인 친구가 술자리에 안 오면 +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술자리 중의 한 자리가 000이라는 분이랑



같이 있는 술자리였는데 거기에 제가 가진 않았지만 바로 위의 선배들이 다 술자리에 갔는데 그 술자리 양옆이 다 비어 있었다고. 그리고 다른 문인들이 '너 왔으면 뭐 하냐, 얘기라도 하고 술이라도 따르라'는 식이에요. (사례 15, 대학생 졸업자)

저희 계통은 강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외부에 작가들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 가 수업의 연장선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업 때 읽었던 소설을 쓴 사람, 시를 쓴 사람이 술자리에 나온다면 되게 혹할 수 있고,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가는 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엄청 잘 쓰니까 데려간다는 식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잘 써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건가?' 싶어서 가보면 술자리에요. 술을 먹고 할 순 있지만, 그렇게 오는 작가, 교수의 강사의 친구의 작가들이 오면 그 작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약간 그 자리가 여자와 남자가 술 을 먹는 자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그들도 문창과를 나왔고 이 계통에 들 어왔고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자리가 남자와 여자 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야 점잖게 하지만 나중에 어떤 자 리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귀기도 하고, 아니면 성관계를 갖거 나 성추행을 하거나. 그런데 그걸 추행이라고 말하기가 아주 애매해지는 게 그 자리를 갈 때 어린 애들이 뭘 모르고 갔을 때는 정말 작가를 보고 싶어 서 가지만 나중에 이 과에 있어 보면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 술자리에 작가들은] 여기서 아이들과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사례 16, 대학생 졸업자)

외부 작가들하고 늦은 술자리였어요. [중략] '이 [강사] 선생님은 술은 좋아하지만 되게 깔끔하고 안 건드려. 이상한 선생님들에 비하면 훨씬 나아.' 그런데 여자애들이 1차, 2차 하면서 빠지고 빠지다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술을 계속 먹게 됐는데 취하니까 [그 선생님이 남아 있는 여학생에게] '모텔로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16, 대학생 졸업자)

언제 한 번은 노래방에서 여자를 교수님 한 명당 한 사람씩 앉혔나 봐요. 술집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과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난 애들만 뽑아서 선생님들이 술자리에 불렀어요. '야, 너희 클래스에 걔 좀 불러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한 사람씩 앉혔어요. 술자리에서 노래방 넘어갈 때, 노래방에서 옆에 앉히고…. 술을 같이 파는 노래방이다 보니까 맥주 한잔하자고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시키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중략] [여학생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울고 그랬죠. 언제 한 번은 그럴 때 신체 접촉이 좀 있었나 봐요.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례 22, 대학생)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35

마. 기타 상황

신체 접촉을 통한 교수법이나 지도법이 일부 문화예술계 영역 내에선 어느 정도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규범이 부재한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접촉은 밀폐된 공간의 연습실이나 실습 현장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이어지곤 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빌미로 학생에게 성적인 관계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직접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몸을 만진다거나, '내가 외로운데 나랑 만날래?' 이런 식으로 발언도 하시고. 그런 교수님께서 전화하시고. 가슴을 만지고, 몸 만지고, 은밀한 부위도 만지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폭행을 당했다'라고. [중략]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 교수가 실습 현장에서 학생에게] 마이크를 달아주면서 '나는 어린 여자애들한테 내가 직접 마이크를 달아줘야 돼' 하시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달잖아요. 방송 촬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하면서 [가슴을] 좀 주무르듯이. (사례 7,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2018년 미투를 통해서 000과도 드디어 이런 사실 고백을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단순히 연기 지도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학생을 직접적으로 만지고…. 지도를 하는데 굳이 막 가슴을 만지거나 따로 불러낼 이유는 없는데, 따로불러내서 몸을 만져가면서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다음 공연에 쓰려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사례 7, 대학생, 피해자조력인)

어쨌든 무용이 만져야 되잖아요. 몸을 쓰다 보니까 말로만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잡아줘야 하고 만지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남자선생님들이 만져 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긴 하죠. 불쾌하게 좀 [느껴지는 터치들이 있죠]. 만져봤자 어깨, 팔, 다리, 이 정도인데 간혹 과하게 엉덩이를 꽉 잡는다거나 허리를 잡으면서 가슴을 좀 만진다든가. 이런 게 저도한 번 정도 있고, 주위에서 들은 것도 많죠. [불쾌한 터치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가 소문도 많고, 고등학교에 나온 선생님들은 대체로 젊으니까 그 선생님이 고등학생 여자를 학생이 아니라 여자로서 터치를 많이 한다든가... 어쨌든 무용은 몸매가 좋아야 하는 건 좀 있거든요. 요즘엔 좀 덜하긴 하지만, 몸매를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걸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표현 자체를 이상하게. [무용 선생님이 여러 명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의 강사가 그랬는데] 그땐 어렸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이 슬쩍 가슴 만지더라'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면 선생님이 '주말에 자기랑 술 마시자'고. '너희 다 술 마시지 않냐'면서. 지금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거의 제 나이 때 선생님이니까 다 어렸더라고요. (사례 26, 대학생 졸업자)

2.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고발이나 교내 공론화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교수나 강사들은 변명하거나 자기방어하기에 급급하다. '학생과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거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혹은 '의도성이 없었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거나 피해 학생과 나눴던 이메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유출하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사퇴하여 교내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도 한다.

[강제수행 당한 피해자 고발이] 언론에 공론화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교내에서 했었죠. 기자들도 정말 많이 오고, 학생들도 피케팅 시위를 하면서 '사과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교수니까 위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중략]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학생과 동의하에 있었다'고 하면서 [가해 교수는] '이 학생이 거짓으로 미투 고발을 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때 피해 학우와 자신이 나눴던 이메일 같은 내역들을 다 프린트 해 와서 그걸 취재진한테 다 돌렸었어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초반에 학내에서 가해 교수가 기자회견 했을 때부터 사표를 냈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학교 안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건 거죠. '내가 잘못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인격 살해를 당했으니까 난 이 자리 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가 성명문 내고 [가해] 교수랑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교수가 타국에 있었는데 통신이 미흡하다는 핑계로. 너무 그때 화가 나서 교수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크다, 교수님이 답을 해라'라고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37

했는데 저희 거에 답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입장문을 내자 '전면 부인한다'라 는 000신문이라는, 00에서 가장 큰 지역지가 있거든요. 저희 전화는 받지 않 더니 지역지 인터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문 끝에 '교수 는 우리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대위들도 교수 입장을 신문사를 통해 서 받았다, 그리고 교수가 전면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전면 부인한다'고 써 서 학과 홈페이지, 기사에 나가게 됐었고,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교수가 다 시 연락이 와서 자기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셨는데, 비대위 안에서 학생회장 을 맡은 선배가 [가해] 교수님한테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답이 없다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루머들에 대해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와 교수들의 입장문이 나가고 나니까 자 기가 '너무 당황해서 법적 대응까지 운운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과한 다,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자기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지만, 학과에 누 를 끼친 것에 대한 사과를 표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끝까지 의도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사과문을 내지 않았었고 지금까지도.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자기의 '친근감의 표현 을 학생들이 오독한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고 서 있을 수가 없다, 빨리 돌 아가겠다'고 저희한테 카톡이 와서 저희는 '교수님 얘기는 알겠으나 저희는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다, 학교 통해서 연락하시거나 저희 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마시라'고 이 야기해서 개인적인 카톡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학교의 징계 위를 통해서 혹은 인권센터, 예전에 성평등 상담센터였던 곳에 신고를 제기 하게 되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심층면접에서 파악한 가해자 특징 중 하나는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을 수십 년 간 지속해서 했다는 점이다.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걸쳐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특히 신입생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교내 상황이나 피해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신입생이 가해자가 우선적 타깃 대상이다. 권력과 위계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신입생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처했던 것이다.

저희 예술0000학과는 2005년 즈음에 개설이 됐기 때문에 신생학과였거든요. 그 교수는, 그 가해자는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었는데 이전에 000대학교에 0000학과에 재직할 당시부터 2018년 폭로까지 가해 행위를 계속 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20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해왔고, 그중에는 선배들 중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대학원생도 있고 학부생도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나오기



했지만 폭로하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많았고, 또 대학교에서 대학원생 지도 교수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2차가해가 발생하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한테 따로 연락이 온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가해 교수가 10년 전에는 000과에 재직 중이었는데, 그때 000과에 있을 때 자기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교수가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 것임에 대해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눈 밖에 나면 학교생활 힘들 거라는 뉘앙스로 그분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고, 자기는 '지금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 진술서를 내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는 그 교수한테 10년도 더 이전에 가해를 받은 적이 있고 결과가 꼭 파면이 나서 앞으로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해 수위를 떠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 되어 왔었던 거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2학년 때, 그 교수가 연구년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없었죠. 한국에도 없었어요. 그때가 정년퇴직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들 안타까웠어요. 정년퇴직이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야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인생을 망치고 눈물을 흘렸겠느냐며… 그래서 저는 더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화수분 터지듯이 온갖 비애 사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연구실, 상담, 진짜 많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저희가 한 학년에 여학생은 보통 20명이 여학생이고 5명 정도가 남학생이에요. 한 학년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선배들이 조심하라고 했었고, 제 위 학번에도 여러 명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 한 학년에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사실 그 가해 교수에 대해서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선배들이 저희 동기들한 테 그 '가해 교수가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왔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상담이 있을 때 절대 옆에 앉지 마'라고. [중략] 그 가해자가 저희 선배들도 보통 새내기 때 그렇게 일부러 한 것 같았어요. 보통 거의 새내기일 때. 그러니까 더 권력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거의 모든 피해 학생들이 저학년일 때 발생을 했다는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위계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었으나학교에 의해 기각을 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명을 하더라고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39

3.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후유증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피해 발생 당시에는 예기치 못한 가해 행위로 피해인지를 잘못하거나,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피해 사건으로 고통, 수치심, 불안,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다.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정서적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친구나선후배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자신이 그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피해가 진짜 내가 당한 게 피해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감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기 위해서 이 교수와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건데…[중략].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추행을 한 건데 제가 진술을 하면서도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때 그 딱만졌을 때의 기억은 전혀…. 가물가물하거나 기억이 안 나고…. [2차피해 발생했던] 그때도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진술하고 나서 사실 더 복잡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술을 할 때부터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는 거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자세하게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하지… 그때 이걸 했던 게 맞나 아닌가'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그 감정이 계속 나고, 감정은 살아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추행을 당했던] 그때의 심정은 수치심? 전 특히나 다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수치심이 들었었거든요. 성적 수치심도 들긴 들었어요.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건데 갑자기 와서 끌어안으니까 수치심도 들었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이번 학번은 쟤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내가? 왜 내가 지금 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마무리가 돼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끝났고 내가 나름 대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다, 그걸로 됐다' 그리고 제가 거의 마지막 피해자



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이런 일 안 겪어도 되겠다, 앞으로 이 애들이 어떤 교수를 만날진 모르겠지만 그 교수를 안 만나서 다행인 것 같다'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불안이랑 우울이랑 불면증약을 먹고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그 조사까지 과정이 저한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는 그 조사 받으면서 '그 가해 교수가 학교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하지, 진짜 와서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무실도 있는 거고 하 니까, 전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서.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본인들이 실명을 걸고 글을 썼지만, 조사위나 징계위의 과정 자체에서 피해 자들이 실명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친구들도 제가 그게 상처였다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저도 얘기를 안 했으 니까. 얘기를 못 하다가 폭로가 있을 때쯤에 친구들한테 '나 진술했다'고. '나 잘한 일이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지지를 안 해줄 것 같아서, 많은 사 람이. 친구들한테 이야길 해서 용기를 얻고자 했었는데 '나, 이거 성폭력으 로 진술했는데 이걸로 징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 '아, 그거 진술 진짜 잘했다!'고. '네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계속 물어보고 해줘서 폭 로 이후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략]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이게 성 폭력으로 신고가 진짜 될까?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략] 또 학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일부인지 대다수인지 모르겠지 만 특히나 남학생들이 '아니 이 정도 일 가지고 저렇게 00에서 저명한 분을 쫓아내도 되겠느냐?'고. 이런 식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사실 했었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지지하고 믿어줄 사람이 있 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자 선배들이 이 진술을 받아줬고, 대면하지 않고 그냥 진술을 받아줬고요. (사례 2, 대학 생, 피해자 조력인)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41

4.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가해의 전개 양상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거 행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2차피해를 입는다. 피해자 학생과 나눈 메일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가해자와 친분 있는 교수나 강사가 가해자 편에 서서 발언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2차가해를 자행한다. 학생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주변인들의 악의적인 발언이나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뉘앙스의 비난을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나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실제로 피해 학우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맞긴 하는데, 그걸 [가해 교수가] 취 재진한테 뿌렸다는 자체가 피해 학우한테는 위협적이고 자신의 신상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그 가해 교수의 주변인인 시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피해 학생) 고발 가짜다'라고. 시인이 그런 식으로 이분[피해 학생]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우분이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00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 부분 불기소 부분 구약식 나와서 [벌금으로] 끝났어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나중에 들어보니까 술자리 이런 데서 가해 교수 000 교수가 자기한테 '살고 싶지 않다며 울면서 전화가 왔었다. 물론 교수가 잘 못 한 건 맞지만 그렇 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 앞에서 계속하는 거죠. [중 략]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가해 교수가 울고 너무 힘들어하고 공황이 온 것 같다는 이야길 하는 중에 피해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그 술자리에서 '교수님 이런 얘긴 사실 안 듣고 싶다'고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른 학생이 술자리 오니까 또 그 얘길 하는 거죠. [중략] 나중에 저 희가 조사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징계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비대위를 통해 서도 그렇고 교수님한테 약 4~5건 정도의 경고를 드렸거든요. '그거 2차가 해고, 하시면 안 되는 거다, 학생들이 누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데 교수님 이 그 말 하는 거 되지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류의 이야길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래 학생들이랑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좋은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려서 이제는 학생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비대위를 약간 나쁜 사람 만 드는 발언을 계속하시는데, 그 교수님은 되게 똑똑하신 분이라서 자기의 말 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길 하는 거



자체가 비대위를 학과에서 고립시키는 형태의 발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독여 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비대위를 사과나무 뽑는 사람으로 묘사를 해서 수업 중에 설명하신다던가.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시는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딱 '이거 2차 가핸데? 아…'하면서 그만두시고 '2차 가핸데?' 하면서 또 그만두시고. 정말 치고 빠지는 형태의 2차가해를 그 교수님은 되게 많이 하셨고. (사례 3, 대학생 조력자)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학과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그런 말로 신고하는 건 좀….' 이런 류의 2차가해를 좀 많이가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가 미안하다고 했다며?' 약간 이런식으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이건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응원하는 분들은 늘 조용히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런데 싫은 말 하는사람들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또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면서 2차가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뭘 바라고 하느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고 비대위를 하느냐, 영웅행세 하지 마라'이런 이야기들을 술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례 3, 대학생 조력자)

[작가랑 섹슈얼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면] 여자도 [실명이] 돌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잘 못 했던 이유가 그 많고 많은 000의 피해자 중 한명, 평범한 학생이 피해자들 중의 한 명이 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일이 더 억울한데, 000한테 당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두명한테 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 걔 또?'라는 여자들에겐 그런 이미지가 심어져요. '걔한테도 당하고 걔한테도 당했어?' [라는 2차피해가 가해지는 거죠]. (사례 17, 대학생)

5. 소결

앞장에서 논의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권력 구조'와 '성별화된 구조',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된 특성은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의 맥락을 구성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 하에 어떠한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강의실, 연구실, 회식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143

자리, 그리고 사적 술자리를 포함한 기타 실습 현장 등에서 발생한다. 문화예 술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적 표현의 자유는 교육자의 젠더 인식과 감수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잦은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 행 동을 하는 일부 교수나 강사는 수업 중 예시의 일환으로 학생을 당황하게 하 는 신체 접촉을 행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적(性的) 주제를 거리낌 없이 다 루며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민감한 성적 주제를 다룰 때, 교육자의 충 분한 설명과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전달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 끼게 한다. 또한 일부 교수나 강사는 '여학생들이 수업에 많아 기분이 좋다.' 라던가, '사근사근 말하는 여자'의 말투에 '기분이 좋다'는 식의 성차별적이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습관적으로 한다. 학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는 개인 혹은 집 면담에서도 성인지 의식이 부족한 문제 교수에 의해 성희 롱·성추행이 반복된다. 교수와의 개인 혹은 집단 면담,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 리, 실습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교수 나 강사는 학생들의 동경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이들에 게 성적으로 접근한다. 사적 자리에서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파트너인 것처 럼 대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일삼기도 한다. 현장 실습 시간에는 불필요 하거나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며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언급하며 대가형 성 희롱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들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피해 고발을 당하면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한다는 점이다.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피해자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일부 특정 가해자들의 성희롱·성추행이 10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졸업 후 가정과 직장에 몸담고 있어 피해 고발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피해 학생의 미투를 지지하며 자신의 1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같은 교수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교수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가한 성희롱·성폭력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왔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문화예술계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학 당국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점에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교수의 위계 폭력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14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학생의 자유의사가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것 같다. 피해 당사자는 사건 발생 시점에 가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인지 못한 채 당시 정황이 정서적 충격으로 남기도 하고 구체적 기억이 소실되기도 한다. 젠더 감수성이 높은 학생들은 피해 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만,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 스러워한다. 피해 신고를 한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성희롱·성폭력 이후 2차피해는 가해자의 피해자 주장 부인이나 교수 주변 인의 가해자 감싸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학과 교수를 가해자로 고 발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고 과한 대응이라고 눈총과 핀잔을 들으며 고통에 시 달리기도 한다. 피해 신고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비난을 가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성적 자유분방함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예술계의 성적 표현의 자유는 남성중심적 위계문화와 결합되어 성희롱· 성폭력 발생의 배경으로 작용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1.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느러내기	147
2.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	149
3.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158
4.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164
5.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166
6.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168
7.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	170
8.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바	173
9. 소결	179



VI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1. 미투운동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랜 세월 지속된 위계 문화 및 섹슈얼리티 와 관련된 고유한 문화에 젖어 이에 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초에 촉발된 미투운동은 이들이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수업 중 교수의문제 발언에 지적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해당 교수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그 분들이 '나도 당했다'고 말하신 게 아니라 '수업 내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적이지 않나'는 거였고, 실제로 가해 교수가 그렇게 발언한 뒤에 강의실을 나가니까한 학생이 '저렇게 의견 수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 하는 사람은 예술가가아니라 사회 운동가나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문제적이라는 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실 용기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수년간 지속된 위계 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덮고 지내던 학생과 졸업생은 미투운동에 용기를 얻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 공유, 제보하면서 음지에 숨겨졌던 사실을 드러내며 공론화하게 된다. 미투운동 과정에서의 피해경험 폭로를 관찰하며 '그런 문제'도 공적으로 표현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현상이 대학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그동안 학교나 교육당국이 이들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투운동 이후 새로운 계기를 맞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지



하는 학생들은 약자들의 '말하기'와 '드러내기'의 수단인 대자보를 통해 교내 게시판 등에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고발하여 '피해 드러내기'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결국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너희들끼리의 소수 이야기야'라고만 치부됐던 것에서 바깥으로 이 [피해] 얘기들이 드러나면서 특히나뭐라고 해야 되지…. 연극계에서 가장 주가 됐던 건 000 연출가 일로 선배들이 큰 추행의 사실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면서 '얘기해도 되는구나!'라는 게학생들에게 일단 안심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연기과 학생들 중에서도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올리고. (사례 7,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제가 지금 22살인데, 저도 이런 데에 눈이 뜨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000 출신인데, 00예고를 나왔는데 거기도 전교생 기숙사인데 여자 성비가 2:1이에요. 남자가 없고 한 반에 25명 중에 남자가 5명인데도 엄청 그런 게 많았어요. 남자 기숙사에서 여자들을 '보석과 돌'로 비유해서 얘기했다든지, 가슴 얘길 하면서 '걔는 1학년 신입생인데 가슴이 얼마나 큰지'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걔네 미쳤다, 왜 그래?' 정도로만 끝냈지, 뭔가 조치를 안 취했어요, 제 친구들 모두. 대학교 와서 대자보가 붙은 걸 보니까 '뭔가 공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구나], 굳이 고소나 선생님께 말하는 거 아니더라도' 왜냐면 선생님께 말해도 안 될 걸 아니까 그때도 저희가 안 했던 거지. (사례 8, 대학생)

대자보가 일단은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에타'¹²⁸⁾에서 저희끼리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학교 구성원 밖에 열람이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나무 숲이 굉장히 활발하게 미투운동의 주축이 됐던 이유가 학교 구성원들이 그곳에 글을 쓸 수 있는데 모두가 열람 가능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학교 대나무 숲은 죽었어요. 관리자가 튀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나무 숲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자보로만 익명성으로만 게시가 가능한 게 대자보. 대자보와 대나무 숲이 기능은 비슷한데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차이죠. (사례 9, 대학생)

대자보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닥다닥 붙여놔요. 폰트도 강렬하게 하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활용도 잘하면서. 물론 커뮤니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건 대자보다 보니까. (사례 8, 대학생)

¹²⁸⁾ 학생들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이란 커뮤니티의 줄임말.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49

대자보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소통 창구로 밖에 기능하지 못하여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대자보가 되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환기하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사방에 다 붙어 있어요. [학교에 오는] 누구든지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역할은 좀 힘든 거 같긴 해요.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 있는 사람만 있지, 아닌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고 제목만 읽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의 소통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중략]. (사례 10, 대학생)

대자보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인 게 뭐냐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자보가 아니면.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자보 밖에 묘수가 떠오르지 않고, 그게 진짜 하나의 방법이 돼 버리니까 대자보가 많이 붙잖아요. 많이 붙으면 '또 붙었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사례 8, 대학생)

2. 학생자치단체를 통한 대응

가. 비상대책위 등 학생 조력인의 등장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 당국이나 해당 학과 교수들의 소극적이고 미진한 대응에 반발하여 학생들이 관련 사건을 이슈화하고 피해자를 대리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같 은 현상은 학과 교수나 대학 당국이 학생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슈화 초기단계에는 진상조사가 성고충상담기구가 아니라 학생자치단체나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학생 들이 공동체 차워에서 연대하여 대응한 결과이다. 공식 학생기구인 총학생회나



150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학생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건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계기는 동료 학생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감, 가해 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정의감, 학습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부채의식'과 '사명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총장 담화문이 나오고 실제 진상 조사가 있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었다고 했 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친 거죠. 총장 담화문이 나오고 학교가 뭔 가 행동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000대의 경우에는 00대다 보니 까 다른 타 대학과 달리 학생회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예 창작과 학생회도 실제로 피 해 학우와 계속 연대를 하고 계셨고, 총학생회가 이것에 대한 전담팀을 만 들어서 대책위를 꾸리자고 했었고, 그때 저도 동의를 해서 참여했었어요. [제 직위는] 0000대학교 000교수 성폭력 비상 대책 위원회의 공동의장. [중 략] 처음에 총학생회에서 대책위를 꾸려서 모집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리지 않았을 때부터, 저는 이런 대책위가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총학생 회에 문의했더니 안 그래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장을 뽑 는다는 게 효율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함도 있지만 위계질서가 세워지 는 걸까 봐 조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동으로 저희가 위원장이 아니라 의 장을 내세운 건 이 회의를 이끌어 가는 게 당시 총학생회가 계속 맡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내에서 그걸 해야 했어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 학과 교수님이 네 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가해 교수고 [나머지] 세 분을 저희가 다 소집을 해서 조교님이랑 같이 모아서 '이런 사실이 있는 걸 알고 있냐,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의 입장을 내시든가 하셔라'라고 해서 13일 새벽에 임시 비대위가 뭉치고 저희가 14일 날, 바로 교수 입장문을 받아서 학과 전체에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공지를 올리고 저희는 14일 오후에 비대위를 창단하게 되거든요. 각 학번, 그 학과에 남아 있던 최고학번 선배, 그때 11학번 선배였는데, 11학번 선배부터 그 당시 신입생인 18학번을 제외하고 17학번까지 매 학번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그 학번 내에서 지원자를 받고 그 지원자는 학과 학번 단톡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람은 들어오게 해서 학과의 정체성을 띠는, 학과를 대표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겠다고 해서 비대위가 출발하게 되고 15일 날 바로 저희 1차 성명문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비대위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약간 부채감이 컸던 거 같아요. 저는 저희 학년에서 재수생이라서 언닌데, 동기들 중에 피해 학생 있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저에겐 그분이 지도교수였어요, 가해 교수가. 그래서 술자리를 가도 남자애들 양옆에 앉히고저는 다른 테이블 앉아 버리니까 '내가 방관자이자,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생각을 하면서 조금 시작한 것 있는 것도 같고, 동기들이 다 동생들인데 동생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던 거 같고. 그런 의미도 컸던거 같더라고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피해 학생한테 비대위 하라고 말 못 하니까 '내가 언닌데 내가 할게. 내가 해도 괜찮겠니?' 이렇게 해서 학과 학번에서는 오케이를 받아서 활동했는데…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는 방송영상과 성평등 위원회 소속이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동기가 '나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참다가 참다가 못참겠다, 나 이거 신고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휴학생 신분이니 학교에 잘 못간다, 그러니 네가 대리인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성폭력 상담소 내부 규정에도 '당사자가 자신을 노출하기 어렵거나지속적인 방문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대신 활동을해줄 수 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그럼 내가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해서 수행하게 된 거예요. (사례 2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나. 비상대책위의 초기 대응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조직된 비상 대책위원회는 SNS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당사자들이 진술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대학 당국에 사건에 대해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대학 내에서도 미투 공론화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성희롱·성폭력 외에 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신고 접수도 이루어진다.

처음에 문예창작과 전공 학생분들도 SNS를 통해서 공론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피해 학우분이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당했던 피해 사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학내 커뮤니티에 공유하셨어요. 학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재학생들, 졸업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한 사람만 인증을 받아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공론화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페이스북으로 저희 학과를 졸업한 선배께서 피해 내용을 폭로했고, 그러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그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신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나왔고, 일단 진술을 한 사람만 20명 정도 나왔고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2018년 0월 0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학원생 한 분께서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 글을 본인의 실명 글을 업로드 하셨어요... 저희 1차 성명문에 보면 '000 교수님 메뉴얼이 있었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저 교수님이 술을 먹으면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진다든가 추행을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걸 공론화해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전까지 없었는데 그날 어떤 분께서 피해 사실을 업로드하셨고, 대학원이랑 저희 대학 학부랑 교류가 별로 없는 상태여서 학부생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이 0월 00일 정도 되니까 학부생들 중에 일부가 그 글이 업로드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몇 여학생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자신의 실명을 걸고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었고, 저 교수는 추행이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이틀 사이에 약 8-10건 정도 [사례가 올라왔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1차 성명문에 보면 당시 페이스북에 미리 올라왔던 사례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 놨었는데,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분과 연락을 맡은 [비대위 구성원들 중] 한 분께서 그 피해자들 창구를 열어서 그분께 진술서를 다받았고 그 진술서를 익명으로 전환을 해서 공유를 해서 정확한 날짜라든지, 이름을 제외로 하고 저희 비대위에 공유했고, 그렇게 익명으로 변경된 상태의 진술서가 학교 조사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걸고 있어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여러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 교수가 피신고인이고 신고인들은 학생들인데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만 14건이고 서명은 많은 분들이 지지 서명을 해줬어요. 공식적인 사건이 13, 14건 정도 돼요. 성추행도 있고, 성희롱이 제일 많았고, 신체 접촉 성추행은 소수였지만 있었고, 수업에서 차별적 발언도 있었고. 직접적인 추행은 적어요. 대자보에 붙은 내용으로는 수업 시간에 너무 당연하게 남자 학우들이 하는 일과 여자 학우들이하는 일을 나눠서 시키거나, 이를테면 저희가 촬영과니까 남학우들한테는 촬영 장비 옮기고 촬영을 직접 하라는 실제적인 업무 수행을 시켰다면, 여학우는 반대로 모델로 세우거나 연출을 하라고 하거나 '더 섬세하니까' 이런 말들도 하고, '힘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그런 성차별적 발언들이 컸어요. 그래서 여학우들이 촬영 전공을 포기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게 많았어요.



모델 섰을 때, 얼굴 평가를 하기도 하고 '너 내 스타일'이라든지 '너 예쁘다'라는 칭찬을 감안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술자리에서 술 따르라는 것도 여자한테만 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를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친한 뉘앙스로. '술 따라'이렇게 시킨게 아니라 '술 좀 따라봐'되게 친밀하게. 그래서 신고를 항상 머뭇거렸고.이런 거로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서야 공론화가 돼서 신고 접수가 됐고…[중략]. (사례 2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은 '성명문' 발표나 기사를 통한 여론전을 활용하여 학교 당국이 해당 사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였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이슈화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대학 당국도 언론에 관련 기사가 실리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한다. 이들 학생들은 교내외 공식적·비공시적 매체를 활용한 이슈화와 여론전을 펼치며 학교 당국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기를 요구한다.

대자보는 아니고 저희가 성명문을 발표했어요. 기사를 내고, 학교 공지 톡에 업로드하고 저희 학교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들어있는 페이스북 그룹에 업로드를 해서 접할 수 있게 처음에 진행했어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처음에는 저희가 성명서나 입장문 발표를 했었죠. 포스트잇 공동행동도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그것도 시작하고 입장문 통해서 총장 담화문 발표 이후에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당시가 작년 3월이라 각 대학마다 미투 고발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각 연대체가 같이 함께 하는 기자회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었죠.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진술서가 20건 이상 나온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학내외로 기사를 낸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학교를 압박하려 했거든요. 시위하는 방법보다는 계속 차분하게 화를 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자극할 수 있는 게 기사를 내는 방법이어서 그래도 덩치가 큰 언론사에 기고하기도 하고, 기고 제목도 셌었어요. '000 0000'가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저희는 00대, 000 00000'129 이렇게 기사를 내버리면서 그런 방식으로 학교를 압박

¹²⁹⁾ 본래 캐치프레이즈가 해당 학교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함축시킨 문구 였다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진 학교의 암울한 이미지를 반영해 변형 시킨 캐치프레이즈를 기사 제목으로 하였다.



15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걸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례 3, 대학생 조력자)

학교의 힘을 안 빌리면 비밀리에 진행해야 되요. 공론화가 안 되고. [성평등 상담소에] 접수하는 순간 '비밀 유지하겠다, 이 사건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비밀유지서약을 쓰는데 저희끼리 해결하게 되면 무조건 조용히 해야 하고 결과를 알려서도 안 돼요. [중략] 그래서 [성평등상담소에] 신고하기 직전에 저희가 다 붙이고 신고했어요. 왜냐면 피해자분이 그걸 원했거든요. 공론화를 더 원했거든요. '나는 징계보다 이것 때문에 지지부진해도 되는데 학생들에게 다 알려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셔서… (사례 2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직접적으로 학교를 마주치게 된 건, 학교가 경과보고서라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라고 붙인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피해 학우가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걸 저희가 확인했었을 때, 피해 학우분이 상담을 안 받은 지 꽤된 때였고, 적극적으로 학교가 뭔가 도움을 준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 피해 학우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과 보고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 느껴서 직접 그 위에 수정을 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어요. 빨간펜으로 수정을 하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가 [대자보를 통해] 입장문 계속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그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려고 했던 게 그 학생처장과의 면담이었는데 그거 결렬된 다음에 학생[처]팀장한테 토스 돼서 팀장하고 면담했었죠. '그때 결정문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할 예정이냐, 왜 징계는 계속 안 나오냐'이런 얘길했었죠.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다. 비상대책위의 대리인 역할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측에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한 다. 가해자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학 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교내에서의 사건 처리에서 피해학생을 대변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과정에도 신뢰관계자로 동반하여 피해자를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55

동반한다. 외부 성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 등 기관 소개를 통해 법률서 비스 이용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결해 준다. 피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 운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건 처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희는 처벌과 사과.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파면을 원했고, 그 20명의 진술서가 마지막에는 '파면을 원한다'였는데, 사실 파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가 잘 못 한 걸 알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주길 바랬는데, 그건 끝까지 되지 않았고, 파면도 되지 않았고, 해임으로 마무리됐거든요. (사례 3, 대학생 조력자)

저희가 초반부터 되게 많이 요구했던 건 '교수가 사과문을 쓰든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사과문을 올리든 그걸 무조건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워 달라, 학교에서 이만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일어나지 않을 것임에 대한 약속을 팝업창을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것은 힘들다, 결과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교수의 처벌을 올릴수가 없다'... 학교 홈페이지에 띄운다는 건 굳이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고 학교에서 그런 걸을 려준다는 거 자체가 피해 받은 학생들이 '아, 내가 신고를 해도 저런 결과가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해줄 수 있는 창구로서 '학교가 공지를 해줬으면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를 연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해서 경찰 조사 과정 진행 듣고 다른 분은 변호사분 만나서 얘기 들어서 피해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저희가 제일 겁냈던 건 저희의 발언이 피해자분에게 어떤 압박,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결과에 영향이 좋답니다'라고 이야길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고를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중립적인 발언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오늘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사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검찰로 넘어가면 최대 2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검찰로 과정이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이건 개별적으로 다룰 수도 있어서 저희는 큰 틀만 물어보고 왔습니다, 무슨 무슨 경찰서에 무슨 무슨 상담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혹시 궁금하시면 여청계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실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는 어디에 있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 상담소에 어느 분께서 미투를 지원하는 변호사협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께 연락하면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6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피해자분들 중 관심 있는 분은 꼭 연락하셔서 저희 통해서 묻지 말고 저희는 전달자고 진술서를 쓰지 않아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은 진술서 토대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직접 방문해 보셔야 한다.'이런 식으로 전달을 거의 드렸었어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동료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당국의 무능력한 대처로 인해 순수한 의도를 갖고 구성된 학생단체임에도 조직의 제도적 근거를 논하며 이들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무기력감을 느끼기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 조치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사건 종료후 비대위 활동 이력으로 인한 꼬리표로 학업이나 커리어 진출에 있어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한다.

[학칙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에] 학생처장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공식 면담자리 잡고 찾아갔을 때, '비대위가 상설기구냐 임의 기구냐!' 소리치면서 쫓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학교하고 얘기 안 해요. 학교[당국]는 비대위를 어떤연대체나 공식 기구로 인정을 안 해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피해 학우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대학 측]의 경과 보고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 느껴서 직접 그 위에 수정을 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어요.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하는. 그걸 하다가 한 비대위원 분이 교직원한테 붙잡힌 거예요. 학과 건물들에 붙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고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분이 교직원한테 붙잡힌 거예요. 교직원이 업무 방해라는 식으로 그분의 신상정보를 알리려했었고, 학교 본부로 데려가려고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는 일부러 공동의장으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이 사람은 신상정보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 교수에게 신상정보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 교수에게 신상정보가 밝혀지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학교가 어떻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는데, 그게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때 저희는 총학생회가 연대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총학생회장 분이 전화해서 '이 사람 신원 확인을 할수 있으니 보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한 30~40분 정도 그렇게 대치 과정이 있은 후에 사건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규단하는 입장문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57

냈었죠. 그때 [그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이 안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학생 정보 모를 것 같냐'는 협박성 발언도 들었고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어떻게 좌절하는가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일단 권력이 교수와 그 기관, 학교로 나누어져 있고 학생이 전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대위를 꾸려] 교수진과 회의를 했을 때, 그 교수는 '나의 마음은 너를 돕고 싶은데, 학교에서 허락해줘야 도와줄 수 있어. 학교와 얘기해보고 알려줄게'라는 방식으로 대화가 계속 흘러갔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교수 말고 이 학교에 근무하는... 누구와대화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제가 휴학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저를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주는 무력감과 고립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어쨌든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아, 나 작년에 뭐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2학기에 영화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도 교수님 두 분이 영화를 하시는데, 조심스러운 한 분, 가해하신 분 한 분인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교수님하고 데면데면할 수 없으니까 술 먹으면서웃으며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선배들 보면 알거든요. '저 선배가 우리한테 저런말 했었는데, 저 선배 사실 피해 학생이 뭐 바라고 신고했다고 얘기한 선밴데' 이걸 다 아니까 학교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지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괴리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제가 아는 분이 다른 학교에서 그분도 예술계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시는 분인데 비대위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힘들겠다' 하면서 자기는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 받았다고 얘기 해주시는데, 그분도 전시쪽에 일을 계속하시다가 지금은 전시쪽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랑 상의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무력해 진 거죠. '저분이 내가 알기론 되게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전시쪽에서 나오셨구나, 나는 뭐먹고 살지? 아직 대학도 2년 남았는데 졸업하면 어느 업계로 갈 수 있을까, 어쨌든 다 아는 사인데, 대학 졸업한 선배들도 내가 이런 활동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부르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현장에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문제 제기자가 될 확률이 다분한 나를 부르지 않을 확률이 높을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교수가 파면이 돼서 안전하게 졸업을 하더라도 현장 가면 또 만나요. 어찌 됐 든 만나고, 작년, 재작년에 새로 들어온 교수님도 이 피신고인 교수가 데려온



교수거든요. 자기가 현장에서 만나서 아는 감독이라며 데리고 온 교수예요. 보조 강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데리고 온 경우가 많고, 저희가 현 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촬영감독이 현장에서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아는 분들도 많고, 그분이 개인적인 영상 작업을 할 때 남학 우를 데리고 가서 크루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 다 포기하고 [피해자 대리인으로 그 교수를] 신고한 거예요. 촬영 안 간다고 하 고. 어찌 됐든 볼 수 있거든요. (사례 2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3.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사건 처리

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미흡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및 학교 측의 관련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습지원, 심리상담 지원이 미흡하고 이를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려는 노력 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가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치 않아피해자가 2차가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의 엄격한 분리 조치 부재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는 물론 주변선배들로부터 2차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대학 생활 영위가 어렵게 되는 것이그 한 예이다. 교육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심신약화로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해 학업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피해자 학습권에 관한 보호조치가 미비할 뿐더러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상담치료나 관련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도 미흡해 2차가해는 계속 이어진다.

올해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3년 위] 남자 선배가 사귀던 여자 후배와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10대를 돌려가면서 전화해서 새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문자 메세지도



하루에 한 시간에 30통씩 보내고. 학교 안에서도 건물에서 마주칠까 봐 여학생은 벌벌 떨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선배가 자기 동기들한테는 '나는다시 만나고 싶어서 좀 애절하게 매달렸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거를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떨어지고 인권센터는 미미하게 대처했어요. 그런 식의 신고를 하니까 '예민한 애다' 이런 식으로 선배들한테 소문이 다 나서 그 학생이 예술대학 건물에 들어오면 눈초리를 받는 거예요.... 이 데이트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신고하고 한 한 달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았어요. 계속 연락을 취해보는데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정신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고, 해 봤자 진술서 확보를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가해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기 위해서 학교에 불러 다닌다'는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피해자에게 다시 2차가해를 시작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인권센터가] '이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했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사례 11, 대학생)

저희가 공간 분리 얘기도 계속했었는데 교수님이 짐 정리하러 오실 때도 딱히 공지를 안 하고 오셔서 마주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중략] 저희가 원했던 건 교수님이 오기 전에 공지해서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오셔서 짐 빼는 과정에서는 어떤 제지가 없었던 거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었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우분이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셨는데, 다시 휴학을 하셨어요. 다시 복학을 하셔서 수업을 계속 들으려 하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계속 참여를 못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공결이라든가, 학교가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어요. 계속 학생 개인이 어떤 병결을 쓰던가, 개인이 계속 이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한 수업 교수가 피해학우의 상황을 아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병결이나 어떤 공결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피해 학우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셨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문의를 했을 때도 학교도 도움을 주는 게 없었고. 교수의 재량이고. 학교 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효력을 얻지 못한다면 외부 전문 기관이라도 연결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가 한 번도 고려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사례 1, 대학생 조력자)



나. 외부기관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학교당국의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이 미흡한 것을 파악하면서 피해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성희롱 인정을 받고 대학 측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 가해자의 징계와 예방교육 실시 권고와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 받는다. 피해 학생을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성폭력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셨죠. [위원회] 결정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로 공유할 때, 전체를 다 공유하진 않고 판결주문으로 나온 것만 공유를 해요. '검찰 총장한테 피진정인의 아래 인정 사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 다음에는 '0000대학교 총장에게 경고를하는데, 일단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 그리고 대학 내 성희롱 등 예방 및 구제 조치를 위한 체제 정비하고 이를 대학 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있도록 공지할 것,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가해 교수로부터] 결국 사과는 못 받았지만, 그 뒤에는 사과를 안 하니까 저희도 더 열이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고, 저는 법전원 교수가 조사 기간 중에 편파적인 이야길 하고 2차가해가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걸로 또 진정을 따로 넣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개인이 쓸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 한도가 있는데, 그게 가해 교수 명예훼손 걸었던 거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시인이 이분[피해자가] 거짓 미투한 거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진행하신게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그걸 다 쓰셨어요.. 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작년부터 지원을 해 주셨고… 이 변호사분을 선임하신 건 법률 자문 같은 경우 여성인권진흥원이고 다른 데에서 법률 자문 됐었을 때 연결을 받은 변호사분이거든요.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다. 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대학 성고충상담기구에 대한 면접참여자들의 경험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전반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61

상담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이들 이 얻는 것 좌절과 실망이다.

가해자가 교수인 사건에 대해 무대응하기도 하며, 사건으로 접수되어도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신고인에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신고 사실을 교수에게 공지하거나 세심하지 못한 태도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가해 교수에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한다. 센터 책임자가가해자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상담원이 피신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신고 취하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보다 비상대책위의 활동이 외부로 확산될까봐 우려하기만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을 상담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이들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상담소나 센터의 홍보가 미흡하여 인지도가 낮고,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 정도도 낮다고 한다. 신고인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한다. 상담원이 열의를 갖고 일하는 경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고충상담기구가 형식적으로 부실

전반적으로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고충상담기구가 형식적으로 부실 하게 운영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도 낮다고 지적한다.

정식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담기구가 있긴 해요. 그곳에 피해 학생이 실제로 여러 차례 상담을 가지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담사분만의 잘못이라고 볼 순 없는데, '내가 어떤 권한이나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해 당사자는 본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던 거죠.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학교 상담센터에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전화 끊는다거나, 혹은 어떤 상담 시간에 교수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고 쪽지를 제출했는데, 그 쪽지가 무시당 했다거나.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인권센터랑은 저희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던 게, 저희 말고 다른 학과에서 성폭력 상담을 인권센터에다 했었는데 그 신고 사실을 가해 교수한테 알렸 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권센터에 아예 저희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인권센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투 폭로한 그



학과들이 인권센터장을 바꾸든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조사 위원 하는 중간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이야기하고 그뒤로 인권센터에서 [피해 현황]전수조사도 하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조사위의] 통지일 훨씬 이전에 피해자분이 신고하고 나서 곧바로 교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교수가 자기 연구 소장직을 내려놓고 연구실을 빼고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죽음으로 갚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이 '도대체 어떻게 학교에서 일을 했길래 그 교수가 내가 신고한 사실을 벌써 알고 나한테 연락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인권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수가 조사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연구 소장직을 내어놓아 버리고, 올바른 처벌로 가기 전에 이미 직책이사라진 거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인권센터에서 [가해 교수의 입장에 서서 사과와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그런 가해 발언을 했던 것도 그렇고, 문제 발언을 하신 분께서 지금 인권센터장을 하고 계신 것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 특히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자체를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인권센터의 모든 연락 방식이 통보형이었고, 저희가 연락하지 않으면 잘 가르쳐주지 않는 형식으로 이뤄져서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었거든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성폭력 상담소에 저희가 비대위로서 참여해서 상담하는데 성폭력 상담소에 도 참여했던, 그리고 합의를 계속 종용하셨던 교수님께서 지금 인권센터장이거든요. [중략] 저희랑 첫 대면 해서 학과에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성폭력 상담소에서 대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피해자] 성명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길 했더니 그 교수님이 마치고 저희를 따로 부르셔서 '여러분이 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톤으로 '여러분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길 하는 게 피해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걸 알고 있냐?'고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어떤 해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는 봐서 많이 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퍼포먼스를 해도 그게 피해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는 게 크다는 걸 알고 있냐, 활동하는 거 되게 위험하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명을 받는다든지, 이거를 외부에 알리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어떤 외부적



활동을 방지하는 말투로 말한 거죠. '자기는 피해자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는 이걸 오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성폭력 상담센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저희도 초반에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가 처음에 인권센터를 믿지 못했던 이유도 아는 분께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셔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성평등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학생이 신고하면 이 남학생이 졸업을 못 하고 이 학생의 인생을 생각해줘야…' 이런 식으로 얘길 하면서 신고를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경하게 '나는 신고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저 [가해]학생의 인생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냐?'라는 2차가해를 심하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의 친구였어서 그 이야길 들어서 초반부터 인권센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피해자분들이여러 명이었던 거 같아서 계속해서 인권센터를 변혁하기를 요구했었던 거같아요.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제가 졸업할 때 알게 된 건데, 저희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 담당자분이 1~2 년 전만 해도 그분이 학생팀에 계셨거든요. 학생팀에서 사무처리 하던 분이 었는데 TO가 바뀌면서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분이 상담을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내가 이분한테 상담할까? 이 기관이잘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학교에서는 이 기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게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팀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담당자가 배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일을 하던 사람이 처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관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례 15, 대학생 졸업자)

인권센터가 생긴 지, 이번 학기에 생겼을 거고….[인권센터에서의 일하시는] 분들이 심포지엄도 하시고 부스도 여셨는데 정말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인권센터 이전에 성평등 센터가 있을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공석이고. 원래 세 분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한 분 남아 계시고, 어떤 때는 두 분남아 계시고. 아예 없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일이 쏟아진 거죠, 그분들도 0000연구소 하셨던 소장님에게 듣기로는 학교 일해야 하는 그것도 많고, 예산 없고. 그리고 000 선생님도 왜 그 연구소 소장님인지도 모르겠고. 그냥의식 있는 여교수니까? 0000연구소 산하에 성평등 상담실이 있는 건데 소장님이 000과 교수님이에요. 일단 [성평등 센터가] 알려지지 않았고, 몰랐고, 이용해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가 진짜 홍보를 안 해요. (사례 6, 대학원생, 피해자 조력인)



16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제가 선배들하고 얘기하기로는 저희 학교 인권센터가 워낙 손이 모자라고 담당 직원 분들 자체가 너무 바쁘시고 적어서 되게 버거워하시는데 인력을 학교에서 늘릴 생각은 없는 거 같고. [중략] [인권센터 분들이] 되게 바쁘시다 들었어요. 그런 사건 처리 자체도 학생들이 모인 TF에서도 담당하는데 예산도 안 떨어지고 예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권센터에서도 학생신고를 받고 TF에서도 학생 신고를 받고 같이 일을 하는 구조였는데 예산이 안 떨어져서 각 부서에 구걸하면서 다니는데… (중략). (사례 10, 대학생)

[인권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도 다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요. [중략] 학과에 불이익이 많거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학생들이 들고일어나기는 잘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센터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게 믿지 않는다는 게 크거든요. '잘 못 하면 내 정보가 새어 나갈 수도 있고, 일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까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 어려운 대답인데 피해자가 다시 또 피해를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소 같은 데를 이용해도 일 처리가 너무 늦거나,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런 거 같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도 직간점적으로 보고 듣고 했는데…. (사례 12, 대학생)

저희 학교는 인권센터도 있고 성폭력 상담소도 있는데 이게 진짜 허울뿐 인거 같아요. 학교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내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여기에 전화하세요' 정도 밖에 메뉴얼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학교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민사나 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전화해서 끝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화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그 이후의 상황들도 잘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아는 건데, 이걸 과연학교 학생들이 다 알까도 의문이고, 홍보하는 정도가 화장실 벽면에 조그마한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피해자가 있으면 여기에 전화를 해보세요'이 정도로만 홍보하니까. (사례 25, 대학생)

4.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 보고서나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위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을 판단한다.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65

이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징계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조사위는 사건 공론화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성의 부족을 드러낸다. 중립적이며 공정한 태도로 조사위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를 중용하기도 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판별하는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조사위원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로 학생들은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기구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한 배경이라고이해되다.

1차 조사위에서 학교 내 교육부 총장님께서 처음엔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저희 학과 소식이 디스패치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되게 댓글이 많이 달린게 있었어요. 진술서를 제출하고 무슨 얘길 해도 이런 태도로 유지하고계시던 분이 저희가 디스패치 댓글을 딱 보여주니까 바로 고쳐 앉으시면서안경을 쓰고 기사 반응을 보시더라고요. [중략] 부산대에 재학 중인 친구를페이스북 댓글로 태그를 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댓글들을 주니까 그제야 '아,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학교 측에서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진술서 양이라던지 이런 걸 떠나서.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제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만났는데, 5차 위원회 끝나고였는데, 그 조사 위원단들이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따지면서 '이건 왜 이렇게된 거냐?'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 조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민형사 넘어가도 기소유예 받으면 사과도 못 받고 처벌도 못 받고 완전 어중떠중인데 그냥 안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편파적이었어요. 거기서 화가 나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사람도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 좀 그렇지 않겠냐?'고. 좀 배려하라는 교수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더 의아했어요. 거기서부터 화가 나서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경찰 조사 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게 맞네. 지금 가해자 편들고 있네!' 이런 생각 확 들었어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그 당시 조사 위원회 측에서도 계속 그 '가해 교수가 너무 뉘우치고 있고, 너무 잘 못 했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뉘우친 교수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길 하 는 거예요. 그것도 조사 위원회가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피해자들한테 어떤 조치도, 어떤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조사 위원단만나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걸 피해자들이할 수 있는 거지 조사 위원단들이 피해자들한테 와서 '그 사람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조사 위원단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이 뭔데 뉘우치고 말고 그런 걸 판단을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비대위 측에도 그 가해 교수가 반성하고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컨택을 했을 거 아녜요. 그 5차라는 기간 동안.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뉘우치고 있다고 이야길 하니까 '좀 봐 달라'는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를 느꼈던 발언은 '합의를 하자.'는 말을 조사위 분이하신 거였어요. [중략] 조사위가 진행되고 징계위가 조사되는 이유는 징계를 내리기 위함이어야 되는데 '사과를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냐, 마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조사위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과하는 마음을 느꼈는데 여러분이 자꾸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하면 사과도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때 되게 많이 화가 났었던 거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5. 징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에 관한 사건 검토가 조사위원회에서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는 징계 양정에 따라 징계 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 1의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사위에서 조사와 징계를 모두 다루려고 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해당 사건이 재판 중인데 종료될 때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학교측의 입장으로 교내 진상조사가 중단되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교내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000 교수에 대한] 징계도 안 했어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윤리위원회, 진 상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윤리위원회 열렸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위원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안 하고,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징계도 논의하는 거로 얘기가 된 거죠. [중략] 학보 사 기사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의 권한 까지 위임을 받아서 여기 안에서 조사도 하고 징계도 다 결정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학교는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징계 위원회는 안 열려 있죠. 진상조사위원회까지 했었을 때, 5차까지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작년부터 계속. 학교가 말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에 [000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재판 중이라]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된 다고 했었고, 이제 [가해 교수가] 불구속 기소가 되니까 그러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바꿔서 작년 9월 이후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중단된 상태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할 때, 피해 학우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피해 학우한테 말하지도 않고, 언론이 취재를 해서 그것에 대해 서 비대위의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를 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진상조사위원 회가 중단됐다는 걸. 그래서 알게 됐고, 제가 피해학생한테 전달을 해서 피 해 학우가 인지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학교에 다시 연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어요. 거기에 돌아온 답변이 '진상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를 해서 이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상반돼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쭉 멈춰 있는 거죠. (사례 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피해자가 요구한 것 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사례 3의 경우 수십 년간 여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행된 성희롱·성추행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해임 처분으로 재임용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례 7은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았지만 가해자가 부당징계 청구소송에 서 승소하고 학교로 복귀하여 교내 고충처리 절차 전반에 대해 회의를 느끼 게 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해임을 줬다'라는 건, 5년[3년] 후에 교육자로 재임용될 수 있단소리고 그건 학교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준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년퇴임이 4~5년 정도 남은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교수로 재직을 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를 학교에서 열어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은. 그 말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학교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정직을 당해서 징계를 받았던 교수님들이 돌아오셨고, 000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승소하셨어요. 성추행·성희롱이었는데, '나의 징계는 부당하다'라는 소송을 거시고 그분이 승소하고 학교가 패소해서 지금 포상 추천자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학생들이 다시 느끼는 건 '해봤자, 변하는 게 없고'. (사례 7,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6. 학생 요구에 대한 대학 당국의 대응

미투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문화예술계 학생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폭로 와 관련 대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 당국도 이와 관련된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학교 출입 금지와 수업 배제, 즉각적 해임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의 분리, 예방 차원에서 신입생 대상 성인지 교과의 의무적 수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미투 신고란을 설치하여 대학 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하여 교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침해 사안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인권센터를 수립하거나 재구조화하고 있다.

초기 [학교 설립] 멤버인 분이 문제가 있어서 센터에 고발됐는데 그분만 몰라요. 고발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수업 배제가 되고 학교에 출입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도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그런 게 됐었어요. 학생들과 접촉하지 말고, 바로 수업 배제돼서 강사로 대체됐어요. 이 제도는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됐어요. [중략] 확실히 2016년, 18년 지나면서 제도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긴 해요. 그 이전에는 심했던 거 같아요. (사례 17, 대학생)

[성평등상담소에 사건] 접수하기 전에 총장한테 알리는 신문고 같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못 참는다. 00학번들 보호하게 빨리 이 교수 임시조치를 해라, 학교 측에서 중립을 지킬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려고 대비하고 있으니 빨리 임시조치와 보호를 해라'라고 해서 그다음날 바로 00장에서 해임되고 임시 00장으로 연임하고 대기 발령으로 본부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례 2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다행인 건 학교에서 미투 창구처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하단에 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산대가 문제를 자각하고 바뀌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사례 3,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000에서 시도하고 있는 성폭력 교과목 수업이 갖는 의미가 전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합산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술 대학이라고 한다면, 음악 콘텐츠 아니면 작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 요양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대학에서의 젠더 관련 수업이 공식적으로 채택, 진행되고 있는] 변화 자체가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전까지 학과 내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교육이 없었고, 작년에 두 차례 실시되었어요.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저희 학교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어요. 0000연구소에서 성평 등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같이 해 왔지만, 이런 문제들을 다 논의 하기에는 기구가 너무 작았어요. [학내 미투 사건이 2018년에 공론화 된] 이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인권 센터가 설립됐어요. 이 성평등상담소는 인권 센 터로 들어가서 별도의 기구로 분리가 되고 첫 케이스를 올해 맡게 됐어요. [중략] 인권 센터가 생기면서 연구소도 존폐 이유를 논하다가 학생들이 '학 교에서는 이제 인권센터 있는데 이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니? 우 리가 규모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굳이 만들어둬야 되니?'라고 해서 학생들 을 분노케 해요. 이 연구소는 이제 정말 연구 쪽으로. 여성 예술가뿐만 아니 라 본 연구의 범위를 키워서 소속사 문제까지 같이 가면 정말 연구 기관으 로 분리 정립을 하자고 해서 다행히 살아남게 됐고, 그것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성평등·성희롱·성폭력 에 가장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성 격차 해소라는 정 책, 제도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예술가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젠더 연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반 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정책 관련 얘기 를 하지만, 이것을 예술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례 7, 대학생, 피해 자 조력인)

[여러 성희롱·성추행 문제들이] 쌓여서 학교에서 인권센터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죠. 학생들은 바로 인권센터가 설립이 안 된다면 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가



170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작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예술계 특성상 교수들의 권력이 워낙 세다 보니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어서 일이 지지부진하다가 설립에 1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인권센터 설립 전까진] 성평등상담실만 있었어요. [중략] [이제는] 인권센터 내에 성평등상담소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위계 젠더폭력이 같이 묶이잖아요. 위계폭력이라든지 폭력, 물리적인 폭력은 인권센터로 들어가고, 여기서 젠더 문제는 성평등상담소로 넘어가게 돼요. 인권센터 내에 두 개가 있어서 성평등상담소가 젠더 폭력 담당을 하고, 그 성평등상담소에서 조사까지 거친 다음에 징계는 인권센터로 올라가서 징계위가 꾸리게 돼요. (사례 20,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성폭력 교과 과목이 신입생의 공통과정으로 생겼어요. [중략] 000은 아예 성평등 위원회가 생겨서 아카이빙에 대한 사례집을 다 만들었고, 000도 마찬가지로 000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인권위원회까지 나왔어요. 이 모든 게 0000과 000을 중심으로 나왔어요. 000이 이제 조금 시작해서 성평등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고요. 00, 전통예술 0000은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사례 7,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7. 대학 당국과 학과에 바라는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과 관련하여 대학 당국이나 학과에 바라는 점은 성인지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인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교과목이 필수 교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현장 수업이나 실기 가 주가 되는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성인지 교육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초과정 외에 심화 과정을 통해 성인지 교육이 예방교육으로 실효성을 띨 수 있길 바란다.

교육자도 예방교육 강화도 건의되었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자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건 처리 시 대학 당국 과 학과의 적극적 개입으로 현장 협동 작업을 하는 학생들 간 관계에 직접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필요하다고 한다. 예방 차원에서 작품 기획·촬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학과나 대학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다. 교수와 학생 간 연애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구체적 규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 도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걱정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에서 진술서를 썼고 어떤 마음으로 조사 위원회의결과를 기다리는지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서 피해자들이 마음이 힘들때는 어떤 데랑 연결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진술서를 쓴 모든 학생들이 좀편하게 할 수 있게, 두렵지 않게. [중략] 전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못 했어서 학생을 보호해주고 마음이 힘들때는 지원도 해주고…. (사례 2,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아직 저희 과는 전필로 자리 잡진 못해서. 다음 학기에 들어온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성평등 교육 자체는 필수고 체크를 해야 출석이 인정되는 걸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확실히 절대평가고수업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다들 현장 나간다며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출석이 크게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고, 전필로 해 버리는 게 강제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수업을 강제로 한다 해서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술학교라고 해서 심한 것도 물론 있지만, 예술학교에서 심한 이유는 결국 현장에서 마초 문화가 계속 내려와서라고 생각해요. 영화 문화 안 바뀌고, 영화판 안 바뀌고. (사례 21,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저는 명확한 가이드 가인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건 윤리적인 차원으로 개인 판단에 의존하는 수준이어서 가이드 가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민망한데, '학생과 연애하지 마세요, 면담 시에는 문을 여세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한 것들에 대한, 뉘앙스에 대한, 언어적인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가 있었으면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리적인 것으로 암암리에 당연히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이고 제시되는 건 없어요. (사례 13, 대학원생 졸업자)

미투 이후에는 교수들이 좀 조심해요. 저희는 작품하기 전에 피칭이라는 걸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스토리 라인 사전 발표할 때, 일부 여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런 부분은 좀 조심했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든가, 교수 차원의 논의가 있진 않아요. (사례 17, 대학생)



댄스 스포츠할 때, 파트너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동작을 하다 가슴을 스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동작하면서 했으니까 모른 척 묵인하는가, 왜냐면 파트너랑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간다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랬을 경우, 기준이 애매하니까. 정말 스칠 수도 있거든요. 스칠 때 상대방도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있을 때, 사과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 이렇게 할 때 제 가슴에 닿는데 조심해 달라'를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걸 가이드라인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상대에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사 1)

교수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항의할 수 있지 만,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은 공론화를 하더라도 징계 같 은 게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에 대한 학과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일이 제일 많 고, 학생들 사이에 돈이 크게 오가는 학과라서 기본적으로 한 작품 찍을 때 마다 개인들이 300~500[백만 원]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로 얽히 고, 그러다 보니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있어도 묵인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내 한 번의 발언으로 엎어버리게 된다는 부담감이 학생들에게 너무 크게 지워져요. 내가 이 발언을 하면이 500만 원이 사라지는 게 된다는 부담감. 그래서 교수님한테 개입을 요청해 도 '그건 내가 어떻게 못 해준다'는 게 커서.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 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출자만 돈을 내는 거예요. 감독 만 돈을 내고 나머지 스텝들은 참여 진으로 있는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 렸던 조연출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연출자가 '나 이 돈 도저히 못 날 리겠다, 이거 찍어야 된다' 이러니까 조연출이 '그런가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연출자가 찍어야 되서 돈을 날릴 수 없다고 하면 피해 사건이 있더라도 그 영화는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게 현상이거든요. (사례 11, 대학생)

학내의 분위기를 계속 조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강사들이 대부분인 이 과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이 벌어져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 자체에서 예방교육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모아서 교육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익명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교수에 대한 평가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사례 14, 대학원생)

부패의 대학 문화를 다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술 문화, 위계 문화부터다. 그런 게 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쓸데없이 남아있는 문화들이 다 없어진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우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례 15, 대학생 졸업자)

강의평가 [시스템은] 꾸준하게 올려봤자 담당 교수만 [강의평가 점수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중략] 그래서 이번에는 학과장 권한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많은 교수는. 원래는 당사자만 볼 수 있게 했었는데 하도 변하는 게 없고 하니까…. [중략] [학과장님 뿐 아니라] 학생들이 봐야 해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서 익명으로 강의 평가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인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어요. 적어도 학생들 간, 공유해서 이름 들을 사람은 듣고 아닌 사람은 말고. (사례 20, 대학생, 피해자 조력인)

8. 제도개선을 위해 바라는 바

가,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본 연구에 의하면 미투운동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학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고충상담기구의 자원부족과 비전문성으로 해당 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사후 관리 조치의 미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인지도 제고와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성희롱 고충상담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내 구성원들에게 기구의 역할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략] 성폭력 상담센터나 인권센터가 좀 믿음직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전혀 믿지를 못했거든요, 모두가. 아예 표면적으로 '성폭력 교육하겠다, 징계 확실히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피해자들이 어릴 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듬어주고 그런 게좀 더 중요해졌음 좋겠어요. (사례 2, 대학생 피해자/조력자)

문제가 터졌을 때, 확실하게 잘 잘못이 나오게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수나 어른들도 참여하기도 하지만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단체, 교섭단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확실히 문제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게 불쾌한데 이런 걸 신고해도 될까, 내가 혼자 예민한 걸까?'라는



17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 바로 제기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확실하게 내가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트위터하고 내친구들끼리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무섭게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인권센터나 성평등센터가 기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활성화하고 그들이 하는 힘을 학교 내에서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기능이 있다면 [좋겠어요]. (사례 16, 대학생 졸업자)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을 미리 방지하고 남녀 간 성인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 방교육이 적극성과 강제성을 띠고 교육자 및 교원,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한다. 이 같은 예방교육은 해당 교육이 지닌 한계점을 짚어주고, 미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가지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질의의 방식이 반영된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강사 대상으로의 아주 확실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예방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도,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능하지 못하는 인권센터에도 교육해야 되요. 왜냐면 저역시도 학교 내에 일어난 다른 성폭력 사건을 의뢰했다가 괜히 바가지만 맞은 거 같은 친구들의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아니면 성폭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육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례 19, 대학생)

지금이야말로 그러지 않고 강제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돼서 간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중략] 지원사업을 하려면 간담회를 꼭 들어야 했어요. 그 강사분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연을 하시고 인식이 바뀔 수 있게끔 말씀을 잘하셨어요. 예방교육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미투는 어떤 거였는지까지 얘기하시고 우리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해자들에게도 이렇게 대안을 세우면된다고 알려주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남자들이 인지하지 못 하는 성희롱, 성추행을 예시로 들면서 '이것들도 죄일까요?'라고 던지면 '아닌 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판례들을 보면 다 죄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례를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75

들어주셨어요. 그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강의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사례 24, 대학원생)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런 강의를 들으면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건데 주된 수업의 내용이 성폭행을 당하자마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만 갑자기 쫙쫙쫙 듣고 나니까, 피해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한 것만 논의가 되니까 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같이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 건데 이 사건 이후의 것들에 관해서만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조금 불편했던 거 같아요. (사례 5, 대학생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방교육, 주로 강의에서 배우는 건데 사례들을 언급할때 어떤 거는 비공개로 'XX'해서 하는데,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같은 강사의 같은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사진과 이름까지 노출하는 경우였는데, 제가만나고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평가서에다가 '앞에 있는 사례처럼 XX 표시 해주고 사진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라고 쓴 적이 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을 뭐로 잡고 있는 건지도 저는 좀 헷갈려요. [중략] 적어도 내가 그걸 봤으면 그걸 본 다음에 내 입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조금 사례를 더 필요한포인트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듣고만 있고 토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듣는 경우는 그건 좀 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학생들에게도 이 성폭력 교육이 중요하지만, 강사나 교수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당하는 사람들보다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옆에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얘를 건드릴까? 얘를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해도 되겠지?' 강사나 교수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사례 26, 대학생 졸업자)

자꾸 경각심을 갖게끔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분위기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을 동경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친밀해지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각별한 둘만의 시간, 관계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학생들이 많은데…. [중략] 저도 어렸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 동경이 있다 보면 선생님의 행동들을 조금 더 [용인하게 되는 거죠].



176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아예 모르는 남자가 만약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행동이 달랐을 텐데 우상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결국은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기관이 예중, 예고 외에 사설 기관에서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강사 1)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교 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대는 많이 강조하는데 적극적인 찬성은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영화를 예로 들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는 우리가 샤워도 꼼꼼히 해야 되고 콘돔도 준비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 고 나서. 모든 스킨쉽이 항상 세련되고 깔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 나 드라마에서는 로맨스가 세련되고 깔끔하다 보니까 말없이 좋은 음악 깔 리면서 만지는 걸 되게 로맨틱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찬성이 있 어야만 이 관계가 괜찮은 거라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친밀한 관계 데 갑자기 성적인 긴장이 생겨서 쟤를 만진다, 이랬을 때 원래 모르는 사람 이면 '뭐 하는 거예요!'라고 하겠지만 아는 사람이면 갑자기 정색하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만 된다 고 하면 쟤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괜찮은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작업 준비 하고 있는 건, 주섬주섬 하는 섹스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면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다음 코스로 넘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얘 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손잡아도 돼? 뽀뽀해도 돼?' 이러면서 이상한데 귀여운 남자로 소비를 하잖아요. 이걸 웃기다고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엄청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8, 대학생)

성희롱·성폭력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여타 예방교육과 차별화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야 한다고 한다. 시의적절한 사례 예시를 통해 수강자들의 감정을 헤치지 않고 해당 영역 내 고착화된 문화 구조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가들도 본인 직업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뽑아내고 관찰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어서 [성희롱·성추행 예방교육] 강사님들이 정말 심하게 말하면 발가벗겨지는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거 같아요.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통념을 전환시켜줘야 되는 역할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이걸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관찰당하는



위치에 있는 건데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거 같단 생각이. [문화예술계 쪽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종래에] 하던 대로 해서 와서는 들키세요, 금방.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재난의 상황인데 거기다 소금 뿌리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단어 선택 하나, 그리고 포인트 하나가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못 느끼고 오시는 분들은 표현도 거칠게 하는 예술가들도 많아서 바로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죠.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보통 성폭력 예방[교육]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지도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사례들을 모아 오는데 그 사례들은 그 강사님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알고 있고, 그 사례는 내 친구, 내 선배, 내 후배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수업 시간에 사례로 듣는 것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중략]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2차가해 댓글 중에 '너희가 교수를 죽였어!'라는 워딩이 굉장히 상처였어요. 그것을 잊고 지냈는데 이 수업 시간에 그 워딩을 다시 목격했을 때, 사례로 가져왔던 그 워딩이 딱 그 워딩이었을 때, '저것은 누가 봐도 우리 학교의 나의 사례인데…' 그 순간 다시 2차가해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선생님한테가서 '선생님, 저는 00대 피해잔데 방금 저 워딩을 보고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가해자 사진에 000 교수 사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분이 고인이 된 분인데상처를 받았다. 삭제 해달라'했는데 '어? 00대 나왔어요? 몰랐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니' 몰라서 그랬다는데 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중략]. (사례 5, 대학생 졸업자, 피해자 조력인)

저희가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성희롱·성폭력 교육자들이] 느끼질 못 하고 있다, [문화예술계만의 위계문화]인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인지를 건드려 줄 수 있는 사례가 좋을 거 같아요. [중략]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당연한 문화로 접 근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얘들아, 이상한 거야'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례 들이 좋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교수의 방에 가서 재떨이를 치우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행위. 예술대학생에게 는. 교수님 방에 가서 방 청소를 하는 게 교수님을 사랑하고 교수님을 존경 하고 그 행위가 내가 우리 학번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역할이라고 했을 때, 좋은 케이스, '운 좋아, 나는. 연습실 청소하는 것보다 교수실 청소하는 게 더 좋아'라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누군가의 입에서 차라리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건 내 치부를 건드리거나 내 동료의 아픔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내 안에 굉장히 우리 세대, 우리 동기들 사 이에서 '이거 원래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잘 못 전수되어있는 전통이거든요. [중략] 그게 당연한 문화라고 배어 있는 게 있 다는 거죠. (사례 4, 문화예술기획자, 피해자 조력인)



다. 미투운동 이후 성숙한 대응이 요구됨

가해자 신고에 있어 신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고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피해자 신고가 활발히 개진되는 것은 괄목할만한 현상이지만, 신고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통해 신고 사 안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론의 장에서의 피해나 고발 논의에 있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보호는 물론 또 다른 2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 밖에 사례 8은 적극적 인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찬성을 통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논의도 예방 교육 내용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지적한다.

미투운동이 돌고 나서 학생들 자체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면 강하게 반발하 고 이야기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선생님을 처 단했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발언 상, 불쾌하다, 발언 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모든 강사를 깔끔하게 해고하는 식으로 가게 됐어요. 여성 작가도 해 고가 됐고요,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이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 고 물이 흐려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나쁜 걸 바로 잡으려 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 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좀 조심하시라고 경고해도 되는데 바로 교체가 되는 식이었어요. 분명히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 고 선생님한테 바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강사 가 학기 도중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교체 교체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강의를 녹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취본을 자기 들 사이트에 올려요. 그래서 학교에 정식으로 '이거 문제 되지 않냐?'를 제 기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 음성파일을 띡 올리고 '지금 000 작가들 이 것 좀 봐, 이거 실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장에서. 이런 미투운동 에 조금씩 깨어있는 사람들 몇몇은 조금은 그걸 고발했을 때 생기는 영웅 심리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자기가 고발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사례 16, 대학생 졸업자)

[공론장에] 어떤 부분만 잘라서 올린다거나 하면서 여론전을 그 사람을 쓰레기도 만들던가 매장을 시킨다던가.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민재판이 진짜 바람직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도 못하고. [중략] 예를 들면 SNS에서 실명 거론을 다 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언론에 유출하고.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가 연대해준 집단에 대해서 '너희도 가해자다!' 오히려 그래서



VI.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 179

안에서 싸움이 더 나고, 상황을 악화시켜요. 이건 서로 다 잘되려고 하고 분노가 앞서서 가만히 있기 싫어서 한 행동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중략]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17, 대학생)

9. 소결

본 장에선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생자치단체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사건 대응 활동과 그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조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언 등을 살펴보았다. 남 성중심의 위계질서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의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은 피해를 드러내는데 오랜 시간과 용기를 필요로 했다. 미투운동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대학생들도 SNS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대자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학생들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효과적 수단이었다.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리인 자격으로 학교당국과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들이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학 측의 미온적 대응에 항의하고 지속적 요구를 통해 사건 조사와 징계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립 근거의 제도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대학 당국으로부터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동 위원회 참여한 경력으로 학업이나 진로 모색 과정에서 받을 불이익에 두려워한다.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지원자들은 성희롱고충상담소나 인권센터는 교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사건처리의 책임을 맡았는데 자원과 전문성 부 족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 밀보장, 안전조치 제공, 전문적 상담 제공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접촉하여 피해 사건을 진정하여 학교 측에 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한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데, 홍보 부족, 업무 미숙이나 편파적 태도로 인한 2차가해, 인력의 전문성 및 자원부족이 무제로 지적된다. 대학의 책임성 있는 기구인 조사위원회의 편파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일처리 방식과 결과는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징계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향후 대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학생들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피해 접수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제공,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 문화예술계 교육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에서의 행동 가이드라인 등을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구 한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적극적 홍보와 상세한 안내를 통해 학생들의 신뢰를 얻도록 힘써야 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의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방교육은 문화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남성중심의 성 고정관념이 고착화된 문화예술 분야의 현황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1. 구성원들의 성인지성과 위계 문화	183
2.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둘러싼 양상	188
3. 대학 내 사건 조사	197
4. 징계 처리	198
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	199
6. 폭력예방교육	203
7. 성폭력 방지업무 관련 고충상담원의 견해	209
8. 소결	213





VIII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1. 구성원들의 성인지성과 위계 문화

가. 학생과 교수의 성인지성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전공 영역이 현장의 작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적 네트워크 역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바,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를 묵과하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저희가 느끼기에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해야 할까요, 표현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학과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상담 비율만 봐도 인문계랑 공대 중 인문계가 훨씬 센터 상담도 많이 하고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높아요. '이게 문제시될 수 있는 발언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높고, 그중에서도 예체능은 더 높은 편이고요. 같은 발언이라고 해도 더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 거 같아요. 감수성이 높은데 반면에 분야가 좁아서인지 소문 때문에 참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예체능 학생들이 실기지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꼭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발언을 거칠게 한다든가, '야!'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거를 개인성향에 따라서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정도는 성희롱 발언이 아닌 거 같은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성희롱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이 분야로 나가려면 이 교수나 선배의 권한이 중요하다 보니까 참는 경우도 있고. (상담사 1)

교수나 강사 중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연극·영화 계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마치 누구나 한 번쯤 겪는



18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자연스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일부 강사들을 비롯해 50대~60대 정규직 교수들에게서 나타나데, 교육자 간 인식의 편차가 큰 편인데, 교원이나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듣는 사람만 듣게 되는 기울어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예방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걸 왜 들어야 되냐, 내가 이런 문제라도 일으킨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인권 침해 문항으로 공문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도 한두 건인데 어떤 과에서는 '도대체 누가이랬냐?' 이러면서 '우리 과에서 했던 발언은 뭐냐?'라고 엄청 쓰시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들은 열 몇 건이어도 연락 한 통 없으시고 이게 뭐였는지 관심도 없고. 차이가 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몇몇 분들이 계속 비슷한 발언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한 건도 없고, 있으신 분들은 저번 학기에도 있었고 이번 학기에도 있었고. 강의 평가에도 보면 한 명이 한 걸 그 발언에 대해서 5명이 썼다던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시면 얘기를 했을 때,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요. 학생들의 높아진 감수성을 못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중략] 관심 있는 사람들만 계속 교육을 듣는 것도 좀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높아지는데 관심은 없는 분들은 아예들지를 않으시니까. (상담사 1)

미투 이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나온 거 같아요. 내가 인정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다른 만만한 뭔가가 필요할 수 있는지 대상이 조금씩 바뀐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적 발언 문제는 여러 요소들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가 적합한 일이 있지' 라든지 '그러게 여자는 기왕 결혼할 거면 빨리 결혼하는 게 낫지, 그때가 몸값이 있는 때지' 이런 식의 발언을 실제로 하는 교수분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50대, 60대인 분들이 그렇죠. 40대분들은 그런 얘기는 대놓고 하지 않으세요. (상담사 2)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이 되신] 이분의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고, 당신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방송 계통에서 워낙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셔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관행인 거예요. '너 와서 앉아라, 술 따라라' 이런 것



들이 대학 와서는 허용이 안 되는데. [그분이 주장하셨던 건] '나는 강간한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그냥 만졌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날 몰매를 때리냐' 저희 위원들이 조사할 때도 그렇고 위원회 소명 기회를 3번이나 줬었어요. 위원회에 직접 와서 피신고인 소명 기회를 재심의 요청하셔서 드렸는데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위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듣지 않았다'라며 프로세스조차도 인정을 안 하시고. '저런 분이 교육자로서계속 있으면 학생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부분도 있었죠. 뭘 잘 못 했는지 전혀 모르세요. 연세는 60대. (상담사 4)

문화예술계 전공 특성상, 성 관련 주제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나 학생 동의 없이 진행하여 이들로 하여금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성적 주제를 다루거나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충분히 명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성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는 교육자가 여학생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항의한 학생들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업 중에 지문 읽고 역할을 하는데 '젖꼭지'. 그분 조사는 제가 안 하고 다른 분 조사의 워딩을 타이핑만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역할 연기하는데 '젖꼭지'란 단어와 또 하나의 어떤 단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롤플레잉 하면서 '너무 불쾌하다, 수치심이 들어서 이 강의를 두 번 듣고 나는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사 지문이고 이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았던 거예요. 학생들 9명 중에 누구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상반되더라고요. 이분은 '강의 시간에 그걸 쓰지 않았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중략] 명확하게 예를 들어 '이건 강의 지문이다, 이것을 같이 읽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허락하겠냐'라고 했으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시키고 남녀 짝을 짓고 이런 데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2명의 학생이 쓴 거예요. 그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죠. (상담사 4)

[문제를 일으켜 추방된] 강사분이신데 KBS에 근무하시더라고요. 추방되신 분께서 학생들하고 뒤풀이에 가서 같은 뒤풀이 장소에 있는 여학생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찍은 장소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뒤풀이 장소가 목욕탕을 풀장으로 개조해서 볼풀이 하나씩 있어요. 물이 있고 볼풀이 하나씩



있으면 그 볼풀에 학생들이 눕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술집인 거죠. 거기에 누워있던 여학생을 찍은 거예요. 두 번을 찍었을 때, 그걸 본 다른 여학생이 '찍지 말라'고. 이분이 교수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랬더니 '내 가 찍은 게 누군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신 거예요.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언쟁이 붙은 거예요. 지워 달라고 해서 이분이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또 찍 으신 거예요. 세 번 찍으니까 이 여학생이 또 가서 '당장 지워달라' 하니 이 분이 '나를 성추행범으로 모는 거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했고, 언쟁하던 도 중 시간 강사라는 게 알려졌고 '내가 너희 과를 밀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밤] 12시, 1시가 됐고 여학생이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한 거 예요. 경찰이 와서 이분을 성추행으로 했는데 무고가 된 거예요. 무혐의가 됐고 대신 이 여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로 다시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성추행은 아니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진에 찍힌 여학생은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자로 있을 수가 있 나'한 거고. 자신은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친구는 목격자니까 진 술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님은 너무 격앙돼서 한 말이지만 여학생들은 위협 을 느꼈고, '우리 과는 아니지만, 저 과에 저런 교수가 나오면 안 될 거 같 다, 학교서 더 안 보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청했죠. 성희롱은 아니지만, 초상 권 침해, 그리고 교육자로서 품위 유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추방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상담사 4)

나. 위계 문화

남성 비율이 높은 공대는 공동체를 우선시 한다는 명목 하에 군대식 위계 문화가 존재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대학원생이나 문화예술계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 여부가 직결 된 교수나 강사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종속 관계에 있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투운동으로 일부 과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언론에 노출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권센터와 대학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 및 관리에 나서면 서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 문화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연대와 공동체 생활을 강요하며 위계구조가 짙은 워크숍 활동 이 존재한다고 한다.

아직도 군대식 문화라는 게 꼭 술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술자리를 또는 회식이나 MT를 안 가면 '너는 공동체가 중요한데 조직은 중요하지 않냐,



개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 참고 조직에 맞춰줘야지.'라고 하는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의 군대식 문화, 그러니까 집단으로 기합 주는 과가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모든 공대 계열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공대 계열에도 있고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곳들은 신입생 어디 갔는데 거기서 집단적으로 남학생들을 기합 주는 선배들의 문화를 보면서 '여기는 이런 위계 문화가 있구나'라고 해서 다른 사건 있을 때 '무섭다, 말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장이 돼서 사건이 3년 전 신입생 때 발생했는데 오래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상단사 2)

대학에서도 그나마 사각지대는 대학원생이죠. 밥줄하고 연관이 가장 많이 되잖아요. 학부생은 오히려 강의 평가도 신랄하게 하는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거리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계는 거리가 너무 밀접하니까 대학원생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학생들도 여기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프로젝트나 알바 알선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럴 때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수님이나 겸직을 하거나 현장의 일선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학생 위치이기도 하지만 학생 노동자이기도 한 거죠. (상당사 2)

신입생 기합 주는 게 언론에 노출돼서 다 없어졌거든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재학생들은 거의 있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모든 과들이 끊 임없이 이런 과들에서 이런 게 있어선 안 된다고 하고, 한 명이 신고하게 되면 학생들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중략]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 신입생들 앞에서 연극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을 상담할 때 그러더라고요. 워크숍 멤버로 들어가면 좋 은 점이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과 생활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 율이 아니고 본인이 빠져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 따로 노는 거 같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여길 들어갔 어요. 안 들어가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워크숍 A, B, C 반이 있는데, 자기는 B가 가고 싶은데 거기 다 몰린 거예요. 결국, 가위 바 위 보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방학 내내 여기 가는 거예요. 방학이 없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담실에 못 온다는 거예요. '야! 같은 학 교에 왜 못 와?' 그러면 '선생님 아침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고….' (중략) 이 걸 하지 않으면 본인이 연극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지만 생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과는 워크숍이라는 교과목이 있으 니까 유대 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계가 되 면…. (상담사 4)



2.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둘러싼 양상

가. 성희롱·성폭력 신고 현황

미투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상황은 학교마다 차이를 보인다. 미투운동의 영향을 받아 인권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가 개선되어예년에 비해 신고가 증가한 곳이 있는 반면, 큰 변화가 없는 곳이 있다. 그러나 상담센터와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해결 선례를 남김으로써 학내 공식기구로서 학생들에게 신임과 신뢰를 받는다고 한다.

작년에 미투운동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에서는 위드유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 홈페이지랑 학교 센터 알림망에 '피해자 신고를 받는다, 피해자의 용기를 적극 지지한다'는 캠페인을 했어요. 저희 총장님께서 먼저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센터장님이 작년에 새로 오셨었는데 취임하고 더불어서 총학생회 회장과 총학생회와 같이 했었어요. 총학생회는 작년까지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3월에 했어요. 한 달 정도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신고되거나 상담이 는 건 없었어요. 학교에서 좀 더 신경 썼다는 건 여름에 규정 개정을 하면서 신고 기한이 1년이내였는데 6년으로 변경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신고를 못 했던 걸 할 수 있도록. 미투 때문에 더 특별히 과거의 있었던 일이 신고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상담사 1)

전반적으로 올 초가 되자마자 다른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왜이렇게 우리 학교에 사건이 갑자기 많아졌는지 혹시 우리만 많아진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3,4월에 너무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도 그렇다' 우리 기구[인권센터]는 물론 새로 생겨서 좀 특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학교들도 전반적으로 이미 있었던 기구인데도 올해 특히 많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미투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있는 거 같아요. (상담사 2)

작년 5월에 영화학과에서 겸임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학생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같은 과 학생이 제보했는데 이 교수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어요. 학생들이 방학 때 모인다는 건 이례적인데, 영화학과 임시 총회를 해서 이 교수님이 오셔서 사과하셨는데 사과 태도가 학생들이 보기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해서 2학기 개강하고 여학생 3명이 상담실로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배경이 000 교수 건을 학교에서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걸 보고 신뢰가 있다고 보고 졸업생들이 뒤에서 '너희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센터 믿고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라'라고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한 여학생들이 '저희가 오게 된 건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연극학과 조사 잘 되고 있으니까 학교에 공식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됐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상당사 3)

접수된 사건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성추행보다는 성희롱 피해 건수가 많고, 가해 행위자의 직위는 교수, 강사, 동료 등으로 그 층위가 다양하다. 동료들 끼리의 성희롱은 조별 활동을 위한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개인 메신저인지라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기 초와 축제 때 준강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피해자스스로도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고 접수 별로 보면] 성희롱이 제일 많은데 다양해요. 예를 들면, '첫 경험은 언제냐'하는. 팀플이나 동아리 친한 선배들이. 요즘에는 수업마다 거의다 팀플이 있기 때문에 조가 짜여지고 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나서 과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카톡하고 나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단톡방에서의 성희롱이 당연히 있을 거고. 드러난 거 보다 안 드러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면 찍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고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어야만 그런 건 아니니까 불법 촬영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발언 같은 경우는 '첫 경험은 해봤냐?'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 '없을 거 같은데, 언제 키스했냐?'부터 외모를 비하한다든가, 자기들끼리평가한다든가. 성추행도 있죠. 그냥 성추행보다는 준강제추행이 많은데, 보통 저희가 제일 유의하는 때가 학기 초랑 축제인데, 축제에서 술을 팔긴 하지만 많이 줄었죠. (상담사 1)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성희롱이 많이 있는데, 사건으로 실제 기관에 접수되어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얘기하거나 사건으로 다루진 못 하겠지만 힘들다는 호소의 내용은 거의 준강간이에요. '술에 취했는데, 그런데 나도 잘 못 한 거 같아서 그동안 말 못 했어' 이런 방식의 여학생 호소가 많거든요. 자기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같다'라고 하면서 자책해서. (상담사 2)



성희롱 성추행을 자행한 한 교육자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든가, '딸 같아서 그랬다'며 자기변명과 방어에 급급하다고 한다.

강사는 한 건이었는데…. [중략] 피해자가 주장하는 건 입시 비리와 성희롱. 입시 비리는 인권센터에서 밝히기 어려워서. 외모적인 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한 피해였어요]. [교수의 경우] 어디 지나가면서 '어두우니까 손잡고 가자'이런 것들이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어요. 본인 입장은 '어두우니까, 나는 친근감의 표시였다' (라고 해요). 보통 가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딸 같아서 그랬다, 아껴서 그랬다'. (상담사 1)

대학 내 일부 인권센터는 '외부 메일'로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 피해자들이 신변상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도 직권조사 명 령을 내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서는 피해자 신분 노출을 감안해 대리인을 통해 조력하기도 하고, 여학생만 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해 행위자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 파악 에 나서기도 한다.

저희가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학교 내부망도 아닌 외부 메일로 신고할수 있게 학생들에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그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피해 학생들이 많이 신고할수 있고 최대한 많이 알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할수 있다고. [중략]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많은 건은 [교수에 의한 가해 행위가] 10건도 넘었던 거 같아요. 학교 자체에서도 조사명령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락할수 있는 피해자가 없으니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알릴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 안내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이후에 처리 진행을 했죠. (상담사 3)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됐으니 과에 찾아가서 조사했는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학생들 전체를 하죠. 특정 누구를 쓰면 안 되니까 종이를 다 나눠주고 어떤 남학생이 구구절절한 목격담을써 줬어요. 자기 이름을 다 써줘서 이 남학생을 만났는데 이 남학생은 목격자고 거기에 피해자는 자기는 절대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피해자가 누군지 모르죠, 이 남학생은 알지만. 그래서 문자로 '선생님, 그 누나는 도저히 신고 못 한다고 하고 제가 목격자니 끝까지 돕겠다.'라고 해서 '그럼 할 수 없다, 선생님이 여학생만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신고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전수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학생 성 비율은]



여학생들이 훨씬 많죠. 6:4 정도.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이름 쓴 여학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격담이 나오고. 그 이름 쓴 학생들에게 제가 다 연락을 했더니 두 명이 와서 신고서를 써 줬는데 이 두 명은 정말 언어적인 거. '너 오늘 몸매 좋네' 아니면 수업 시간에 '너 남자친구랑 아직도 사귀어?' (상담사 4)

나. 가해자 지위에 따른 대응의 차이

가해자가 교육자인 경우 이들의 지위와 권한으로 '졸업과 성적'에 피해 입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 자체를 두려워한다.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문화예술계 특성상 긴밀한 인맥 관계 구조 때문에 신분이 특정될 수 있기에 두려움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고 한다. 게다가 센터가 교육자에 대한 징계 처분 확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피해 학생은 위험을 무릎 쓰고 사건 조사 진행을 의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해자가 선배인 경우도 위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동일한 지위의 교내 구성원임에도 권력의 차이가 있어 이들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편이나, 동기간에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전임 교원 경우는 훨씬 더 적고 신고되어도 끝까지 가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아요. 중간에 상담하면서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중간에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상담 초기에 그런 걸 설명하고 나면 본인이 '졸업만 하면 되니까'라는 마음도 있고. [중략]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 행위자가] 학생의 경우는 철회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중재건 징계건 끝까지 가는데 [가해 행위자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상담 초기에서부터 '생각해 보고 올게요'라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나 중간에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한다'든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부담감이 크니까. [중략] 보통 물어보는 게, '내가 이걸 얘기하면 교수님 해임될 수 있냐'는 식의 보장을 받길 원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장담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보통은 진술을 거부하시죠. [중략] 제가 느끼기에 특성은 분야가 좁다 보니까 속된 말로 [나를] 잘 되게는 못 해도 못 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안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참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상담사 1)

특히 문화예술계의 경우 좁은 거 같아요. 소문이 빨리 돌고. 왜냐면 성희롱 발언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교수님 수업 중에 이런



192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발언을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좀 자제해 달라'고 해서 누군지 특정되지 않게 피해자 처리가 가능한데, 사건을 아예 징계 신고로 가게 되면 저희가 신고인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피해자가 특정되다 보니까 조금 더 참는, 신고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상담사 1)

선후배 관계면 좀 두려워해요.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보복할까 봐.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데, 학생들이 느끼기에 '경찰에 신고할 것까진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센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혹시나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긴 해요. 그래도 상대가 교원일 때보다는 더 용기를 내는 편이에요. 동기면 훨씬 더 적극적인 거 같아요. 학생일 때는 훨씬. 그리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더 전투적으로. [선생님 신고는] 졸업과 성적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고하기두려워하고요]. (상담사 1)

다.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평판

미투 이전에는 학생들은 성희롱고충상담센터를 '학교 안에 있는 기구' 정도로 인식하며 피해자 보호나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인권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담소나 인권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실기와 프로젝트가 빈번한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홍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미투 이전에 상담기구를] 알아도 그렇게 신뢰하거나 '학교 안에 있는 기구 니까'라고 생각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기구라는 생각들을 할 계기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상담사 2)

학생들은 [성고충상담소를]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는 꾸준히 홍보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찾아가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규모 집단의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원마다 과마다 16, 17년도에는 한 해에 그런 교육만 20, 30건을 진행했어요. 소규모로 하다 보니 과별로 진행했었는데, 결국 그런 교육에 오는 아이들은 아는 아이들이고 관심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 화장실마다 다 붙어있긴 하거든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위에 기울이지 않고…. 양쪽의 문제인 거죠.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홍보했다고 볼 수 있고,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 같아요. [새로운 홍보에] 저희도 계속 딜레마는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교 학생들의 특징일 수 있겠지만 워낙 실기나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업도 많아서 현재 학업의 업무가 과다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게 좀 어렵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꾸준히 와요. (상담사 3)

라. 대자보를 통한 신고

학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고충상담기구를 통하지 않고 학생 활동으로 공론화되기도 하는데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이와 관련된 근본 적인 원인은 고충상담기구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다. 교내 부속 기관의 일부로 학교 편에서 조사나 징계를 처리하므로 가해자의 입장을 더 반영하여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불신감이 학생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이런 이유 로 학생들은 대자보나 외부 언론에 의한 피해 고발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자구적 피해 폭로 방식을 통해 수업 중 교수 발언에 불쾌감을 느껴 '사퇴'나 '수업 배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극대화'하여 사건을 확장시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2차피해에 대한 울분 토로와 신망 있고 신뢰성 있는 가해자의 입장을 더 두둔하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 입장을 해명하고자 대자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대자보 붙은 건 있었는데 미투 때문에 있었던 거 같진 않고, 교수님 관련한 발언 때문에 있었는데 그게 더 크게 커지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공론화시키 긴 했는데 금방 사라졌어요. 수업 중에 어떤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거여서 크게 문제화되진 않았어요. 그런 대자보 입장을 보면 피해를 야기시켰으니 사퇴, 수업 배제 요구였는데 저희 센터에 신고가 되진 않았어요. (상 담사 1)

인권센터를 모르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 봤자 학교 편일 거다'라고. 저희가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공론화를 하는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공표를 한다든가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해자가 받는 충격이나조심하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큰 거 같아요. 조금 더 본인들의목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 같아요. (상담사 1)



19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 상담을 요청해서 조사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깔려 있 어요]. [그래서 대자보나 외부 언론에 폭로하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담사 3)

대자보처럼 공론화된다고 하는 건 피해자가 원래 조용히 해결하고 싶거나 피해가 중단되고 가해자가 사과해서 어쨌든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2차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피해자]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올 때는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피해자였어, 내가 원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해명하기 위한 게 공론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가해자의 실명이든 익명이든 아무튼 '이걸 알만한 사람은 안다면 내 이름을 대든 안 대든 그 사건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서 나는 피해를 받은 게 받다, 내가 합의했던 어느 수준에서 동조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공론화하기 위한 해명의 차원이죠. (상담사 2)

대자보를 통한 피해 고발의 이점이 있는 반면, 이것이 미성숙한 토론의 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여론이 양비론으로 치닫을 소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2차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권센터는 대자보 대응 의 장단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바람직한 피해 고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기도 하다.

일단 피해자가 그렇게 [대자보 공보를] 한 번 하면 [중략] 그다음 번에 절차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와 같은 가해자는 자기의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해서 명예 회복 차원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를 해명하는 대자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성폭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가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때 대자보로만 가게 된다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토론을 수용할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기 사건을 좀 더 수준 높여서 그 조직에서의 문화적인 토론 공론화의 방식으로 가는 건 좋은 걸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조직일수록 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분들이 오히려 자기 의견들을 더 많이 피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견을 공론화하거나 댓글을 많이 달지 않지만, 에브리타임130)으로

¹³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간표 작성, 수업 일정 및 할 일 등의 학업 관리가 가능하고, 학식 등 유용한 학교 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같은 캠퍼스 학생들과 익명의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만든 핸드폰 어플 프로그램.



달든 아니면 서로 오가는 얘기의 형국이 될 때, 그걸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해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하는 양비론으로 가는 경우들이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자보를 한 번 쓰는 것도 신중해야 하지만 그 뒤에 대자보 공방으로 가는 건, 가해자에게 안 좋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여러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를 해주긴 해요. 그다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익명이든 실명이든 이걸 하면서 동시에 학교 기관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만 하고 끝내진 않죠. 왜냐면 자기도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여기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기구라 생각하면 양쪽 다리를 걸치는 거죠. (상담사 2)

마. 2차피해

피해자 유발론이나 책임론,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것인데 동료 학생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피해자가 2차가해에 노출되기 쉽다. 가해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신망 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이들의 해명이 우선시되고 이를 통해 사건이 재구성되어 피해자가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문제는 피해 호소한 학생들이 더 상처받는 과정이에요. 본인이 이걸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주로 여학생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 같이 뭔가 해결하기 위해 사과를 받아주려고 하 는 게 많아요.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친하지 않은 어떤 남자 선배나 남 학생들로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들려오는 말은 '걔네 둘이 사실 좋아해서 그 런 거라면서 그 여자애 왜 뒤늦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는 2 차피해성의 발언, '피해자한테도 책임 있어, 유발했겠지.'라는 논조의 발언들 을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됐을 때, 받는 그 상처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가해자 본인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럴 때 선수 쳐서 또는 그걸 누군가 알았을 때, 본인이 해명하는 방식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명함 으로써 사건이 재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후자인 경우를 좀 더 많 이 봐서 이 경우일 때, '피해자도 뭔가 동조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다, 어느 정도는. 책임이 같이 있는 거다. 나만 잘 못 한 게 아니다'라는 방식으 로 재구성이 되어서 피해자가 상처를 더 입게 되더라고요. 원사건보다 뒤에 있는 문제가 훨씬 힘들죠. 왜냐면 피해자가 보호받거나 지지받는 게 아니라 2차 적으로 '쟨 원래 그런 애야'라는 방식으로 재구성돼서 학생이 통째로 그 렇게 규정이 됐을 때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더



196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많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받았던 피해를 주변인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피해 사실이 확산이 되는 경우에 조직 문화에 따라, 특히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성갈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그 여자애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그 가해자들이 학생회장이거나 과대표거나 아니면 과에서도신뢰를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학생들 간은 평등한 관계라고볼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어서의 권력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조직에서의 나름의 권력과 신망 등이 좀 더 있을 경우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같은 신입생이어도 더 활달하게 자원 활동을 하거나 집행부를 하거나 주로 대표 활동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 (상담사 2)

이와 같은 2차가해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생회 내부에서 피해학생 '인권 보호 위원회'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피해자 호소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피해자 요구에 따라 위원회 역량이 닿는데까지 도움을 제공하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소나 인권센터로 피해자와 동반하여 대학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문화예술계 말고 다른 과에서 좀 잘했던 과는 거기도 내부에 2차피해로 갈 등이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도, 그리고 여학생들도 많아서 더 공론화를 시 켰는지 몰라요. 남학생 회장이나 과대가 좀 더 공정성 중립을 가장해서 어 리둥절하게 있을 때, 여학생들이 피해자를 지지하면서 '그건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내부도 인권기구를 만들자'고 해서 피 해자가 생기면 피해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한 명, 학생집회기구 내에서 피해 자가 또 한 명 지명해서 자기의 지지 기구를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이름이 '00과 학생 인권 보호 위원회'라고 해서 자치 모임을 학생회 내부에 만들기 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칙을 만들건대, 이 세칙이 괜찮은지 저희에게 문 의한 적이 있어서 얼마 전에 검토했었어요. [중립] '중립이나 양쪽을 중재하 는 거보다 피해자가 먼저 호소를 할 테니 차라리 피해자 지지 모임처럼 피 해자 입장에서 들어주고, 네가 원하는 게 사건 처리 중에 중재나 뭐를 원하 니? 그럼 우리 먼저 그거 해보자'라고 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우리 는 조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권한이 별로 없으니 그다음에는 인권센터에 넘기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기구가 피해자 데리고 같이 인권센터로 이관하는 거, 중재까지 해보고 안 되면 넘기는 거. 피해자가 중 재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는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적어도 2차피해가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학생 대 중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상담사 2)



3. 대학 내 사건 조사

성희롱 고충상담기구는 피해자 신고접수에 따른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신분 노출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으로 조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건 처리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며 징계 위원회까지 회부되어 사건 처리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약 1년 전쯤 직권조사를] 한 적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거부했어요. 가해한 사람의 이름하고 언제 어느 정도의발언인지, 발언이라고 해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어떻게 얘기를 했다'라고 아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적었을 경우, 그리고 가해자도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왔던 적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어요. (상담사 1)

[가해 행위자인 교수에 대한 사건] 조사 들어간 적은 있어요. 비율로 보면 20%, 10% 내외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끝까지 간 건 1건. 징계 위원회까지 간 게 1건. 인권 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행위가 인권 침해가 맞다고 하면 해당 부서로 징계 권한이 넘어가요. 저희는 징계 사유다, 아니다 까지 판단하는 위원회를 여는데 거기까지 간 게 1건이에요. 중재는 없었어요. 조사하다가 중단에 중단된 것들은 있었어요. (상담사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조사위원을 위촉하는 조치는 공정한 조사보고서 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성희롱', '성소수자', '인권사건' 등 각 영역에 적합한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2018년] 0월 0일에 [000 교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고 아예 외부 조사위원 위촉을 하고. 저희가 좋아진 건, 그동안 계속 사건이 조금씩 접수가 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법학과 교수님들이 내부 조사 위원이 돼서 조사했는데, 000 교수님 이후는 무조건 외부 조사 위원장을 돈 들여서 위촉해요. 저는 외부, 내부 피해 학생들 만나고. 조사 위원은 3명인데, 조사 위원장은 외부, 내부는 주로 제가 피해 학생들 만나고 또 다른 분들과 조직을 해요. 외부 분들은 수당을 드리고 내부 분들은 수당 없이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져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봐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분은 징계가 나서 파면이 됐어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자였던 강사는] 성추행. 추행인데 학교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했어요. 가벼운 추행인데, 저희 연극학과의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준이 됐던 거 같아요.



198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복되거나 한두 번이라도, 특히 '연극, 영화 예술 쪽에 서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학교의 방침이 됐어요 (상담사 4)

가능하면 조사는 분리하자고 해서 외부 위원은 거의 분리를 해요.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조사하지 않도록 저희가 외부 위원 선임 때마다 그렇게 해요. 저희가 내부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내부 조사 위원이 할 때가 있고, 외부에 선임해서 조사위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 이 사건은 이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시고 오거나, 성희롱 사건, 성소수자 사건, 인권사건에 맞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 위원을 모셔서 해요. (상담사 2)

4. 징계 처리

징계수위는 고충상담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되는데, 가해자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조사위가 구성되고 징계 양형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나온다. 징계 기준의 원칙이 내규 상 마련되어 있어도 징계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제 라인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었던 징계수준과 상이하게 결정되면서 징계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퇴직을 앞둔 가해자의 경우 퇴직 기간 안에 징계 처벌을 받고 '소청 심의'를 통해 가해행위자가 혐의를 벗게 되면서 징계 시효성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문제는 징계 요청을 각각의 해당 기구에 하잖아요. 학생이면 학생과에서 학생 징계 위원회를 열게 하고 교수면 교무위에서 징계 위원회나 윤리 위원회를 열게 해서 경징계에 중징계에 따라서 위원회가 또 다르게 열리고 직원은 직원 징계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데, 문제는 징계 요청이 넘어가는 순간 총장 직속 기관이어서 그 영향력은 직속 기구가 요청하는 거지만 징계 수위를 정확하게 찍지 않는 이상, 징계가 요청이 돼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건 성희롱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강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라는 걸로 얘기가 되면 파면, 퇴학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상, 거기선 그냥 '결과와 성격이이런 거다, 그러니 징계를 검토하자, 그런데 얘가 장학금도 받았고 학교 과대 활동도 열심히 해온 애다, [이를] 참작해서 경징계' 이런 방식으로 징계가 우리의 예상이나 여기서 논의됐던 수준과는 많이 다르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을 실제로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상당수 봤어요. (상담사 2)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죠. 소청 심의에서 이기셔서 혐의를 벗고 학교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시죠. 수업은 안 하시고. 저희가 징계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알게 되는 업무상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듣게 되는 건데, 교원 소청에서 져서 결국에는 돌아오셨다기보다 퇴직을 앞두셨던 터라 퇴직 기간 안에 징계를 다 받으셨던 거고 결국 소청으로 징계는 무효화 됐었던 거죠. (상담사 3)

징계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개적으로 게시되지 않으나 규정이 개정되어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직접 고지할 수 있게 개정된 학교도 있고, 피해자가 징계결과 보고를 요청하면 해당 사건 관련 기관으로서 통보를 해주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징계 결과는] 저희도 통보를 안 해줬었어요. 왜냐면 이게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데 규정이 법적으로 개정되면서 공모법 상, 피해자에게 징계 안내를 해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서 원하는 피해자인 경우에 전달하고 있어요.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죠. 그 피해자가 혹시 이 징계 결과를 외부 결과를 유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안서약을 작성하고 그 후에 안내해요. 저희 규정상, 안내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건 없었고, 다만 공무원법에 의거해서이번에 (안내할 수 있게 됐어요). (상담사 3)

[조사 과정이나 징계 결과를] 보통 피해자에게 [공지] 안 해요. 왜냐면 징계는 징계 대상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한테만 원래 징계 결과를 알려줘요. 저희는 관련 요청 기관이어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저희가 피해자에게 알려주긴 하죠. (상담사 2)

5. 미투운동 이후의 변화

가. 학내 분위기의 변화

미투운동 이후, 공식적·비공식적 회식 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을 대하는 교육자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투가 터지고 나서는 회식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함께하는 회식은 자체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대부분 교수님들도 조심하세요. (상담사 1)

학기마다 실시하는 강의 평가서에 인권 침해 문항이나 주관식 항목을 추가하여 수업 중 성희롱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성희롱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피해 고발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저희 학교 차원에서 노력하는 게 강의 평가 학기 말에 주관식 인권 침해 문항이 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작성하면 익명으로 센터가 취합하거든요. 제목이 '강의 중 인권 침해 문항'이라고 해서 인권 침해와 성 관련한 것도 다들어 있어요. 수업 시간 발언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건 '성 차별적 발언' 비단 문화예술계가 아니더라도 '여자는 뭐 뭐해야 하고, 여자는 시집만 잘가면 되고, 여자는 예뻐야 하고, 여자는 돈 버는 게 성형수술 때문이고…' 이런 식의 '여자는 뭐 뭐하고, 남자는 뭐 뭐하다'는 발언이 가장 많고, 성희롱 경우는 수업 중에 '너 되게 생긴 게 내 스타일인데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대시해 보는 건데' 하는 발언들. '살 좀 빼야겠다, 너는 참 다리가 예쁘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이런 걸 적어도 적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 마음에서 안 적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익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우는 그걸 거기에 적지 않고 센터에 연락이 오죠. (상담사 1)

저희가 강화된 게, 한 학기 강의 평가에 학생들이 익명으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중간 강의 평가와 기말 강의 평가가 의무예요. 거기에 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 필터링에 예를 들어 '성, 수치심, 불쾌'이런 걸 치면 그렇게 쓴 강의 평가 주관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넘친 게, 그 과목에 누가 썼는지 모르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저희 부서로 와요. 여러 과목에서 학생들이 주관식에 진술했는데, 과목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과목 전수 조사를 다 하는 거죠. '교수가 이랬냐?' 하면서. (상담사 4)

나.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조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에 교원 및 교육자 임용 시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관련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조회를 실시하고 있진 않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교원 및 교육자에 대한 조회 역시 미비한 상태이다.



강사로 온다고 하면 교원 인사실에서 바로 조회해요. 매년 해요. 교원들도 알곤 있는데, 안 들었을 때 개인적인 페널티는 없어요. 조회를 매년 하진 않 아요. 처음 임용 때,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하지 않고요. (상담사 1)

올해부터 [교원이나 교육자 임용 시, 성범력 전력 조회가] 시행됐죠. 저희가 아니라 교수 지원 연구팀에서 그런 조회를 다 해서 해당되는 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직원의 인사 조회는 인사 총무팀에서 하고 교수들은 교수연구 지원팀에서 하거든요. [중략]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 4)

다. 대학 당국의 직권조사

미투 고발이 본격화 되면서 대학 당국은 교수들 대상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학교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부 과는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하여 조사 위원으로 외부 전문인을 구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언론에 노출되면서 처음에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졸업생들의 미투가 이어진 거죠. 배후들이 나오고. 그전까지 저희는 졸업생 경우는 몰랐죠. 그래서 그졸업생들을 저희 부총장님, 처장님, 센터장님이 다 가서 만나고, 졸업생 대표들 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피해 졸업생들 심리상담 지원해 주고, 진상 조사를 처음부터 하겠다고 한 거죠. 그게 작년에 발족이 되고 학교 규정 다 바꿨어요.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을 바꿨어요. 0월 00일 날, 졸업생들에게도 규정 바뀐 걸 학교 홈페이지에게재하고 다시 처음부터 진상 조사 들어가서 관련 교수들. 졸업생들 피해자조사도 하고 각 관련 학과 교수님들 조사를 한 게, 4, 5, 6, 7, 8월. (상담사 4)

저희는 언론으로 미투가 터져서 이후에 학교 내부적으로 이 미투 사건에 대해 대응을 해야겠다고 인식을 해서 TF팀 결성이 됐어요. [TF가 구성된 계기는] 언론에서 저희 학교가 유독 많이 그 당시에 터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당시에 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신고하게 된 경위가 아니니까 저희 학교 규정상, 총장님이 명령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총장님과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실태 조사 겸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외부 위원으로 조사 위원을 네 분 위촉했고,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지금은 인권센터인데 그 당시 0000연구소내에 성평등 상담실도 있었어요. 그 연구소의 소장, 교학처장, 미투 터진 건의 관련된 원의 원장님이 들어갔던 거로 생각해요. (상담사 4)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일부 대학은 피해자가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다른 곳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고 '회 당 10만 원'의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걸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와 심의 절차를 여기까지 할 텐데, 이걸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심리 상담이나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 법적 조원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니 법적인 재판이나 수사로 같이 연결될 때는 우리가 의뢰나 참고 진술이나 조력을 해줄 테니 관련해서 외부 상담소나 북부 지검과 연계를 맺어 놨으니 연결해 줄 수 있다. 어쨌든 그건 수사나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을 때 하는 방식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부 전문 상담 기관들을 연결해서 거기서도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상담사들이] 말해줘요. [변호사 선임하고 싶다면] 북부 지검에 연락해서 피해자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돼요. [의료비 경우도] 예산에서 의료비를 논의하는 중인데 학교마다 협력 제휴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00대는 00대 병원, 여기는 00 000. 이런 식으로 제휴를 맺는 협력 기관이 있는 경우에 거기랑 같이 얘길 해서 의료비를 조금 더 할인해주고, 우리도 책정이 가능하면 1인당 아니면 총 얼마 내 안에서는 지원해주는 걸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아마 할 거 같아요. (상담사 2)

지금도 [가해 행위자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받았던] 졸업생들은 상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 졸업생들 심리상담에 대한 예산지원해 주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생들 상담, 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게. 그래서 몇백만 원을 해주는데, 처음에 이거가지고 졸업생을 해줘야 하나 하다가 그래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하죠. 8월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대한 곳에서 지원해 주고, 횟수가 끊어져서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수는 저에게 아직 통보가 안 됐고, 예산은 제가 집행해줘야하는데 인원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상담사 4)

미투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 문화예술계 영역에서의 피해자 신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체계는 미흡하여 2차가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가 밀접히 연결된 문화예술 영역에서 피해자의 신분 노출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향후 진로나 직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상담사들은 자신의 직분을 걸고 피해자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졸업생들하고 재학생들은 연극 영화 쪽이라 유대 관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신고했을 때, '졸업생 누가 자꾸 묻는데 저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저도 놀란 게, '상담실에 누가 갔다'까지 금방 아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저는 말을 안 하는데, '누가 상담실에 갔다' 그런데 재학생들은 졸업생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알려지고, 무슨 모임에서 연계가 되고. [피해 고발한 재학생들은] '내가 상담실에 가서 신고했다는 건 끝까지 보호해 달라'고. 약간 노출이 돼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이학생들은 2, 3시에 [저에게] 전화하고. 경찰이 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된다'고. 얘네를 끝까지 노출 안 되게 했죠. 경찰이 4명 찾아와서 '자료 다 내놓으라' 했을 때도, '영장 갖고 오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죠. (상담사 4)

6. 폭력예방교육

가. 학생 대상 예방교육 과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4대 폭력 중성폭력과 가정 폭력만이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 OT나 새터 현장에서 단과대 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과들, 예컨대 사범대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교육이 필수화되어 있어 실습 전성희롱 고충상담기구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이수율만을 고려해 대학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적 시행 절차에 관한 제도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관련교육의 의무화를 구상하는 곳도 있다.

학생의 경우, 성폭력이랑 가정 폭력이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강제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략]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학생은 가정 폭력이랑 성폭력이 의무 대상이긴 한데, 가점처럼 들어가 있어요. [중략] 일단 신입생 OT 때, 짧게나마 30분 정도 단과대 별로 해요. 신입생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보시면 되는데, 단과대 별로 OT 때 커리큘럼이 있어서, 단과대 별로 쪼개서 해요. 처음에 입학식 때, 한 번에 하고 OT 때 단과대 별로는 최대 300명씩



20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나눠서 일정에 맞춰서 해요. 저랑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안되는 과는 주말에 새터 가면서 같이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러면 영상으로. 최대 30분. 많은 내용을 할 순 없고, '학교에 와서 인권센터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런 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센터에 이런 게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됐을 때 주변인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경찰서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라고. 저희가 신입생 대상으로 책자처럼 얇게 2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데이트 폭력이나 몰래카메라, 인권 관련한 퀴즈 형식으로 나눠줘요. (상담사 1)

현장 실습 가는 학생들이 취업 센터에 요청해서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저희가 따로 50분 정도 진행해요. [중략] 사범대 경우, 의무화로 바뀌어서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인권 감축을 한다든지 해서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저희가 따로 교육을 50분 정도 해요. 그렇게 [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도 하기가 좀 수월하죠. [중략] [사범대는 저희에게 따로 요청이 없어도 과에 관련 교육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전임 교원이 하시는 건데 학교폭력으로 해서 저희 학교는 3분의 교수님이나눠서 하세요. 실제로 연극같이 상황극을 해 보기도 하고 이론도 배우고. (상담사 1)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학생들이 제일 낮아요. 왜냐면 교직원은 오히려 의무 강화를 했거나, 직원들 비율, 또는 교수들은 전임 교원 이상은 고위직으 로 분리를 한다는 공공기관 분류법에 의한 여가부 지침이 있으니까 더 적극 적으로 이수를 하려고 하는 대상별 이수 지침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잖아 요.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정폭력만 예방교육이니까 폭력 예방 통합교육으로 꼭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개별적으로 몇 가지만 이수 율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어차피 부진기간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다 채울 수가 없으니 몇 군데 형식적으로만 하자'는 식이에요. [중략] 폭력 예방 지침 에 대상별, 대학교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등 기구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은 몇 퍼센트 점수를 부 여하고, '학생 100% 중에서 몇 퍼센트를 받으면 몇 점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 점수를 대학에서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해선 의무 교 육이 거의 아니니까 이건 부진점수 만든다고 해서 나머지 점수를 부진기간 안 되기 위한 70점이든 80점이든 채울 때 이거 빼고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으 로 사건 처리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략] 그냥 무 조건 의무화됐을 때는 이걸 의무화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겨서 개인한테 페널티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의무화한다라는 게 기관에 서는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상담사 2)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학과별 특성과 현장 실습과 프로젝트가 많은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사들 끼리의 토론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한다. 단순히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학과 특성에 따른 성평등 '인식 편차'가 있으므로 대상에 따른 '특화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사례 예시만을 통해 가해자와 가해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게 아니라 대처를 잘한 사례 예시를 통해서 대처 능력과 성 감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생수준을 고려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육 참여자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희가 [학생들 예방] 교육할 때 정말 주의를 해요. [양평원에서 외부] 전문 강사를 모셨었는데 남학생들이 가해자고 여학생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항의가. 요새 남자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 감수성이 높은 학생들은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으신분들도 많은데 간혹 한마디라도 말실수하면 파장이 커지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 때도, 무조건 남녀를 다 들어요. 여자가 피해자였던 경우, 남자가 피해자였던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사나이'란 프로그램에서 사유리가 어떤 남자 교관을 보고 '엉덩이가 화났다'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성 소수자들도 있으니, 성 소수자가 여자-여자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새터에서 술 먹고 부축을 할 때도 여자라고 해도 여자만 하지 말고, 여자 남자 한 명씩 해라'라고 하면서 성 소수자나 외국인들까지 모든 예를 최대한 들려고 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조심을 해요. (상담사 1)

저희 학교는 지금 맞춤형으로 성평등 교육을 교과 과정으로 개발했고, 그 교과 과정을 신입생 대상으로 아예 공동필수로 하고 있어요. [중략] 지금은 [인권센터 내 편입되어 있는] 연구소가 담당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1학년 신입생에게 필수적인 젠더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요. 1학 점인데 2시간. 16주 과정으로 하고요. [중략]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주차별 주제나 강의 계획서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강사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하나 딱 개발했다고 꾸준히 사용한다기보다 학생 특성과과 특성이 많이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상담사 3)



206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특정 과들이 편중돼서 인식 편차가 나는 걸 저희가 보면서 그런데 특화된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저는 교육 원리는 똑같으니까 기본적인 성인지력 교육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강사 입장에서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는 거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란 것도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외부 강사한테 요청할 때 얼마나 딱 맞춤형으로 적합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해요. [중략] 만약에 문화예술계 쪽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그 사건을 다루더라도 잘 대처한 주변 사례나 지지를 잘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하지, 가해자 죽일놈을 만들어서 끝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해당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영역에서의 특성을 다루긴 하되, 사건이나 사례를 다루면 그건 다르지만, 잘 대처했다는 사례도 발굴해서 같이다뤄주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게 같이 인식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야 하잖아요. (상담사 2)

예전에 다른 대학에서 섭외할 때, 체육학과에서 [여자] 교수님이 자기 과 학생들만 따로 좀 해달라고 우리가 섭외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요청하셔서 교육을 매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중략] 그래서 강의를 개설해서 그 선생님수업 시간에 매년 특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체육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다낮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수준이 '그래서 여자애가 문제 아니에요? 여자애가 짧은 옷을 입었으니까 문제잖아요'라는 원초적인 질문이나 반발을 피해자 유발론의 관점에서 제기했어요. 그 수준부터 A부터 Z까지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F부터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라 A부터 필요한 것을 조금씩 점검해서 A에서 걸려 점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좀 높은급에서 점검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교육이 정말 짧은 시간이라 어렵긴 하지만 그 중에도 몇 가지 취미를 둬서 그중에 내가 어느 지점에 걸려서 생각해보거나 되짚을 수 있는 지점들을 몇 개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게 교육이든 교육 홍보든 지칩서든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나. 폭력예방교육 참여 유도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4대 폭력 중성폭력과 가정 폭력, 그리고 젠더 관련 수업만이 교양 필수로 채택되고 있어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는데 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학교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장학금 제도나 예방교육 불이행 시 학점 확인불가 등의 규제를 통해 예방교육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수를 다 했을 때, '드림 패스'라고 학교 안에 마일리지를 쌓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를 하면 10점 부여. 자격증 취득이나 어디서 입상한다든가 어떤 교육을 들어서 그 마일리지를 쌓으면 연말에 시상식을 해서 현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등은 100만 원 정도 되고, 10점 20점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상담사 1)

규제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수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반발이 있어도 재결정하기 전까지는 밀고 나가는 거죠. 또는 어디는 총학생회나 학생 평의회가 이걸 의무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는데 이게 안 되면 학점 미리 보는 걸 못 보게 한다든지 등을 결정하게 하면 그건 학생들 기구가 대표해서 스스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총학도 같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 거죠. 내부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그걸 엄청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다른 데 들은 그런 기구들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상위 기관에서 하는 거 자체는 무조건 반발이 있다는 거죠. (상담사 2)

다. 온라인 교육 현황

전교생 대상의 대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에는 한계가 있는 바, 대학은 온라인을 통한 예방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대나양성평등연구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예방교육 콘텐츠 이용을 위해 인권센터는 학생들의 개별신청을 받는데, 서울대교육자료 구입의 경우 1년 치 비용을 지급하고 학교 공식 예방교육 웹 사이트에서 총 2시간 분량의 네 과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양성평등진흥원(이하 양평원) 콘텐츠는 신청자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양평원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는 이 같은 불편함이 따르고, 서울대온라인 콘텐츠와 비교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가 부족하고 영어자막이 부재하여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이 불가하며 교육내용 업데이트도 미비하다고 지적된다.

온라인은 항시 열어놓고 있어요. 서울대 콘텐츠를 구매했어요. 1년에 550이고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인권에 관한 인트로, 인권이 어떤 건지, 성희롱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까지 다 들어 있어요. 학생 것은 영어랑 한국어 버전



208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다 있고, 교직원도 약간씩 다르게 해서 있어요. e-클래스라고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교직원 같은 경우에 명단을 취합해서 의무적으로 수강 과목을 만들어 놓고 다 강제로 이수하게끔. 로그인하면 자기가 뜨거든요. 학생의 경우, 1만 6천 명을 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수료하거나 휴학하면 매 학기 명단을 저희가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생은 신청하면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학기 초에 공문으로 단과대 별로 시행한다고 알리죠. 다 들으면 교직원은 2시간 조금 넘고, 학생도 2시간 조금 넘고. [2시간 온라인 교육은 개별적으로] 잘라져 있어요, 과목별로 4과목. 저희가 이수증 발급을 4과목 다해야지 줘요. (상담사 1)

지금은 양평원 것을 개인별 유료로 사서 하고 있었어요. 1년에 온라인 교육 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싸져요. 저희를 600여 명이 더 되는데, 만약 800~900명이 듣는다고 하면 일이 당 칠천 얼마씩을 내서 1 년 예산이 6~7백만 원 선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 이수를 끝까지 해도 칠천 얼마를 내는 거고, 듣기 시작했으면 통과를 다 못 해서 이수는 안 된 거지만 그 비용은 내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그 비용 은 안 내도 되는데. 서울대 것을 전에 있던 학교에서 사용했었어요. 00대 있 었을 때는 제일 처음부터 도입했었거든요. 되게 괜찮았고 00대는 연간 구입 으로 그걸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1년 통으로 550만 원 딱주 고 하는 거라서 그게 더 관리하기 쉽죠. 양평원은 매년 개발을 안 해요. 양 평원이 그건 좀 개발 전담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얘길 하죠. 양 평원 거보다는 서울대 것이 영어 자막이 잘 돼 있어서 영어권 외국인 학생 관리를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대 것을 많이 선호 하는 입장이에요. 여태까지는 양평원 것을 썼는데 올해부터 구매계약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것 쓸 거예요. 개인들 것을 일단 접수를 받아 요. 듣겠다는 걸 접수 받아서 그 수백 명 것을 양평원에다 신청해요. 그러면 엄청난 행정 인력 소모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하고 사건 처리하는 사 람들이지 그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서. 내용도 그렇고. 그 리고 양평원 것을 매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똑같고 서울대 것은 소재 라도 바꾸고 접근 방식이라도 조금씩 바꾸거든요. (상담사 2)



7. 성폭력 방지업무 관련 고충상담원의 견해

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고충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성희롱 고충상담원들은 '인력 부족'과 '겸직에 따른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학생 대비고충상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교생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실시도 어렵다고 한다. '상담사' 본연의 역할인 피해자 상담을 통한 객관적인 피해 사례 조사,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통한 친분 관계 형성 및 중재 합의의 역할 수행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직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심리 검사부터 심리상담, 사건 접수이후 관련 조사와 피해자 진술서 작성,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탈북자나 성소수자 및 장애 학생 관련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려 가지 겸직을 맡고 있어 과중적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만 대학원 합쳐서 저희가 1만 6천 명인데, 그 전부를 다 교육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학생 전체 대상 예방교육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상담사 1)

저희는 지금 학생과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되어있어요. 저희도 꾸준히 분리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총장 직속이 되어야 하는 거죠. 총장 직속으로는 부설 기관들이 있는데, 미디어 센터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학교에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라도 어느 부서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문이 오면 행정원이 따로 있어서 수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전담이나 공유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누누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매번 담당해야 하는 부서가 달라지는 거죠. 직원일 땐 총무과, 교원일 땐 교무과, 학생일 땐 학생과. 확실히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담사들이 행정부터 상담 처리, 조사, 심의 의결서까지 작성하는 구조인 거예요. (상담사 3)

인력이 없어서 혼자 다 하잖아요. 학생들 심리 검사도 해주고 심리상담도 해줘야 하는데, 거의 모든 대학에 겸직이 많아요. 심리상담이 주고, 작년에 접수돼서 처리된 공식적인 사건에 4건인데, 1년에 만 몇 명 중에 매일 상담하는 중에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 조사. 피해자 학생 조사는 제가 담당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회의가 4시간이어서 회의록 풀어야 되고. 교원 소청 가니 까 완벽에 완벽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행정까지 모든 걸 해야 되면 저도 이렇게 안 살고 싶단 생각이 너무 들어요. 심리상담이 둘인데 한 분이 공석 이 돼서 혼자예요. 이게 모든 대학이 비슷해요.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특별한 몇 군데 대학만 빼고 분리가 안 되고 다 겸직일 거예요. 나라에서 요구하는 인증평가는 탈북도 맡으라고 하고, 소수, 장애도 물론 맡고 있고 요. 장애 학생 상담실도 별도 기구인 대학이 국내에 열 군데도 안 돼요. 다 겸직이에요. 소수, 탈북자, 다 문화까지 하라고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제가 담당해요. 그래서 내가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지, 상담하는지, 역할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힘들어요. 제발 법으로 이 것 좀 겸직하지 말고 다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고 봐요. 폭력 예방교육 하나 만도 얼마나 커요. [중략] 한두 사람이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그 선생님들 이 다 그래요. '제발 접수되는 사건이 이번 학기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 접수되면 모든 게 스탑되고. 서류 하나 잘 못 날아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최고 애로사항이에요. 법으로 좀 정해졌 음 좋겠어요. (상담사 4)

신고인들 유형도 다양하지만, [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해 사례를 얘기하다가도 여러 차례 이어지면 이 피해 학생이 저를 의지하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담사는 아닌데 뭔가 이중 관계 같은 느낌인 거죠. [대학에서 공고 채용을 할 때 단순] 상담사로 뽑으면 안 되죠. 모든 학교에서 공채를 내고 사람을 뽑을 때, '상담자'를 뽑고 있어요. 거의 '상담 전문가'. 꼭 조사 위원이 조사의 역할만하진 않잖아요. 뭔가 중재를 하거나 중재 합의를 하는 과정도 있으니까. 중재 합의도 상담사의 역할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상담사 3)

피해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사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을 한 명의 상담사가 동시에 진행 하면서 이해와 인식의 갭 차이가 발생하여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제가 있는 중에도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늘 있으니까 그걸 조율하는 게 어렵죠. 피해를 당했으니 당연히 원하는 바나 요구하는 바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정도의 수위는 피해에 대비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 처리를 했을 경우 그 정도의



수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조치 사항들을 다 넣어줄 수 있는 상 황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원하는 바를 다 넣어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해자 편을 들었다든가, 가해자 위주라든가 하는 생 각을 학생들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사이에서의 갭을 조율하는 게 결 국 상담사의 역할이 되더라고요. 컴플레인도 걸어오고, 피드백 요청한다거 나, 아니면 학교 신문에 투고한다든가 등의 여러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 시하니까. 그 사이에서 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상담사 입장에서 피해 학생이 그만큼 피해를 입고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과정은 상담사의 역할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중략] 신고인을 만나고 나서 피신고인을 만날 때가 조금 더 힘들어요. 제가 이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들어서 사람이다 보니 편견이란 게 생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걸 얼마나 피 신고인에게 내색하지 않으면서 정말 명확한 조사를 하느냐인데 그게 어려 운 거 같아요. 이미 피해자를 먼저 만나게 되니까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상 황에 대한 편견이 1차적으로 생기는 상황이 많은 거 같아요. 그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신고인 상담을 따로 하고 피신고인을 다른 상담사가 해 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건의 중요도에 있어서 알고 있는 바 가 너무 다른 거죠. 저는 피해자 상담만 했고, 다른 상담사 선생님께서 피신 고인 상담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둘이 합쳐서 조사 위원회에 가야 하는데 사 건 담당자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중도도 달라져 서 저희도 어떤 게 더 좋은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상담사 3)

나.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바라는 바

고충상담원 입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예방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대학 전체가 이를 '패스/논패스' 평가의 필수 교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다. 예방교육 횟수 증가는 교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고위직 교육자일수록 인식 개선이 더 요구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엄중하고 객관적 양형을 내리는데 근거가 되는 조사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자의 능력과 피해자 고통과 피해를 경감시키는 상담자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들에게 피해자가 고통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상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자각할 수 있도록 이들 대상의 전문상담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의] 제일 좋은 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사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인식 자체를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일회성 교육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인권 침해건 성희롱이건 막을 수 있는 뚜렷하고 명확한 게 없는 게 문제인 거 같은데 그래도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떤 과는 '왜 우리 과만 하냐?'하고 반발할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건 교양과목처럼 해서 패스, 노패스로 해서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상담사 1)

교수들도 나이가 많을수록 전임률이나 여러 보직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확실히 일단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의 의식이 바뀌진 않아도 사회를 바뀐 건 확실히 아셔야 조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사 2)

피해자에게 다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원하는 게 징계 수위일 뿐 아니라 피해가 중단되기 위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 사람이 어떤 걸 알았으면 좋겠고 뭐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조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등이 있으면 그런 요구의 원칙에 좀 맞는 다른 여러 가지 부연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해소하기 위한 상담도 같이하는, 센터가 그런 조치들을 역할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피해자들이 원래 요구했던 거보다훨씬 다르게 나올 때, 그때 인권센터나 상담센터는 사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기대했거나 요구했던 것과 다른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메꿀수 있느냐가 꼭 징계 수위뿐 아니라 다른 거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나관했, 가해자 교육 등으로 보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사 2)

문화예술계에선 더 특화된 게, 서로 장인, 도제적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선후배 간이든 교수 학생 간이든 그런 지도라인인 거잖아요. 내 라인이 있는 거고, 밀어주는 제자와 후배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잃는 상실감이 더 크긴 할 거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피해자도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피해자도 그걸로 인해서 잃거나 상실감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감을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직접 공감이 바로 안 된다면 상담자나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감 방식이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략]가해자도 자기 불편함과 힘듦을 많이 호소할 때는 약간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힘들긴 하겠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돼'라고 해요. 가해자가 힘든 것 중의 하나는가해자도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더 모 아니면 도로 가서 '아예 난 생각이 안 나고, 그랬을 리 없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교수나 교원이 잃을 게 훨씬 많죠. 학생인 경우에 더더욱이 어느 정도 완충해줄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행동이나 그때 그 언행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이 징계나 조치들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치유도 되고 행동에 대한 면제가 아닌 책임 자세를 갖는 게 이후에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나름대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상담은 아니지만 그런 가해자 상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가해자 교육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내 인생 끝났어! 나만 명예를 잃었어!'라고 보는 것도 문제예요. 피해자도 자기 조직 내에서 본인이 학생회장이면 교수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선후배, 친구로부터도 신망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이후에 사회생활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 거라고 설득을 하는 상담을 해요. (상담사 2)

8. 소결

본 장에서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심층면접의 내용을 통해 파악한 문화예술계 교육과정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발생과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성고충상담원들이 보기에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들의 성인지성은 높은 편이지만, 이들이 몸담고 있는 교육과정의 분위기는 이들의 인식 수준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문화예술계 학생들의 경우 전공 과정에서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작업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수와 강사를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는 향후 경력개발에도 큰 영향을미치므로 관계 측면에서 약자의 입지에 놓인다. 성인지 의식이 부족한 일부고연령층 정규직 교수의 무분별한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학생을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공고했던 위계구조가 약화되기는 하지만, 공동작업이 활발한 일부 전공분야에서 교수의 묵인으로 선배에 의한 규율잡기 등의 통제가 존재한다 고 한다. 위계적 구조에서의 선후배간 연대와 공동체 문화는 선후배 간 친분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한 성희롱 등의 피해 발생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21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성희롱·성폭력 피해 접수 양상은 대학 별 차이가 있지만, 피해 학생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학생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는 동료 학생에서부터 강사,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성추행보다 성희롱 피해 접수 건수가 많고 가해자 지위에 따라 신고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가해자가 높은 연배의 선배이거나 교육자이면 2차피해와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려하지 않지만, 동료나 친구일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진술 과정에서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미투운동은 대학사회 분위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술자리나 회식 자리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교육자들은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상황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한다. 괄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한 대학의 경우 강의 평가서에 인권 및 성차별적, 성 관련 피해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익명 작성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여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이 개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대학에 미성년자 학생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교원 및 교육자 임용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제도도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성희롱고충상담소에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있으며, 외부 상담 이용 시 상담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OT나 새터 현장을 통해 학과 별로 시행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원 및 교수, 학생들이 언제든지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전공 필수로 하려고 추진 중이고, 인센티브 제공이나 페널티 부여를 통해 교육 참여를 독려하려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대학들은 폭력예방교육의 확산을 위해 힘쓰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넘어 성 인지력과 젠더 감수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예방교육 강사들 간 토론을 통해 교육



VIII. 고충상담원이 본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 215

내용 개선에 노력하고 학과별 특성과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식 예방교육에 개발에 힘쓴다고 한다.

성희롱고충상담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부족과 겸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상담사 역할 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한 행정업무처리, 탈북자·성소수자·장애 학생 관리 및 보고서 작성, 피해자 보호와 이들을 위한 중재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다고 한다. 고충상담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과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할 추가 인력 채용, 고충상담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책 개선방안

1.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교육부 책무 강화	219
2.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223
3. 문화예술계 대학에 초점을 둔 정책	227
4.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선방안	229



IX

정책 개선방안

1.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교육부 책무 강화 가. 관련 법령 정비 및 준수를 통한 이행력 제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에 관한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동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용관계에 토대를 둔 여타 기관과 다르다. 조직으로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학생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와 관련된 통합적인 근거법령을 마련할 것"(국가인권위원회, 2103)과 이에 따라 훈령과 예규 등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31)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입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성비위의 범위유형 확대 및 징계절차 개선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32)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¹³¹⁾ 국가인권위원회(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강화 권고」2013.12. 2

¹³²⁾ 교육부 보도자료,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2018.8.13.



220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첫째,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사립학교법」개정, 2019. 4. 16 개정, 2019. 10. 17. 시행)¹³³⁾.

둘째,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교육공무 원과 동일하게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다(「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 조의 8 개정, 2019.3.19 개정, 시행)¹³⁴).

셋째, "성인 대상 성희롱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고, 불법 촬영, 공연음란",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양정기준을 신설(「교 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제7호)하였다135).

넷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및 권리구제 방해, 피해자 대상 폭행·폭언, 그 외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리한 처우)를 야기한 자는 성범죄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와 동일하게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하였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8의2호 신설, 2019.3.18 개정, 시행)¹³⁶⁾

2019년 관련 법령 정비는 특히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이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계대학 교원에게도 이 규정들은 통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징계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국·공립, 사립에 관계없이 대학교원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문화예술대학의 교원들이 성 비위에 대한 강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규정적용을 통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들이 성 비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 문화예술계 대학의 특별 관리·감독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 초 미투운동이 촉발된 이후 언론에 보도된

¹³³⁾ 상동

¹³⁴⁾ 상동

¹³⁵⁾ 상동

¹³⁶⁾ 상동



IX. 정책 개선방안 **■ 221**

대다수 성폭력 사건이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고소되는 현상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고귀한 정서를 훌륭한 문화예술 작품으로 표출하여 대중의 존경과 사랑받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성폭력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폭로와유사한 현상이 전개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계 현장과마찬가지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문화예술계의 미투 폭로가 두드러지게나타났다.

여타 전공분야에 비해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미투가 두드러졌던 것은 해당 분야의 학생들이 장기간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되어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다. 특히 미투운동 과정에서 동료 성폭력 피해 학생을 지지하고 돕는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조직이 학교 당국이나 가해자를 상대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형사고소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를 법령에 근거하여 제도적 문제해결 접근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참고하여 교육부는 특별히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실적을 대학 평가에 반영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된 항목을 대학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대학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체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제가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자체평가는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다(제11조의2)(이미정 외, 2018: 200).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지표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은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안전관리 현황'으로, 대학 등은 매년



222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1회 안전관리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험·실습실과 시설 안전관리,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 검토와 폭력예방교육 현황 4가지로 구성되어 어려움이 있다(이미정 외, 2018: 201).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평가원이 수행하며 대학은 인증을 위해 자체 진단평가보고서를 한국대학평가원에 제출하는데, 관련 평가 기준 중 공시 항목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다(이미정 외, 2018: 202). 사실 「양성 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학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이나 고충 처리와 구제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발생 사실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제6항). 그러나이의 강제력이 약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이행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대학평가에 관련 항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미정 외, 2018: 203).

라.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차별 실태조사

본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의 성차별성이 여타 전공분야에 비해 강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의 성차별적 인식의 만연은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문화예술계 전공 분야별 학생 중 여성비율은 절반이나 그 이상으로 다수를 구성하는데 여성교원에 숫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성 졸업생 선배와 교원들은 현장활동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우선권을 남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교육환경은 여학생들의 교육 및 예술활동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과 학과를 대상으로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X. 정책 개선방안 **■ 223**

2.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가. 성희롱고충처리기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

문화예술계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은 대학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 고충처리에 대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13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75호, 2019.6.18., 일부개정) 시행 2019.6.19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략)

〈개정 2019. 6. 18.〉

-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중략)
-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략)

^{13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0조 성희롱방지조치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 중 제20조 1항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교인 대학이 포함된다.



224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학에서 성희롱 고충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동 시행령 제20조 3호에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각 대학은 성폭력상담소나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조직 자체의 '성희롱'예방지침'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정한 관련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운영의 문제점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는 대학 내성희롱 고충상담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전국 99.4%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이 있지만 지난 1년간 상담건수가 없는 대학이 32.4%이고 사건조사가 없는 경우는 42.4%이다(이미정 외, 2018: 117). 이러한 현상은 고충상담기구의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관련 예산이 전무한 곳이 5.1%, 500만원 미만인 곳이 58.7%이고, 고충상담원 규모는 평균 0.9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이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고, 담당자의 전문성도 부족하다(이미정 외, 2018: 117).

다.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부실한 운영

2018년 문화예술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 당국과 대립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대자보를 게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투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였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시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문화예술계 대학생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제 기능을 발휘 못 했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시위 형태로 나타난 것



IX. 정책 개선방안 **■ 225**

이다. 문화예술계 대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할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성희롱 고충처리와 상담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미투운동 촉발 이후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관련 정책을 이행 중인데, 해당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기구에 대한 조직, 운영, 예산, 전문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조직 운영 개선사항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둘째, 이들 기구에 컨설팅 제공 자문단 운용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계획하고, 셋째, 위의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반영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기구조직·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교육부, 2018, 내부자료).

라.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내실화 방안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18년 이전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투운동 촉발에 대응하여 2018년 초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처 내 실무 담당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를 구성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38) 교육부는 2018년 이후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성희롱고충 상담과 처리와 관련된 조항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대학 조직에 적합한 '대학 성희롱고충처리 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해당 기구 운영 관련 자원이 부족하거나 운영 실적이 미비한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¹³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4.4."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358 [검색일자 2019.10.30.]



「대학 성희롱고충 상담과 처리 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침(안)」

교육부는 본 지침의 준수와 운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운영계획과 결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컨 설팅을 제공한다.

-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는 교직원과 학생을 모두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이에 적합한 기구 명칭을 부여하고 대학 조직내 기구의 배치 와 소속을 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기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2. 모든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한다. 해당 계획 수 립에는 예산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 3. 모든 대학의 성희롱고충처리기구는 매년 상담과 사건처리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상담과 사건처리 실정이 전무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 4. 성희롱고충처리기구에 적어도 1인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5. 해당 기구 담당자는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명시하는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동법 제19조의2에 규정된 교육지원시설에서 100시간 성폭력상담 원 교육을 이수).
- 6.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예산을 책정한다.
- 7. 사건조사 시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이 부담한다.
- 8. 대학 외부의 피해자 지원 관련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성폭력상담 소, 해바라기센터, 무료법률구조공단 및 경찰서나 검찰청(국선변호사 연결)과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9.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한다.
- 10.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한다.
- 11.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12. 위의 1항~12항의 조항에 대한 준수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 여 교육부에 제출한다.



Ⅸ. 정책 개선방안 ▮ 227

3. 문화예술계 대학에 초점을 둔 정책

가. 신고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교육부의 협력 강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피해자 지원이 미약한 경우, 외부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전담지원하는 센터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 전공대학생 등 예비 문화예술인도 이들 센터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이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8년 미투운동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전공 학생들이 동료를 돕기 위해 구성한 비상대책위 등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어 곤란한 처지에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협력하여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지원센터에서 조력자를 지원하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 문체부와 교육의 가해자 정보 공유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그램 교수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이나 예술단체 대표, 문화예술 작품이나 프로젝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문화예술계의 의사결 정 권한이 있는 사람과 대학의 교육자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대학 교수이나 강사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정보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부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같은 주요 관련 기간 간 정보공유를 통해 문화예술계전공 대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 국립예술학교 대상 문체부 관리 책임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육부 관할이지만,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이다. 이 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228 ▮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결정한다.13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예술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외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연극원, 미술원 등 6개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전임교수 대부분은 현장에서 높이 인정받는 현업 예술가들이고 비전임 교원도 그러하다. 문화예술계 교육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립예술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교육청,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기관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 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므로 이들이 관리와책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라.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교과목 확산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성인지성이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 예술계와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예비 문화예술인 대학생들 대상의 성평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예술가의 젠더연습'이라는 교과목을 2019년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와 예술작품 창작에 있어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는 협력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여타 대학에도 이러한 교과과정 도입을 검토하여 관련 전공학생들이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성인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¹³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 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X. 정책 개선방안 **■ 229**

4.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개선방안

2018년 교육부 연구(이미정 외, 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계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규정 검토를 토대로 개정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가. 적절한 용어 사용과 적용범위 확대

일부 대학 사례에서 '성폭력'과 '성희롱'가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다. '성폭력'용어를 사용하며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가니. '성 희롱·성폭력'용어를 성희롱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정확한 용어 사용은 성폭력 문제의 규율을 어렵게 하기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희롱과 성폭력 용어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양 당사자의 지위 변화가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발생 시점에 양 당사자가 학교구성원이었다가 조사 과정이나 징계단계에서 휴학, 졸업, 퇴직으로 지위가 변화해도 규정이 적용될 수 도록 하여학교 구성원의 신분변화와 상관없이 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담 인력과 전문성 확보

2018년 교육부 연구(이미정 외, 2018)에서 전국 대학 평균 0.9명의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마저도 겸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성희롱·성폭력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인력 규모는 이보다 더 작다. 성희롱·성폭력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적어도 1인 이상 배치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채용 시점에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자격기준을제공하고 채용 이후에는 매년 보수 교육 실시와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다. 사건처리 중 피신고인 사퇴 제한 및 처리시한 명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학생이나 교수행위자의 자퇴, 휴학, 퇴학, 사직, 휴직을 보류·반려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대학이 일부에 불과하다. 징계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건 처리와 징계 단계에서 피신고인의 부재를 방지해야 한다. 중징계의 경우에만 의원면직이나 자퇴를 못하도록 하는 대학이 있는데, 징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 사건조사와 처리기한이 규정한 대학이 소수인데,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라.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제고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와 개인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이원활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피해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요구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을 대학 측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건 종료 이후의 피해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학과나 동료학생들로부터 차별 등 2차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각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건 처리 과정 중 2차피해를 방지하고 미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2018, 내부자료).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예술계 재학생의 경우 평판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2차피해로 인해 평생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거나 문제제기했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예술계의 집단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평판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 전반의 문화개선이 있어야 할



IX. 정책 개선방안 **■ 231**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지시의 불이행으로 인식되어 조직이나 동종업계에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내 성인지 감수성, 인권감수성과 연결되므로 이러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운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운동이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등을 통한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입생때부터 성인지 감수성,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고, 교수를 대상으로 올바른 스승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 사건조사 이후 주요 단계별로 피해자 대상 통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경과나 조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미정 외, 2018: 207), 사건조사 개시 이후 주요 단계별로 피해자에게 조치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여 조사심의나 징계 결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 불만이 많은데, 이 경우 조사나 징계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에, 사건 처리와 징계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불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미정 외, 2018: 206-207).

바. 조사 및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와 이들의 결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정하는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들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성인지성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하기도 한다.

성희롱·성폭력 판단과 징계수위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의 원인 중 하나가 이들 위원회 구성원들의 온정적 태도라고 지적되는데, 학생이 피해자로 연루된 교원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 시 대학 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적어도학생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미정 외, 2018: 209).

사.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일부 대학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타 대학에서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실질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패널티 부여 등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 차원에서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촉진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학기말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폭력예방 교육 홍보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단체에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이나 학교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여 격려한다. 교내성희롱·성차별 방지 활동에 노력한 학생들을 포상하는 것도 대학 차원에서고려할 만하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학생이고 성별화된 교수와 학생사이의 위계관계가 성희롱,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수, 학생의 교육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교수대상의 교육은 교수의 자질함양, 사도(師道) 함양 프로그램 도입에 중점을 둔다. 문화예술계 교수들에게 스승의 길이 무엇인지, 인성교육으로서의 스승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지를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학생 대상의 성희롱, 성폭력은 도제교육 시스템에서 스승이 스승답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에 제시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대상의 교육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예체능학생의 경우 불편하기는 한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적대적 신고중심의교육차원을 넘어서서 사고 확립 과정, 판단능력의 향상, 갈등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학생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지, 거부의 사를 표현할 지, 참을 지, 지켜볼 지, 증거를 수집할 지'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삶이 가장 잘 영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되, 이 과정에서



IX. 정책 개선방안 **■ 233**

인권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다면 적절한 선택을 하는 데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식이 시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행에 있어 교육자나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금 제공이나 포상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235

참고문헌

(I장)

- 관계부처 합동(2018a).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3.8.).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 권향원(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제20권 제2호: 193-207.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조사단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이미정·윤덕경·정지연·김정혜·정수연·박종석(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천재영·박경희·이혜림(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 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http://www.law.go.kr〉[검색일 2019.11.30.]

(Ⅱ장)

- 고선영·양종희·이수정(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117-146.
- 공미혜(2010). 대학생의 성경험과 성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21: 69-94
- 권향숙(2018). 미투 운동을 통해 본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소고: 몸-정신 주체, 지각, 타자성, 서(恕)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논총. 39(4): 259-285.
- 김수인(2018).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The Ewha Medical Journal. 41(2): 25-26.
- 김영주(2017). 비법률적 개선방향의 모색.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위원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김재엽·최지현·이효정·김기현(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폭력 가해간 관계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31: 79-106.
- 김태희(2019). 미투 운동 이후 일 년 연극계를 돌아보다. 연극평론 통권. 92: 34-37.
- 김효인(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5-70.
- 나현주(2018).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자살 및 우울의 관계. 한국간호 과학회 학술대회. 311-311.
- 문소영(2016). 일탈은 파격과 혁명이 아니다!. 아트인컬쳐. 12: 149-155.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조사단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박근화·김지학(2017).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손희정(2017).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그런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긴급포럼 자료집. 씨네21.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 신희주(2017).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읽어내기. #문화예술계 내 성 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위원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아주대성폭력상담센터(2015). 2014년 아주대학교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미간행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8). 2017년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 성희롱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 유현미(2018).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교수 갑질'·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 사회. 120, 90-131.
- 이미정·윤덕경·정지연·김정혜·정수연·박종석(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
- 이선경(2017). #문화예술 성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위원 연구단체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
- 이성미(2017).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그 후 제도적 정책적 대안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위원 연구단체 아동·여성·



참고문헌 ▮ 237

인권정책포럼.

- 이수연·천재영·박경희·이혜림(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 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2016). 2016 출판계 성폭력 실태 조사.
- 주은혜·백영민(2018). 미투운동은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지지 받는가?. 한국언론학보. 62(6): 37-6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사이트 〈http://academyinfo.go.kr〉, [검색일 2019.08.13.].
- 한국여성민우회, 2017.02.17.일자 [후기]#STOP_영화계_내_성폭력," 〈출처: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18866.〉 [검색일 2019.08.0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7).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1-3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a). 일반국민이 바라본 미투 운동. 젠더리뷰. 49: 70-7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b). 전문가가 바라본 #Me 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KWDI Brief 45호.
- 한국프로스포츠협회(2019).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황정임·박선영·주재선·안상수·동제연·신상숙·이영희(2018).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황정임·안상수·주재선·김동식·정수연·권인숙·이경환·윤수경(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MBC뉴스], 2019.06.24., "밖에서 만나면 오빠" 성희롱 일삼아도…"재임용""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 5377137_24634.html〉[검색일 2019.08.21.]
- [경향신문], 2019.04.14., "'제자 성추행 의혹'하일지 전 교수 미술 전시회 논란"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



- tid=201904142141005&code=940401#csidxa2f4fea6eebcd478d a08cba220be57a〉[검색일 2019.10.14.]
- [교수신문], 2018.03.12., "대학생들, '미투운동' 공동대응 나섰다" 〈출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05〉 [검색일 2019.08.21.]
- [국민일보], 2019.06.24., "어린 여자 만나고 싶다" 성신여대 성희롱 교수 재임용"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23 466&code=61121111&cp=nv〉[검색일 2019.08.21.]
- [국민일보], 2018.07.22., "소설가 하일지, 제자 성추행 의혹 수사 받는다" 〈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35 57&code=11131900&cp=nv〉[검색일2019.10.15.]
- [국민일보], 2019.06.24., "어린 여자 만나고 싶다"성신여대 성희롱 교수 재임용" 〈출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234 66&code=61121111&cp=nv〉[검색일2019.08.21.]
- [국제신문], 2019.07.10., "마사지 핑계 제자 성추행한 부산대 전 교수 벌금형"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code=0300&key=20190711.33010005586〉 [검색일 2019.08.20.]
- [노컷뉴스] 2018.06.08, "3개월간 비정상적 연애"····단국대 또 터진 '미투'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82155#csidxca17d 8177d883ab8a6f1cf0a0200784〉[검색일 2019.08.20.]
- [노컷뉴스], 2019.06.09., "한예종 교수 또 '스쿨미투'… 학과장 보직 해임"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63811〉[검색일 2019. 10.15.]
- [뉴스1], 2018.10.24., '성폭력 교수' 줄줄이 파면…."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출처:http://news1.kr/articles/?3458927〉[검색일2019.10.16.]
- [뉴시스], 2018.04.07., "성범죄 교수 OUT...대학가 휩쓰는 新풍속 포스트잇 시위",
 -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02_00002



참고문헌 ▮ 239

69879〉[검색일 2019.08.07.]

- [뉴시스]2018.09.11.,대학가 '미투' 교수 징계 하세월… 새학기 강단 서기도 〈출처: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 1631&cID=10201&pID=10200〉[검색일2019.10.16.]
- [동아일보], 2018.02.21., "배우겸 교수 조민기, 학생 성추행 혐의… 청주대서 중징계 받고 교수직 사퇴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80221/88765775/1#csi dxd7930cbcddc36f5a1f37e4b9d9b3598〉[검색일 2019.08.20.]
- [서울신문] 2018.06.11, 이화여대 학생들 "성추행 교수들 즉각 파면하라"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 11500051&wlog_tag3=naver#csidx58ab1705f9d6990a04c09df1 41de39e〉[검색일 2019.08.20.]
- [서울신문], 2018.11.19., "안마실 만들어 제자들에 안마시킨 명지 전문대 교수 파면"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 19500102&wlog_tag3=naver#csidx35b513ec348fda387c42f301 3e60210〉[검색일 2019.08.22.]
- [서울신문] 2018.03.27.,이화여대 "미투사건 심의에 학생 참여" 강경대응 발표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 7500103&wlog_tag3=naver#csidx51028e4148884d68fca12a29d eff8ad〉[검색일2019.08.20]
- [세계일보], 2018.10.25., "성희롱·폭언·연구부정행위… 제주대 교수 갑질 의혹 대부분 사실로"
 -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25004254?Out Url=naver〉[검색일 2019.08.22.]
- [세계일보], 2018.05.30., "조민기 자살 후에도 2차 피해에 시달리는 성추행고발자들 '죽이겠다'등 협박 이어져" 〈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180530006086〉[검색일2019.08.20.]



- [세계일보], 2018.06.27., "육·해·공 전투복 디자인' 국민대 교수, 제자 성추행' 결국 파면'"
 - 〈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180627006467?Out Url=naver〉[검색일2019.10.16.]
- [세계일보], 2019.07.10., "교수가 기치료 해준다며 몸만져"… 부산대 미투 성추행 폭로10여건"
 - 〈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180315015124?Out Url=naver〉[검색일2019.08.20.]
- [씨네21], 2018.03.12.. "#MeToo 멈추지 않는다 1~6", 〈출처: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9628〉[검색 일 2019.08.05.]
- [연합뉴스], 2018.03.15., "교수가 기치료 해준다면서 몸 만져"... 부산대 미투 성추행 폭로,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315056300051〉 [검색일 2019.08.13.]
- [일요서울], 2018.07.06.,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성추행 의혹"
 - 〈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lew.html?idxno =241568〉[검색일 2019.10.15.]
- [일요서울], 2019.06.26., "한예종, 박재동·김태동·황지우' 성폭력 의혹'교수 3명 징계"
 - 〈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 =239745〉[검색일2019.10.15.]
- [조선일보], 2018.03.10., "조민기, 경찰 출두 앞두고 숨진채 발견"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 2018031000075.html〉[검색일2019.08.20.]
- [중앙일보] 2018.03.01., "세종대 이번엔 "교수가 성폭행" 폭로… 대학들은 신입생 OT 축소"
 -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405753〉[검색일 2019.



참고문헌 ▮ 241

08.20.]

[중앙일보] 2018.03.22, '한의학 공부했다'는 음대 교수의 이상한 자세교정… 이화여대 미대 이어 음대도 '미투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465561〉[검색일 2019. 08.20.]

[중앙일보] 2018.04.03., "세종대 김태훈 교수,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징계 사유에 해당"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503851) [검색일 2019.08.20.]

[중앙일보], 2018.05.09., "'미투' 지목된 국민대 교수 정년 앞두고 해임, 학생들 반발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607252) [검색일 2019.08.20.]

[중앙일보], 2018.05.24., "국민대 '미투' 전투복 디자인 J교수···"학교는 진상 규명하라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499146) [검색일 2019.08.20.]

[중앙일보], 2018.11.19., "안마·성추행 의혹에 사과했던 교수, 파면되자 "과하다" 재심 요청"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137296) [검색일 2019.08.22.]

[중앙일보], 2019.08.14., ""후배들 관리하라"며 제자들 골프채로 폭행한 음대 교수들 집행유예"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552127〉[검색일 2019. 10.14.]

[한겨레], 2019.04.15., "미투 시련이 피워낸 예술혼? 하일지 전시회에 동덕 여대 학생들 분노"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0 46.html#csidx87aef5e831c3f798d8971580e51c29f〉[검색일 2019. 10.14.]

[한국대학신문] 2018.03.20., "이화여대 미술대학에서 '미투'… 교수가 성추 행했다"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lew.html?idxno=187054〉



[검색일 2019.08.20]

- [한국대학신문] 2018.03.27.,이화여대, 교내' 미투' 운동 강경대응 한다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7362〉 [검색일 2019.08.20]
- [한국일보], 2018.11.01., "제주대'제자갑질'교수 파면 결정"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11549 779816?did=NA&dtype=&dtypecode=&prnewsid=〉[검색일 2019.0 8.22.]
- [헤럴드경제], 2016.10.23., "성추행논란, 출판계 이어 영화·미술계 등으로 '일파만파'"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23000272〉 [검색일 2019.07.16.].

(Ⅲ장)

[여성신문], 2019.4.30., "국무회의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의결",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 xno=188971〉[검색일 2019.10.27.]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17.2.14., "여성예술인들, 문체부에 '성폭력 전담 기구' 요구",

<출처: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770§ion=sc2§ion2=> [검색일 2019.12.15.]

「교육공무원 징계령」[시행 2019.8.6.]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068&efYd= 20190806#0000〉[검색일 2019.10.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N7 J1Z2E2K8B1W7R3H8Q5C3Q9Z6W2 (검색일 2019.10.15.)



참고문헌 ▮ 243

「교육공무원법」[시행 2019.6.19.]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787&efYd=20190619#0000 [검색일 2019.10.27.]

「국가공무원법」[시행 2019.4.17.]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44&efYd= 20190417#0000 [검색일 2019.10.27.]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업데이트 2018.12.4.] 〈출처: https://www.mcst.go.kr/kor/s_open/generalData/dataVI ew.jsp?pMenuCD=0120020000&pSeq=17〉[검색일 2019.10.27.].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41호)」.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525〉 [검색일 2019.10.27.]

「사립학교법」[시행 2019. 10. 17.]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360&efYd= 20191017#0000〉[검색일 2019.10.27.]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개정 2019. 6.19.]

〈출처: https://kofic.or.kr/kofic/business/intr/findRuleList.do#none〉[검색일 2019.10.27.]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9. 1. 17.]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0&efYd= 20190117#0000〉[검색일 2019.10.27.]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 _B1R9D0U4L1S9F1I8B0L3A0C8U0S5U7〉[검색일 2019.10.15.]



-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 10. 8.]
 -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746&efYd= 20191008#0000 [검색일 2019.10.27.]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시행 2013. 6. 17.]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1265&efYd= 20130617#0000〉[검색일 2019.10.27.]
- 관계부처 합동(2018a).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018. 3.8.).
- 관계부처 합동(2018b).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12.21.). 교육부 홈페이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교육부 홈페이지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장관 관계회의' 보도자료(2019.6.28.등록).
- 교육부 보도자료(2018.5.31.).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제 1차 권고 : 고등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구제절차 관련.
- 교육부(2019). 대학분야 성희롱 성폭력 자문위원회 권고내용 및 이행상황 (190827). 내부문건.
- 교육부·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 김영희(2019). 대학 신고시스템 운영한계와 개선방향. 제11차 KWDI 양성평등 정책포럼(2019.8.20.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 과제" 자료집.
- 김지연(201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 현황. 제11차 KWDI 양성 평등 정책포럼(2019.8.20.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향후 과제" 자료집.
- 김혜인(2018).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 논총 32집 3호.
- 노웅래 의원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공동주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2018.4.11. 이화여대) 자료집.



참고문헌 ▮ 245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조사단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2.2.)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8.30.)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9.10.).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2017).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a).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권고문 (1차, 2018.7.2.).
- 문화체육관광부(2018b). 제2차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권고문 (2018.11.13.).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2018c).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d).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2019a).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종합 권고문(2019.7.1.). 내부 문건.
- 문화체육관광부(2019b).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권고과제 및 이행 현황. 내부문건.
- 문화체육관광부(2019c).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d),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류정아).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8). 2018 공연예술 실태조사(2017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 박선영(2019).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구제시스템의 구축과 실질화가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포럼



- (2019.8.21.)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자료집.
- 박성호(2018). 발제2-대학 안에서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이란 무엇인가 2, 노웅래 의원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공동주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2018.4.11. 이화 여대) 자료집.
- 신상숙(2018).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주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2018.5.31. 함춘회관)" 자료집.
- 신혜슬(2019). 실태증언. 국회 교육희망포럼 "예술대학 교육여건 실태와 개선 정책 방향 국회토론회(2019.7.8.)" 자료집.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 여성문화예술연합(2017). 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 제안서.
 - (출처: https://www.waca2017.org/forum/jaryosil/2017nyeon-y eoseongmunhwayesulyeonhab-jeongcaeg-jeanseo》 [검색일 2019. 12.15.]
-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홈페이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http://solido.kr/enVIronment/request/〉[검색일 2019.8.30.]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2019년 현장영화인 VR단편영화제작교육 일반 (입문+)과정 2기 및 첨단영화제작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홈페이지 사업 공지 40번, 2019.8.19.)
 -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prom/promotionBoard
 Detail.do> [검색일 2019.8.30.]
- 영화진흥위원회(2018). 2017년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 성희롱 실태조사.
- 이성미(2018). 문단_내_성폭력과 권리침해, 문단 권력구조와의 관계. #문단_ 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2018.2.28. 주최: 서울 지방변호사회,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국회의원) 자료집,



참고문헌 ▮ 247

- 이성미(2019). #문화예술계_성폭력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정책활동의 성과와 한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포럼(2019.8.21.)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자료집.
- 이수연·천재영·박경희·이혜림(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 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한본(201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법.제도적 과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주최 포럼(2019.8.21.)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자료집.
- 조혜영·김선아(2019). 데이터로 본 한국영화 성평등 현황. 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제2회 한국영화 성평등정책 포럼(2019. 10.5. 부산 동서대) 자료집.
- 주유신(2019).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활동보고. 제2회 한국영화 성평등정책 포럼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 여성문화예술연합 홈페이지

〈https://www.waca2017.org/〉[검색일 2019.07.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 테이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2016-2019 아르코 지원제도 성평등 팩트체크"(2019.10.10.) 자료집.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홈페이지 〈http://solido.kr/〉[검색일 2019.10.1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출처: http://www.kawf.kr/social/sub11.do〉[검색일 2019.1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표준계약서 보급

〈출처: http://www.kawf.kr/welfare/sub03.do〉[검색일 2019.10.20.]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http://www.karts.ac.kr/index_karts.jsp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2019.8.29) 〈콘진원-양평원, 성평등 의식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올해는 일차적으로 방송콘텐츠 분야 종사자 및 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콘텐츠 분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http://www.kocca.kr/cop/bbs/VIew/B0000138/1840464.do? menuNo=200831〉 (2019.8.29. 홈페이지 게시) [검색일 2019.8.30.]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홈페이지

〈http://bora.kocca.kr/bora/main.do〉[검색일 2019.10.15.]

〈IV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출처: http://rule.konkuk.ac.kr:8080/lmxsrv/law/lawFullVlew.srv〉 [검색일 2019.10.01.]

[계원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kaywon.ac.kr/CmsHome/intro_06_02.aspx〉

[검색일 2019.08.22.]

[국민대학교],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출처: http://https://reg.kookmin.ac.kr/site/educational_administration/administration_27.htm〉 [검색일 2019. 08.22.]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출처: https://rule.dankook.ac.kr/serVIce/law/lawVIew.do?seq=336&historySeq=0&gubun=cur&tree=part〉[검색일 2019.08.22.]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출처: http://www.dgau.ac.kr/Campus/Campus02.asp〉[검색일



참고문헌 ▮ 249

2019.08.22.]

- [동국대학교],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출처: https://rule.dongguk.edu/lmxsrv/law/lawFullVIew.srv〉 [검색일 2019.10.01.]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dima.ac.kr/sub_01/bbs_VIew.aspx?num=22& pageNum=12&bbsID=ruleBook03〉[검색일 2019.08.22.]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www.scau.ac.kr/Application/02_Intro/Rule.aspx? MRID=73&URID=55&TID=6〉[검색일 2019.08.22.]
- [백제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출처: https://www.paekche.ac.kr/ict/pms/board.php?bo_table =main_life_003&wr_id=1#stop〉[검색일 2019.08.22.]
- [명지전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www.mjc.ac.kr/rulebook/rulebook.do?menu_idx =99〉[검색일 2019.08.22.]
-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정규정" 〈출처: http://www.pusan.ac.kr/rule/CMS/RuleMgr/VIew.do?mCode =MN025&rule_seq=446〉[검색일 2019.08.22.]
- [부산예술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busanarts.ac.kr/page/board/board.php?TREE
 _NO=1400&DEPTH=3&BBS_CODE=z412&bbs=see&data=cGFn
 ZWNudD0wJmlkeD0xMjgmbGV0dGVyX25vPTYxJm9mZnNldD0
 wJnNlYXJjaD0mc2VhcmNoc3RyaW5nPSZCb2FyZGtleT16NDEy
 JlN1Yl9Obz0wJkRCVGFibGU9YmJzX3J1bGUwMQ==||〉[검색일
 2019.08.22.]
- [서울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www.seoularts.ac.kr/mbs/kr/jsp/rules/rules.jsp? configIdx=2&cId=6&id=kr_050101000000) [검색일 2019.08.2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aist&target =school&ID=2200000018221&type=HTML&mobileYn=〉[검색일 2019.10.0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rule.uos.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 289〉[검색일 2019.10.01.]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s://rules.skku.edu/state/current/recent.do?mode=VI ew&boardNo=36&articleNo=66734〉[검색일 2019.09.30.]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rule.sungshin.ac.kr/rule/serVIce/law/lawVIew.do?se q=263&historySeq=0&gubun=cur&tree=part》[검색일 2019.08.22.]

[세종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board.sejong.ac.kr/boardVIew.do?pkid=118023¤tPage=1&searchField=ALL&siteGubun=19&menuGubun=1 &bbsConfigFK=456&searchLowItem=ALL&searchValue=〉[검색일 2019.08.22.]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s://rules.yonsei.ac.kr/search?rule_name=%EC%9D%B 8%EA%B6%8C&rule_text=&dept_name=#top0〉[검색일 2019.10. 01.]

[예원예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

〈출처: http://www.yewon.ac.kr/AboutYewon/sub0501.jsp?tab Num=04〉[검색일 2019.08.22.]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출처: https://rule.dankook.ac.kr/serVIce/law/lawVIew.do?seq= 336&historySeq=0&gubun=cur&tree=part〉 [검색일 2019.08.22.]〉



참고문헌 ▮ 251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출처: http://www.jejunu.ac.kr/schoolinfo/rules/rule〉 [검색일 2019.08.22.]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출처: https://www.cau.ac.kr/cms/FR_CON/index.do?MENU_ID =30#; [검색일 2019.09.30.]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rule.cju.ac.kr/lmxsrv/law/lawFullVIew.srv?SEQ=246〉 [검색일 2019.08.22.]

[추계예술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www.chugye.ac.kr/mbs/university/jsp/rules/rules. jsp?configIdx=6767&cId=93&id=university_010701000000&#ru leTop〉[검색일 2019.08.22.]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성폭력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3.pro.ac.kr/webSerVIce.pro?menuCode=K00 M030703〉[검색일 2019.08.2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규정"

<출처: http://www.karts.ac.kr/nri/bbs/NuriBbsDetail.do?pageInde x=1&bbsId=BBSNURI_003&nttNo=9999979957> [검색일 2019. 08.22.]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 에 관한 규정"

(출처: http://www.knsu.ac.kr/web/kor/i_07_01?p_p_id=EXT_R EGULATION&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 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REG ULATION_struts_action=%2Fext%2Fregulation%2Fget_file&_EX T_REGULATION_extFileId=7605277〉[검색일 2019.08.22.]

[한양대학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출처: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검색일 2019.09.30.]



〈V장〉

- 김태현(2018). 대학 내 위계형 성폭력-대학 미투운동의 양상과 쟁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pp.100 116. 문화과학사.
- 유현미(2018).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교수 갑질'·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사회 통권 제120호. pp.90-131.
- 이성미(2017).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그 후 -제도적 정책적 대안으로.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2017.7.17.) pp.29-34.
 - 〈출처: https://blog.naver.com/chounsook_jung/220913181594〉 [검색일 2018.10.22.]
- 이수연·천재영·박경희·이혜림(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3.12.-6.19) 분석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 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출처: https://kess.kedi.re.kr〉[검색일 2019.10.18.]

[동아일보], 2019.08.01., "이낙연 총리 "직장내 괴롭힘 신고 202건… 갑질 근절 갈 길 멀어"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1/967 84866/1〉[검색일 2019.10.25.]

〈IX장〉

- 국가인권위원회(20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권고(2013.12.2.).
- 교육부(2018). 대학 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실적 및 향후 이행 계획(내부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18.8.13.).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참고문헌 ▮ 2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4.4.).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 =156262358〉[검색일 2019.10.30.]

이미정·윤덕경·정지연·김정혜·정수연·박종석(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교육부.





Abstract

After the Me Too Movement: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rts and Culture, and Policy Issues Ahead

Mijeong Lee Deuk-kyoung Yoon Haesang Jeon Sooyeon Jung SungMi Lee

Through the Me Too movement, which was sparked in early 2018, revelations of sexual violence in the arts and culture community became widespread. Through media reports, it became known that student voices in the education community were also demanding that victimization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be revealed, and that countermeasures be taken.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educational programs for arts and culture at universities is an act that violates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tud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eradicate it is demande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university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grams after the Me Too movement, and searched for related measures for improvement. To do this, we searched news articles abou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arts and culture programs at universities and analyzed regulations on handling sexual harassment grievanc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tudents, and university graduates to understand the aspects and structural context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occurring in university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grievances within univers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ounselors from grievance counseling organizations and students. In addition, we reviewed policy data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arts and culture, and presented related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following is the current statu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culture and arts sector, which was reveal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people, such as arts and culture university students. In university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grams, there is a tendency to emphasize gender stereotypes,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nd male-centered hierarchy. Education with sexuality as a theme occurs more frequently than in other fields, and through misunderstandings about this, expressions about sexuality sometimes lead to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occurred in various locations, both inside and outside schools. Victims suffered psychological trauma during or after the incident, and also suffered from secondary attacks from the perpetrator or colleagues during the course of the statement investigation.



In response to university authorities' lukewarm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students formed student committees or task forces and demanded fair investig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 from schools on behalf of the victims. They delivered student opinions about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to schools. Students also urged the preparation of regulations for supplementing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performing efficient work at collaborative artistic work sites, and for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a sexual harassment grievance counselor, the gender sensitivity of arts and culture university students is high, but the gender sensitivity of some instructors and professors in their 50s and 60s is on the low side. These educators are said to have low awareness abou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and believe they are natural acts. Counselors said that professors and lecturers make indiscreet, sexually explicit expressions in class or in personal spaces, sometimes leading to sexual assault.

After the Me Too movement, student awareness and trust in sexual harassment grievance counseling organizations is higher than before, but it is said that efforts are needed to restore trust in these organizations and to improve perceptions of them. In particular, they point out that special approaches are needed in consideration of arts and culture students, who have many practical skills classes and on-site classes. In addition, the counselors' position is tha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adopted as a compulsory subject.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se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ir duties, it was revealed that supplementing their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s urgently needed to resolve their heavy workloa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ur recommendation for policy improvement is as follows: In order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arts and culture at universit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modify related laws.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reflect universities' performance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evaluations, and the ministry should provide support so universities can conduct surveys on gender discrimination on a regular bas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llow university arts and culture students to use counseling centers for professionals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prevent artist lecturers and professors who are perpetrators from receiving artist support funds or serving on art and culture juries by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m.

There is a sexual harrassment grievance handling organization in almost every university, but they are run as a formality and need to be made substanti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the weak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each organization, investigating regulations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nd boosting the justice and effectiveness of disciplinary measures.



2019 연구보고서-18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2019년 10월 30일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권 인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02-3156-7000(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02-313-7593 (代)

ISBN 978-89-8491-988-4 93330

정가: 15,000원